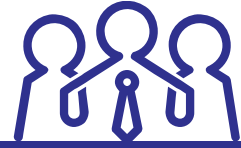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05-01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제출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2. 4.

연구수행기관 (사)인권정책연구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여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교육실장

공동연구원 김형완 (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지우 (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배희은 (주)에듀니티 부장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운영위원  
예은화 사람중심교육원 대표  
최성윤 (사)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강미선 (사)인권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유지민 (사)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록 정리

김용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요약문

## 인권교육의 목적 및 목표 등 확인

공무원 인권교육의 설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인권교육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 주요 인권교육 문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의미와 역할,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 : 인권교육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실현**

**목표 : 사회구성원의 인권적 자력화(empowerment) 지원**

주요 인권교육 문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인권교육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실현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 정부 조직과 공동체가 **인권 실현이라는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또한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의 핵심 내용 예시

인권의 정보와 지식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인권적 방법	인권의 가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권의 개념과 원칙</li><li>• 인권의 역사</li><li>• 주요 국내외 인권문서</li><li>• 인권침해의 개념과 기준</li><li>• 인권법과 그 시행</li><li>•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 기관</li><li>• 인권용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판적 사유력 성장</li><li>• 행동의 전략과 계획 마련</li><li>•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통한 원인과 결과의 입체적 파악</li><li>• 평화적인 갈등해결 방법</li><li>• 인권침해 발생 원인 분석</li><li>• 참여의 실천</li><li>• 인권기구와 매커니즘 활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력화의 감각 찾기</li><li>• 타인의 권리를 알아채기</li><li>• 다른 사람의 서사와 맥락 읽기</li><li>• 약자와 소수자에 공감하기</li><li>• 권리와 책임의 관계 이해</li><li>•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기</li><li>• 권리의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알기</li><li>•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연대의 사명</li></ul>

국가인권위원회, 2021 : Equitas, 2007 : 95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위와 같은 내용적 설계는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참여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인권교육 방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번 설계에서도 우리의 인권교육 상황과 조건에 맞는 유의미한 참여형 기법의 개발과 접목이 필수적이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내용적 및 방법적 방향성 아래 각 교육 현장의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설계를 진행하였다.

##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공무원의 경우 인권의 주체이자 인권보장 책무 대리자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다. 즉 공직자의 인권 역량 증진은 곧 시민의 인권 보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의미가 한층 더 강조된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잘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자의 존엄한 삶 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역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들이 인권친화적 인권정책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각 지방정부 및 국가기관 내 다양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경우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이에 기인한 왜곡된 설계, 사회 내 인권교육 역량 축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왜곡과 형식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 **인권교육의 이름으로 인성교육**

- 인권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인성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인성교육은 자칫 인권에 있어 권리-의무 구조를 왜곡시키고 각자의 존엄은 철저히 각자의 능력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위험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 **인권 없이 미담과 감성으로만 채워지는 인권교육 : '인권 없는 힐링캠프'**

- 대개 인권교육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미담)를 담은 사례나 동영상 등이 활용되는데, 그 안에 담긴 인권적 관점-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의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않아 자칫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인상적인 이야기로만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참여자들이 교육 시간 내내 웃고 신났지만 인권의 메시지는 없는 인권교육 아닌 인권교육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 역시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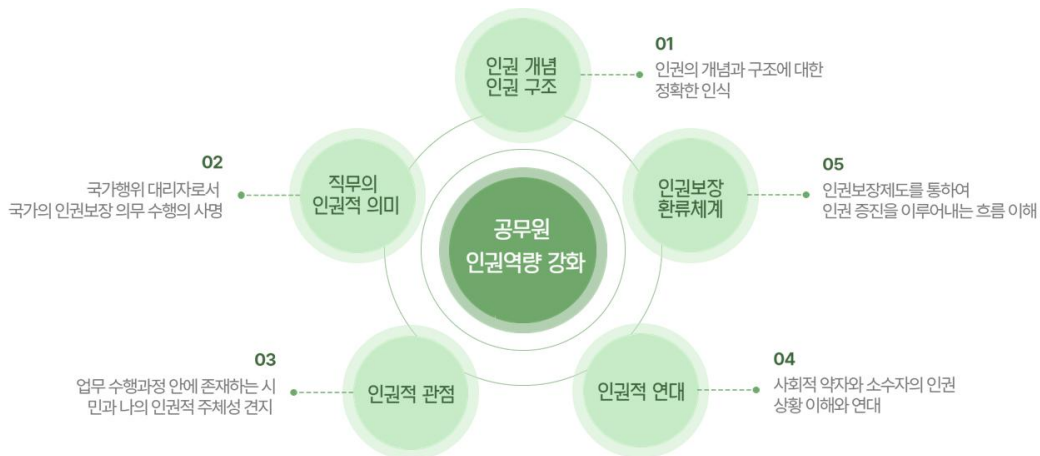
## 직무와의 연계성에 어려움을 겪는 인권교육

- 직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와 연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흐름은 기획 자체가 일반 시민으로서의 인권 소양을 넘어서 직무자로서의 위치에서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 현장 점검 결과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잃어내는 기획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경찰공무원의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찰청, 2019. 「법무행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21).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과 구조 도출

▶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공무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제안이다. 이에 기존에 제기된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 개 분야의 인권교육 현장 맥락에 적합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권보장 책무자로서 공무원의 인권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설계에서 앞서 선행 연구 등 각종 인권교육 문헌 조사, 각 분야 인권교육 관계자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과 구조를 도출하였다.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구분	인권의 이론		인권의 실제
과목	인권의 이해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인권의 적용과 훈련
목적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	직무의 사회적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	인권적 분석과 대안 모색 역량 훈련
교수학습전략	지식과 사고의 틀 구성	책임과 권한 부여	실습을 통한 내재화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과 구조</li> <li>• 인권의 특성</li> <li>• 인권의 역사</li> <li>• 인권보장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의 인권적 해석</li> <li>• 직무의 인권적 역할</li> <li>• 직무 관련 인권 규범</li> <li>• 직무 관련 인권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분석</li> <li>• 문화콘텐츠 활용</li> <li>• 인권영향평가</li> <li>• 인권보장의 환류체계</li> </ul>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본구조

-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짚기에 앞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민을 향해 주장하거나, 시민 간의 인권을 충돌한다고 인식하는 민민갈등화의 함정에 빠지는 등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왜곡하는 인식의 문제점을 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나아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희생인 인권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을 포함하였다.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지나간 인권의 역사, 만들어가야 할 인권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만나게 한 것이다.
- 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인권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경찰이나 군의 경우 업무상 부여된 공권력에 대한 권한의 의미를 ‘인권침해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 공권력 부여의 목적 자체가 인권 보장인 만큼 그 행사의 조건과 정도가 지켜지는 인권의 제한과 이를 넘어서는 인권 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 또한 군의 경우 조직과 구성원 모두 징병제의 특성상 가해지는 인권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인권침해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권적 재조명과 이에 기반한 인권의 제한 기준과 한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군인권의 증진의 방향을 공유하고, 나아가 군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전체적으로 공무원 각자가 직무의 (인권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과 인권 규

범 등을 숙지하되,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닌 인권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무엇보다 직무 현장에서의 인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학습자 간 토의,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인권적 성장이라는 인권교육의 내용적 및 방법론적 지향을 실현할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직무에 관련되는 인권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권적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 한편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인권보장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이며 이는 인권교육의 목적이기도 한 만큼, 인권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방법을 활용한 실습 기재를 활용하였다.
- 또한 인권교육의 효능감 위에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던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 7종의 공무원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회복지(아동/노인/장애)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세 분야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과정, 군인과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을 진행할 훈련가 역량강화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재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때로는 연구진들이 수고를 마다 않고 교재에 준하는 수준의 콘텐츠를 담기도 하였다. 차후 교재 개발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3종)
  - 장애인권과 사회복지(3-4차시)
  - 아동인권과 사회복지(3-4차시)
  - 노인인권과 사회복지(3-4차시)
-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훈련가과정(2종)
  - 기본과정(2차시)
  - 훈련가과정(30차시)
-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훈련가과정(2종)
  - 기본과정(4차시)
  - 훈련가과정(30차시)

##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개발 등

인권교육 평가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기획-설계-운영-평가의 전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을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 개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점검지를 구성하였다.

연구팀 새롭게 개발하기 보다는 주로 인권교육센터 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작한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국가인권위원회, 2020)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과 단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평가가 단순한 학습자 만족도 점수 또는 강사에 대한 일방 평가식으로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단편적 만족도 체크의 평가방식은 때로는 이후 교육 내용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 객관적으로 인권교육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해 인권교육이라 보기 어려운 교육임에도 다른 흥미적 요소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만족도 조사의 함정이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인권교육가(강사)는 높은 만족도 수치로 인해 자신의 교육이 인권교육으로서 충분하다는 인식의 오류에 갇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을 구성하여 기획자, 인권교육가(강사), 참여자 모두가 이 방향성으로 교육을 기획, 진행,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타인에 의한 일방평가 방식으로는 성찰적 변화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중요한 개선점이다. 우리가 인권교육에 있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만큼 이 원칙에서 제시하는 민주적 협력구조를 통한 유기적 순환구조의 확보가 가능한 평가체계가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공무원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설계를 반영한 공무원 인권교육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개발한 학습지표는 인권교육가(강사)와 운영자를 위한 사전 및 사후 점검지표, 분야별 학습자용 평가지표이며 이 보고서 마지막 장에 수록하였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 공무원 인권교육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학습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만나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그만큼 수고와 정성이 따른다. 인권교육가라면 이렇듯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에서 어떠한 최선을 기울일 것인지매 순간 긴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환경과 조건의 책임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의 최선, 학습자를 사람으로 만나고 학습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획과 콘텐츠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발전시킬 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업속한 업무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제1부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b>I.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범위 등</b>	<b>3</b>
1. 인권교육의 목적 및 내용과 방법	5
가.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5
나. 인권교육의 내용	6
다. 인권교육의 방법	8
라. 본 프로그램 개발에의 시사점	10
2.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12
가.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적	12
나.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15
다. 현 공무원 인권교육의 내용적 문제점	16
3. 본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가. 연구의 범위	19
나. 연구 방법	20
다. 연구 절차	21
<b>II.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관계자 조사 결과 분석</b>	<b>23</b>
1. 조사 개요	25
2. 분야별 조사 결과 분석	26
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 아동, 노인) 분야	26



나. 경찰 공무원 분야	45
다. 군인 분야	66
라.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할 주요 사항	88

**Ⅲ.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89**

1.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91
2.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조	96

**제2부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I.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101**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103
가. 기본과정 개요	103
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104
다. 교육 운영 가이드	107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세부안**

1. 인권과 사회복지	110
2-1. 노인 인권의 이해	118
2-2. 아동 인권의 이해	135
2-3. 장애와 인권 이해	153
3. 제도개선을 통한 환류체계 : 인권보장체계	166

## II.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173

- |                            |     |
|----------------------------|-----|
| 1.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 175 |
| 가. 기본과정 운영 방법              | 175 |
| 나. 훈련가과정 운영 방법             | 175 |
| 다.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 176 |
| 2.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 177 |
| 가. 기본과정 구성                 | 177 |
| 나. 경찰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 179 |

### 경찰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세부안

- |                        |     |
|------------------------|-----|
| 1. 인권과 경찰              | 181 |
| 2.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1 | 188 |
| 3.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2 | 192 |

- |                           |     |
|---------------------------|-----|
| 3.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 209 |
| 가. 훈련가과정 개요               | 209 |
| 나.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 210 |

###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예시안

- |                          |     |
|--------------------------|-----|
| 예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일반 | 213 |
|--------------------------|-----|

## III.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219

- |                        |     |
|------------------------|-----|
| 1.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 221 |
| 가. 기본과정 운영 방법          | 221 |



나. 훈련가과정 운영 방법	221
다.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222
<b>2.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b>	<b>223</b>
가. 기본 과정 개요	223
나.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224
<b>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세부안</b>	
1. 군대와 인권	227
2. 군인과 인권	236
3. 군인 인권보장	240
4. 군 인권보장 체계	247
<b>3.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b>	<b>252</b>
가. 훈련가과정 개요	252
나.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253
<b>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예시안</b>	
예시. 이주(다문화)와 인권	258
예시. 성소수자와 인권	263
<b>IV.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및 학습자원</b>	<b>269</b>
1.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271
가. 인권교육 평가지표 설계 방향	271
나.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272
2. 공무원 인권교육 훈련가를 위한 학습자원	278

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학습자원	279
나. 경찰 공무원을 위한 학습자원	284
다. 군인을 위한 학습자원	289
라. 인권교육 훈련가를 위한 학습자원	292
<b>참고문헌 및 자료출처</b>	<b>294</b>



## 표 차례

〈 표 1 〉 인권교육의 핵심 내용 예시	7
〈 표 2 〉 인권정책기본법안(법무부, 2021)	16
〈 표 3 〉 조사 대상 및 규모	25
〈 표 4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조	96
〈 표 5 〉 인권교육 평가지표 : 인권교육가(강사)와 운영자를 위한 사전 및 사후 점검지표	273
〈 표 6 〉 인권교육 평가지표 : 학습자용 평가지표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교육)	275
〈 표 7 〉 인권교육 평가지표 : 학습자용 평가지표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276
〈 표 8 〉 인권교육 평가지표 : 학습자용 평가지표 (군인 인권교육)	277

## 그림 차례

[ 그림 1 ] 인권교육의 나선구조(learning spiral)(Equitas, 2021)	9
[ 그림 2 ] 인권의 구조와 공공업무자	12
[ 그림 3 ] 업무에서 인권주체성을 지원하는 인권교육·훈련	14
[ 그림 4 ] 연구 절차와 방법	21
[ 그림 5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92
[ 그림 6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조	104
[ 그림 7 ] 인권의 구조-의무자와 권리자(헌법 제10조)	111
[ 그림 8 ]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인권의 역사	112
[ 그림 9 ] 노인의 특수성에 기반한 권리 보장(2017, 국가인권위원회)	120
[ 그림 10 ] 국내외 인권보장체계 연계 구조	166
[ 그림 11 ] 유엔 등 주요 국제인권보장체계	167
[ 그림 12 ] 국내 인권보장체계 이해_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역할 증대	167
[ 그림 13 ]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규범-제도-정책)	168
[ 그림 14 ]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조	178
[ 그림 15 ] 인권의 구조-의무자와 권리자(헌법 제10조)	181
[ 그림 16 ]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인권의 역사	182
[ 그림 17 ]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구조	210
[ 그림 18 ]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구조	224
[ 그림 19 ]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구조	253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제1부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I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범위 등**

# I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범위 등



## 1 인권교육의 목적 및 내용과 방법

공무원 인권교육의 설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인권교육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 주요 인권교육 문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의미와 역할,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특히 유엔에서 5년마다 발표해 오고 있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중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의 내용에 주목했다. 이 행동계획은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가의 행위자로서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이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 가.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 : 인권교육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실현**

**목표 : 사회구성원의 인권적 자력화(empowerment)를 지원**

다음의 주요 인권교육 문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인권교육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실현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적 자력화(empowerment)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이다.

#### ▶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Evaluating Human Rights Training Activities: A Handbook for Human Rights Educators)

- + 인권교육은 먼저 정부 관리와 조직이 자신의 인권역량 증진을 통하여 시민 인권 보장책무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과 공동체가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인권의 가치와 원칙 안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즉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이 사회구성원, 정부 조직과 공동체가 **인권 실현이라는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교육을 통한 변화의 단계**

- 개인 : 개별 학습자에게서 기대하는 변화. 한 개인이 습득, 강화 또는 교정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조직/집단 :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경험을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집단(공동체 구성원 등)에 전이할 때 기대되는 변화. 학습자의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이 조직이나 집단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 한 조직이 더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에 자신이 학습한 바를 전이할 때 기대되는 변화. 어떤 효과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2015 : 13-14

▶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훈련서(Training of Trainers)**

- + 인권교육은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변혁의 과정이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구성원의 인권적 자력화를 목표로 한다.** 즉 인권교육의 역할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인권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Equitas, 2007).
- +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범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화 구축과 유지,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Equitas, 2007).

**나. 인권교육의 내용**

▶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Evaluating Human Rights Training Activities: A Handbook for Human Rights Educators)**

“인권교육 활동은 평등과 차별금지 등과 같은 인권의 근본적인 원칙을 전달하며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의 일상생활 경험에 인권을 연관시키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위에서 제시한 인권 원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이 돼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인권에 대한 욕구를 밝히고 전달하며,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힘을 부여받는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인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참여를 진작하고 결핍과 공포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15 : 16 재인용

●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훈련서(Training of Trainers)**

- ✦ 인권교육은 사회의 인권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자력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권의 원칙과 법률 문서에 대한 학습과 비판적 성찰, 탐구의 촉진을 포함하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Equitas, 2007).
- ✦ 인권교육은 보편적인 인권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의 과정으로 구성한다. 인권교육은 이를 통해 인권 지식 학습,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 증진, 다문화적 이해와 관용의 태도 함양을 지원한다(Equitas, 2007).
- ✦ 이를 위하여 인권교육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함.

- ↳ 인권원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이해의 증진
- ↳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공, 남성, 여성, 아동, 시민사회의 확장된 참여
- ↳ 국제 및 지역 인권문서의 비준 및 또는 인권 친화적 헌법의 채택
- ↳ 인권의무에 부합하도록 기존 국내법을 개정
- ↳ 정부 정책, 관행의 긍정적인 변화
- ↳ 인권매커니즘을 만들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 ↳ 인권교육 분야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조직과 협업을 증대하고 연결망을 강화
- ↳ 인권교육활동에 참여한 개인이 정부 또는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Equitas, 2007 : 52

< 표 1 > **인권교육의 핵심 내용 예시**

인권의 정보와 지식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인권적 방법	인권의 가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개념과 원칙</li> <li>• 인권의 역사</li> <li>• 주요 국내외 인권문서</li> <li>• 인권침해의 개념과 기준</li> <li>• 인권법과 그 시행</li> <li>•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 기관</li> <li>• 인권용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사유력 성장</li> <li>• 행동의 전략과 계획 마련</li> <li>•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통한 원인과 결과의 입체적 파악</li> <li>• 평화적인 갈등해결 방법</li> <li>• 인권침해 발생 원인 분석</li> <li>• 참여의 실천</li> <li>• 인권기구와 매커니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력화의 감각 찾기</li> <li>• 타인의 권리를 알아채기</li> <li>• 다른 사람의 서사와 맥락 읽기</li> <li>• 약자와 소수자에 공감하기</li> <li>• 권리와 책임의 관계 이해</li> <li>•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기</li> <li>• 권리의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알기</li> <li>•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연대의 사명</li> </ul>

국가인권위원회, 2021 : Equitas, 2007 : 95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 다. 인권교육의 방법

### ▶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Evaluating Human Rights Training Activities: A Handbook for Human Rights Educators)

- + 이 안내서는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참여형 인권 교육 접근법, 학습의 나선구조, 학습자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참여형 인권교육 접근법(A Participatory Approach to Human Right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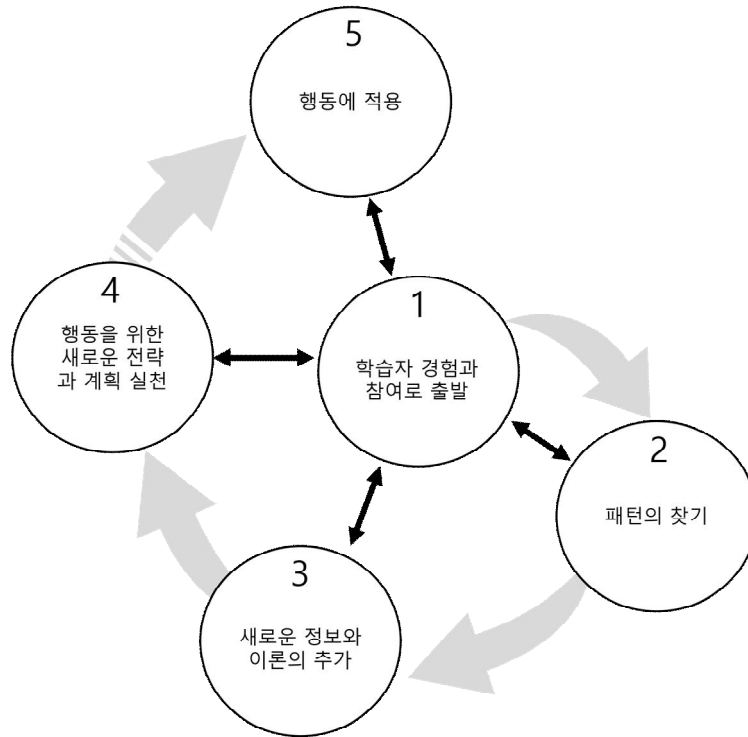
- + 학습자 상호 간 인권 지식 및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한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내재화 과정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호 존중의 학습 원칙에 기반하게 되는 만큼 학습자에 의하여 채워지는 교육 과정 설계가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경험과 사고의 다양한 학습자들이 상호 소통을 통한 자극을 통해 스스로 인권적 사유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 학습자가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지향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구체적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분석적 과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 ▶ 인권은 우리의 삶의 경험의 일부이기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기반으로 인권을 조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인권을 이해, 향유, 장려하기 위한 분석적 기법을 개발해야 함.
- ▶ 인권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가치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음.
- ▶ 인권교육은 사회정의에 부리를 두고 있고 인권업무 관계자들은 누구나 사회변화의 주체가 됨.
- ▶ 인권교육은 사회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긴밀하게 반응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15 : 15 재인용



**학습의 나선구조(learning spiral)**



**[그림 1] 인권교육의 나선구조(learning spiral)(Equitas, 2021)**

+ 참여적 수업 운영에 다음과 같은 ‘학습의 나선구조(learning spiral)’를 참고할 것을 제시한다.

1.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2.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후 학습자들은 그 경험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가?).
  3. 학습자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정보와 이론이 더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집합적으로 만들어진다.
  4.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실천해보고 새로운 기술과 전략, 행동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5. 학습자는 이후(대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일상 업무에 복귀한 후) 자신이 배운 것을 행동에 적용한다.
- ※ 원문출처 - Rick Arnold et al.1991. 『Educating for a Change』. Doris Marshall Institute for Education and Action 의 승인을 받아 인용한 문장임

국가인권위원회, 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15 : 16 재인용

- + 학습자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인 학습자의 자존감을 적절히 존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교실에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활용하여 교육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강사가 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 중략 …) 교육가는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간의 상호교류가 활성화되고 학습자의 전문적 지식이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원문출처 - OHCHR, 2000. 『Human Rights Training: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Methodology』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6(UN Publication sales No, E.00.XIV.1).

국가인권위원회, 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15 : 16 재인용

## ▶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훈련서(Training of Trainers)

- + 인권교육은 상호존중과 상호학습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촉진하는 참여적인 방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효성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다양한 문화, 가치, 시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Equitas, 2007).
- + 인권교육 현장에서의 배움이 실제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관련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연계하는 교육 설계가 유용**하다. 현장에서 인권이 실제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리며 훈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접근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타자화와 대상화를 극복**할 수 있다 (Equitas, 2007).

## 라. 본 프로그램 개발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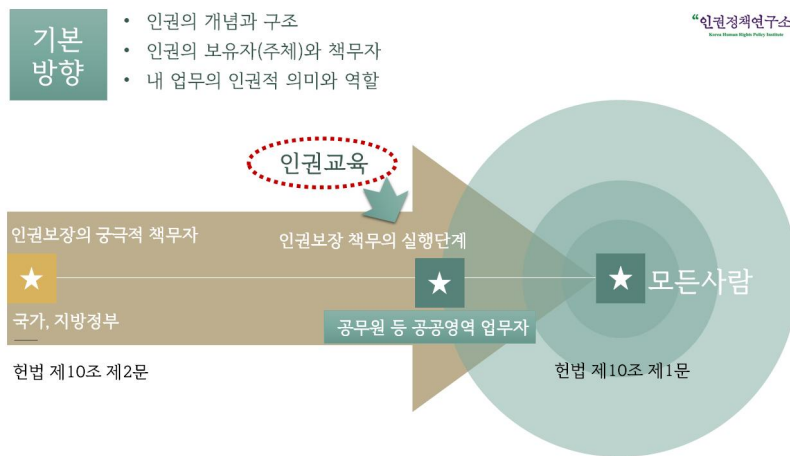
-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의 목적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실현**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정부 조직과 공동체가 인권 실현이라는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 ▶ 따라서 개인적 품성 등의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인성교육이나, 모든 사람이 아닌 개별화된 존재로서의 개인의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권리교육 또는 권익교육 등은 인권교육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금지)가이드라인 위주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각종 인식개선 교육 역시 그것만으로는 인권교육으로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오히려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이와 같은 인권교육으로서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인권의 문제를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제도적 변화 안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모든 인권 규범 및 인권교육 문서들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 인권교육 콘텐츠 설계에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자신이 속한 문화적 또는 조직적 상황에서 인권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기본적 방향성 안에서 앞의 문헌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인권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목록을 유기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교육 소재와 방법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 현안 등을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적용해 인권 실현에 문제가 되는 요인과 대안(미시적/거시적, 단기적/중장기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자신과 조직, 공동체의 실천을 찾는 훈련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적 설계는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참여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인권교육 방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번 설계에서도 우리의 인권교육 상황과 조건에 맞는 유의미한 참여형 기법의 개발과 접목이 필수적이다.
-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내용적 및 방법적 방향성 아래 각 교육 현장의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설계를 진행하였다.

## 2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 가.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적

- 세계인권선언에서 적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책과 제도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인권의 구조에 따라 이것은 당연히 인권보장 책무자에게는 인권보장 의무로 작용한다.



[그림 2] 인권의 구조와 공공업무자

- 공무원의 경우 인권의 주체이자 인권보장 책무 대리자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다. 즉 공직자의 인권 역량 증진은 곧 시민의 인권 보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의미가 한층 더 강조된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잘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자의 존엄한 삶 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권교육은 정부 관리와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켜 관할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달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남성, 여성, 소년, 소녀 등의 개인과 공동체가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부 조직과 개인은 실효성 있는 인권 실현을 목표로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을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변화에는 사회 구조, 태도, 신념, 견해, 가치, 자유와 권리, 교육의 질, 효과적 행정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Training of Trainers」, (Equita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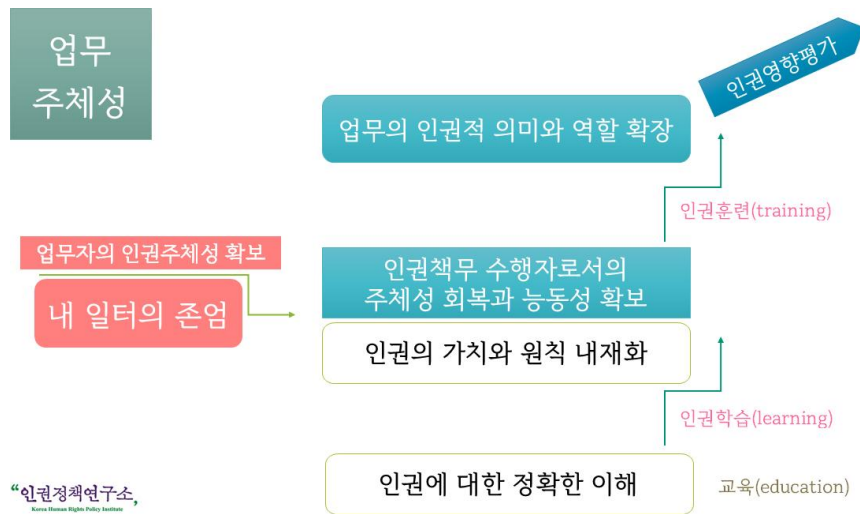
-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역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들이 인권친화적 인권정책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본 행동계획의 D절(연구팀 註-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증진행동)은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하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 202)
  - ✦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위에서 언급된 전문직 집단(註-공무원, 법집행관 등을 말함)은 매우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을 갖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 202)
- 국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업무 담당자의 인권교육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의 인권을 안정화하여 그 자체로 인권문화의 확산을 지향하는 기능을 한다(구정화, 2017). 즉 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이라는 제도 자체가 확산된다는 것이 주는 사회적 메시지의 힘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한편 현장의 인권교육 내용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곧 이러한 사회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공무원 전반의 인권교육이 법제화되는 지금이 바로 그 첫번째 분기점이라 본다.
- 또한 인권교육은 별도의 섬과 같은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 시스템은 인권보장이 그 존재 이유이므로(헌법 제10조제2문), 인권교육은 인권보장체계로서의 각 조직 안에 인권의 주류화를 회복하고 지속시키는 혈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침해예방교육/권익교육/인성교육의 틀에서만 작동하기 십상이다.
- 인권은 모든 인간의 주체적 역량의 증진을 통한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각 공적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나 인권영향평가 또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화하여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형태여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가능한 이러한 제도와 정책은 인권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인권교육-인권훈련(training)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 내 문화와 인식의 흐름상 우리 사회 인권교육이 그 첫발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제안하는 내용들이 제도개선의 시스

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와 피로감은 당연히 예방되고 교육의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인권교육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변혁의 과정이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자력화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적 변화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원칙과 법률 문서에 대한 학습과 비판적 성찰, 탐구의 촉진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Training of Trainers」, (Equitas, 2007)

-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지식-태도-행동] : “인권교육훈련이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연수자의 소속 조직/기관의 해당 방침과 규칙 등에 연결됨으로서 지원돼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204)
- 인권교육은 민주주의를 통하여 인권의 가치를 목소리 내고 행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인권역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 현장에서 법치주의를 통하여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타자화된 업무구조에 놓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인권보장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지켜내어 스스로 조직구조 안에서 도구화, 수단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3] 업무에서 인권주체성을 지원하는 인권교육·훈련

-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인권교육이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능적인 직무연수라기보다는 인권의 가치를 직무로 가져갈 수 있는 연계점을 지원하는 과정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이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훈련(training)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 행정의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우선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공직자의 인권역량은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한 전제이다. 아울러 이는 인권친화적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구호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인권친화적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없다. 조직의 구조 안에서 도구화, 수단화되어 주어진 업무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업무에서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적,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인권을 지켜내는 길이다.

## 나.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인권기본조례에 의하여 소속 직원인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모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체의 절반 수준이 제정한 정도이다.
- 한편 공무원교육체계 내 인권교육의 편성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공무원 인재개발법」이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계획,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등에서 분야별 의무교육 외 인권교육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2020, 국가인권위원회).
-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9조제1항). 이 법이 통과되면 전체 공직자의 인권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 의무가 부여된다(동법 제20조제2항).
- 이에 본 기관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하여 다음 단계의 인권교육의 전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인권교육의 지형 변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표 2 > 인권정책기본법안(법무부, 2021)

 「인권정책기본법안」
<p>제19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인권교육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li> <li>2. 지방자치단체 (이하 생략)</li> </ol> <p>제20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다. 현 공무원 인권교육의 내용적 문제점**

- 이와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직무자 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그 설계에 맞는 교육내용이 전개되는지에 대하여는 성찰적 목소리가 높다.
- 대부분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경우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이에 기인한 왜곡된 설계, 사회 내 인권교육 역량 축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왜곡과 형식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내용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는 분야별 인권교육 관계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인권교육의 이름으로 인성교육**

- 인권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인성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인성교육은 자칫 인권에 있어 권리-의무 구조를 왜곡시키고 각자의 존엄은 철저히 각자의 능력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인성 또는 도덕성은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축소해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적 행동을 개인의 인성 탓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반면 인권교육의 관심은 그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입니다. 오랜 세월 고립되어서 생활하고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던 사람, 혹은 자기의 지시대로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문화에서 명령자의 역할을 맡아 온 사람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부패 방지 서약을 받는다 해도 부패를 은폐하고 유지시키는 구조가 깨어지지 않으면 부패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교육 새로고침」, (인권교육센터들, 2018, 132쪽)



- 단순히 인권감수성만으로 다가가는 교육 역시 자칫 그 실체가 인성교육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과 처지를 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이 개인의 품성론으로 귀결된다.
- 인권은 인간 존엄의 보장을 위하여 소환된 권리이며,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라는 책무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인권교육이 감수성 교육에 머무르게 되면 모든 것은 개인들의 몫이고 국가 등 인권의 본래 의무자는 소거된다.

### 인권 없이 미담과 감성으로만 채워지는 인권교육 : '인권 없는 힐링캠프'

- 대개 인권교육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미담)를 담은 사례나 동영상 등이 활용되는데, 그 안에 담긴 인권적 관점-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의 지점을 예각적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자칫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인상적인 이야기로만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사회구조의 인권적 불완전성, 즉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가고,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인권교육의 내용적 적합성 항목 중 구조적 분석: 인권교육 기획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적 적합성 항목 중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을 지목하지 않고, 구조적 분석을 돕고 있는가”와 관련한 부분이 될 것임. 인권침해를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에 의한 것으로 지목하는 접근은 핵심 원인을 피해가게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개인과 집단이 사회 구조적으로 놓인 위치와 그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 등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함.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감성에 무게를 두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인권감수성→(인권)감수성→(인권)감(수)성→인성교육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아). 인권교육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화형식을 인권교육에 접목하고 있다. 의미 있는 시도임에도 그 내용이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인권교육이라는 옷을 입은 힐링 또는 레크레이션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경찰공무원의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찰청, 2019).

**인권감수성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문해력 !**

조효제 교수는 “인권침해를 일회성·우연성·비정상성·무작위성으로 파악하는 관례적 접근은 인권사안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고 단편적 해결책만을 제시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혹은 개인적인 주의 노력의 선에서 멈춰 개인의 인성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에게 필요한 인권감수성과 실천이란, “인권을 구조와 조건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인권침해에 관한 문해능력을 키우고 이에 합당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2022, 117-119쪽)

**직무와의 연계성에 어려움을 겪는 인권교육**

- 직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와 연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흐름은 기획 자체가 일반 시민으로서의 인권 소양을 넘어서 직무자로서의 위치에서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 현장 점검 결과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읽어내는 기획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위 경찰청 보고서 및 「법무행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21).

### 3 본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공무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제안이다. 이에 기존에 제기된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 개 분야의 인권교육 현장 맥락에 적합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권보장 책무자로서 공무원의 인권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가. 연구의 범위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적 흐름에 비추어 해당분야 인권교육의 확대와 강화에 부응하는 콘텐츠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공공분야를 선정하였다.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인권교육이 그 세 분야이다. 이는 과업요청 범위가 기도 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 아동, 노인)·경찰 공무원·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7종 개발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3종)
-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훈련가과정(2종)
-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훈련가과정(2종)

#### 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 아동, 노인)·경찰 공무원·군인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 ③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 아동, 노인)·경찰 공무원·군인 인권교육 학습자원 정리

##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형성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서면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적합성 조사 등이다.
- 우선 문헌조사는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과 학습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분야별 기존 인권교육 연구자료 또는 교재를 살펴보고 면접조사와 자문 등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학습자원을 추출하였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 아동, 노인)·경찰 공무원·군인 인권교육 업무 참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파악한 사항을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업무의 인권적 의미에 대한 이해
  -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 콘텐츠
  - 참여자들의 업무 내용 및 환경 특성 관련해 교육시 유의할 사항
  - 현재 구동되는 인권교육 시스템
- 또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인권교육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와 프로그램의 구조를 확보하였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인권교육에서도 매칭되도록 하였다.
- **적합성 조사**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분야(3종)와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전문가 서면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인 프로그램은 **사용자 평가 방식**으로 직접 시연 후 참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수정·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 다.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형성적 연구 절차에 따라 계획-조사/분석-설계-개발-평가-최종화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각 단계별 설명은 [그림4]를 참고하길 바란다.
- 특히, 본 연구에서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기획/설계 단계부터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적합도 검사를 이원하여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여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4] 연구 절차와 방법

-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 결과로서 분야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7종과 함께 부가 자료로서 평가지표, 분야별 주요 학습자원을 정리하여 최종안으로 제출한다.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II

##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관계자 조사 결과 분석

# II

##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관계자 조사 결과 분석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경찰·군인 인권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요약·정리하였다.

## 1 조사 개요

- (대상)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과 방법 설정을 위해 사회복지(장애, 아동, 노인) 담당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인권교육 참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목적) 본 조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수자 및 관계자의 요구와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별 주요 학습내용과 인권교육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조사 규모) 본 조사는 사회복지·경찰·군인 인권교육에 기획·운영·참여한 경험을 가진 교수자 및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기간 내에 총 48개 질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표 3 > 조사 대상 및 규모

단위: 명

구분	사회복지	경찰	군인	소계
교수자	4	7	3	14
관계자	13	7	14	34
			총	48

- (조사자 선정 기준) 본 조사의 참여한 정보제공자 48명은 목적 표집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목적표집 기준은 강사의 경우는 관련 인권교육 강의 경험 5년 이상, 업무담당자의 경우는 각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경험 3년 이상, 이외에 선별 기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를 선별하였다.
- (조사 기간 및 방법) 서면조사의 경우는 별도로 고안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22년 8월 1일 ~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 (주요 항목) 연구를 위한 주요 항목은 분야별 인권교육 현황, 현재 운영되는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인권교육 설계시 필요한 교육 내용, 직무에서 필요한 인권교육 분야와 사례, 인권교육 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 2 분야별 조사 결과 분석

### 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 아동, 노인) 분야

#### 1)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분석

##### ① 직무 인권교육 필요성/교수자

《교수자》가 어떠한 점에서 해당 직무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직무의 존재 이유’, ‘직무 대부분이 시민의 인권보장과 연결’, ‘직무에서 인권침해 예방’, ‘권리주체이자 책무자로서 인권보장’ 이유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직무의 인권적 사명을 인식할 기회

“행정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이 정치적 명분이나 공약 등에 따라 사업이 기획되거나 예산이나 실적 평가, 인원 모집, 홍보 부족 등의 잣대에 매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사업이 사라지기도 함. 그러나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일이 시민의 인권에 연결되어 있는 일로 마땅히 책무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행정의 집행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공공의 필요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공공영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의 존재 이유를 인권의 관점으로 볼 기회가 없었음.”, “인권 책무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함. 이러한 직무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생하였고 인권을 실천하는 것이 역할임.”

##### ●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점검 기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임과 동시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영역임. 이는 만나는 사람들의 취약성 등과 관련됨.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함. 따라서 어떠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과 구성원,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인권 관점에서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함.”

##### ● 권리주체이자 책무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할 기회

“공공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현재의 일터에서 스스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고 있음. 권리의 주체자를 지원해야 할 옹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피해자이기도 함.”, “성과나 실적 중심으로 행정이 작동하다 보니 사람이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음”

## ② 직무 인권교육 필요성/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인권교육 담당자와 참여자》가 어떠한 점에서 직무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권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특히 취약계층과의 접점이 높은 만큼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실행하는 자이며, 나아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역량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편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 ● 인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인권적 실행 지원

“인권의 최전방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하는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시선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음. 다양한 인권 관련 내용들을 접하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직렬 특성상 다수의 민원인과 접점이 있는 것이 특징임. 취약계층 등 특이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구조임.”,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을 마주할 경우,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사람의 정신력이 모자르다거나, 생활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와줘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편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본다면 업무의 시작부터 접근이 다를 것임.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주고, 적극적 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사회복지 직무의 경우, 업무의 주요 대상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함.”, “사회복지 실천은 곧 사회권(인권)의 실천이므로 사회복지사에게 인권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봄. 더군다나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권(인권)의 의무주체로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회복지 분야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이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직업군이기에 때문에 아픈 곳을 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감수성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바탕이 되었을 때 시혜나 배려의 시각에서 벗어나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공무원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실행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주체

“사회복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웰빙의 상태로 지낸다.’라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사회복지의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중 충족의 의무에 직접 해당함. 사회보장권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비인권적 요소가 산재함.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규범의 한계로 본인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일선의 공무원들이야말로 비인권적인 제도적 결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임.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문제

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작은 변화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함. 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은 이미 수년전부터 지침 등으로 강제(필수 교육)화 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 관계자의 인권보장에 필요**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 그 중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음. 또한 사회복지 직무 담당자는 노동자로서 폭언,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 없이 자신의 안전을 주장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절실함.”,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겪은 괴롭힘 민원, 직렬별 차등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면 상담과 조사 및 구제조치 등이 바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미신고 건수가 많음.”

**시사점 |**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인권보장의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직접 만나 이들의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일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즉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권적 사명이 곧 인권교육의 필요성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권적 사명이 충분히 설명되는 인권교육 콘텐츠 마련을 통하여 참여자가 인권교육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이는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을 불식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

**2) 인권교육 경험 분석**

**가) 교육목표**

① **교육목표/교수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교수자》가 인식하는 교육목표는 개념에서부터 인권역량, 인권적 대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권의 이해’, ‘행정전문가로서 인권적 관점 획득’, ‘인권 이슈의 이해’,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이해’, ‘인권 문제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와 행정의 인권적 실행’ 등을 꼽았다.

● **인권 이슈의 이해와 행정의 인권적 실행**

“인권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 이슈를 알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의 인권적 책무의 이해와 실천”,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인권 주류화”,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이해

하고 이를 통해 인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무원이 인권보장의 책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

● **인권의 이해와 행정전문가로 인권적 관점 획득**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시민이자 행정 전문가로서 보다 인권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인권의 시선으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 모색하기(구조적 이해, 구조적 접근)”

② **교육목표/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 담당자 및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육목표로는 ‘인권감수성’ 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제시된 교육목표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권 상황 및 선사례 알기’, ‘지자체 인권행정체계에서의 인권의 주류화’, ‘인권 도시의 이해’,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 상황과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등이 제시되었다.

● **인권감수성 향상**

“각 분야별 행정 현장에서의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인권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인권친화적 분위기 형성”,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등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및 관련 인권 사례(이슈)에 대한 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분야별 인권(장애/아동)교육 : 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상을 둘러싼 인권 침해 및 보장 사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지하고 그것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사람 또는 성별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재고하고 보편적 관점으로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행정에서의 인권의 주류화라는 인권행정의 목표 공유**

“인권행정의 이해 :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인권행정을 추진하는지 느낌”,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구현”, “인권행정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인권 주류화(확산)”, “시 정책사업 전반 인권행정 주류화의 필요성 인식”, “시민당사자 참여와 인권기반 행정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인권도시 구현” 등

③ **교육목표의 성취 긍정 요인/교수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교수자》가 인식하는 교육목표 성취가 가능 요소는 참여자 특성과 교육 기획과 관련한 의견이 많았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룹에서 교육목표 성취가 높았고, 참여자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인권책무의 실현 가능성이나 업무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에서 업무와 관련된 법규, 지침 등 연결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 ● **긍정 요인 : 자발성, 참여자의 욕구파악, 업무 관련성**

“교육 전 설계단계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기대 등 사전 의견수렴을 한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교육, 공무원 및 업무와 관련된 법규, 지침 등을 연결했을 때 집중도가 높음“

#### ● **부정 요인 : 의무교육, 학습자에 대한 몰이해**

“의무교육인 경우, 업무 연결성이 떨어진 교육”, “해당 기관에 대한 강의자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참여자들이 인권책무의 실현 가능성이나 업무의 적용 가능성을 낮게 인식함.”, “교육 담당자가 교육설계 후 강사를 섭외할 때 강사에게 교육의 목적, 교육참여자의 특성, 기대효과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주지 않을 때”

### ④ **교육목표의 성취 부정 요인/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 담당자 및 참여자》는 인권교육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강사와 기획자 간의 소통의 중요성과 강사의 강의 기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기된 문제점과 어려움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강사와 교육목표 등에 대한 명확한 소통 부재’, ‘학습자 정보 불충분’, ‘그저 인권감수성 중심 교육’, ‘강사의 관성에 젖은 교육 진행’, ‘비인권적 교육 환경’, ‘강사의 욕심-선명한 교육목표 아래 선택과 집중 필요’ 등이다.

#### ● **(교육기획자와 강사진과 소통 부족 등) 참여자 특성에 기반하지 않은 교육**

“교육기획자의 경우 대상자에 따른 인권교육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강의 의뢰를 하지만, 강사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강의안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있음.”, “(진행, 기획자 입장) 참가자의 사전정보(직급, 직렬, 현장 사례 등)가 충분치 않아, 인권감수성 중심의 교육 실행”, “교육기획자의 경우 대상자에 따른 인권교육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강의 의뢰를 하지만, 강사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강의안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있음.”

#### ● **교육 환경의 문제 : 교대 근무 등**

“교육참여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경우 : 완벽한 교육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교육 환경이 인권적이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 근무를 마치고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인권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움.”

### ● 강사의 선택과 집중 역량 부족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다 보니, 교육에서 언급된 사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여지가 적음. 참여자가 사례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의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 시사점 |

- 교수자와 학습자(인권교육 담당자)가 경험 인권교육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는 사회복지 행정 안에서 인권을 어떻게 적용, 실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것이었음.
- 교육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 참여자 분석을 통한 교육 내용의 업무 관련성 확보, 이를 위한 인권교육 기획자와 강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나) 교육내용

### ① 교육내용/교수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교수자》가 주로 다루는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사회복지의 의미 및 관련 사례와 접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인권적 행정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와 실천’, ‘인권의 구조와 내용’, ‘인권 이슈 분석’ 등이다.

###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바탕으로 인권 이슈와 사례를 분석하고 인권 행정으로 연결

“인권의 개념(인권의 문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인권과 이권의 차이를 포함), 인권의 역사(현 업무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 권리의 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 사례를 통한 인권의 목록 확인(세계인권선언문과 연결), 최근 사회 이슈 및 관련 사례를 인권의 시선으로 분석(근본원인 탐색), 인권협약 모니터링 프로세스에서 받은 권고 내용, 인권기반 실천”, “인권의 기본 개념 이해, 생존 보장과 사회권 실현에 중요한 사회복지(사회복지의 출현과 의미), 인권보장의 국가의 책무성, 인권 행정의 중요성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행정, 인권 행정의 증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의미와 중요성 이해, 인권 행정 사례 제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인권보장 책무자로서의 활동 모색”

### ② 교육내용 구성시 어려움/교수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교수자》가 교육내용 기획, 구성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학습자 분석을 위



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 인권교육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인 교육내용 구성 불가, 직접적인 갈등 상황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감, 현장 관련 인권사례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 정보(특히 이수한 인권교육 내용) 미제공’, ‘학습자 욕구(담당자와 협업이 관건) 파악 부재’, ‘구조적 한계 상황에 대한 돌파구 제시의 어려움’, ‘일회성 교육’, ‘다양한 욕구와 교육 정도를 가진 학습자 구성’, ‘구조적 한계 상황에 대한 돌파구 제시의 어려움’, “갈등 상황의 인권적 접근”, ‘기관의 부당한 요청’, ‘관련된 구체적 지침 및 지자체 상황 파악의 어려움’, ‘지자체 결정례 정보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

### ● 학습자 특성 및 욕구 파악의 어려움 또는 균질하지 않은 학습자 세팅

“기관 담당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정보와 교육참여자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짐. 이런 점도 기획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임.”, “인권의 이해 정도와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집단인 경우 포커싱의 문제”

### ● 인권교육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 구성이 어려움

“공무원, 사회복지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음. 그러나 대부분 기관 자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로드맵(장기 계획)이 있지는 않아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 따라서 기관에서 이전에 진행한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유사한 주제로 교육이 기획될 경우 참여자들은 인권교육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음.”, “일회성 교육의 한계 : 2시간 정도의 짧은 교육 시간으로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려움”

### ● 인권교육 기획에 참고할 해당 기관 관련 정도 등에 대한 접근 어려움

“공무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지방정부의 상황을 알기 어려움”, “지방인권보장체제와 구제제도 교육 시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등을 활용하고자 하나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는 결정례가 공개되지 않거나 최근 것은 공개하지 않음.”

### ●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의 어려움

“구조적 한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노숙인 시설에서 1인이 25명을 지원해야 하는데, 25명 모두 중증도의 환자인 경우와 같이 절대적인 인력 부족의 상황일 때”

###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

“갈등상황에 있는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을 때”, “요청한 기관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다루지 말라고 요청받을 때”



### ③ 교육내용 긍정경험/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 담당자 및 참여자》의 긍정적인 인권교육 경험은 학습자의 업무내용과 연계된 교육 내용과 적절한 교육 규모와 세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밖에 긍정 경험을 이끈 교육으로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목적에 맞는 쉬운 접근한 교육’, ‘공무원의 노동권 교육’, ‘조직 내 인권을 주제로 한 소규모 교육’, ‘인권교육을 통한 변화 사례 제시한 교육’, ‘참여자 수요조사에 기반한 직급별 교육’, ‘인권교육 기획자와 강사 간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 ●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교육

“2021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그와 같은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됨. 첫째, 인권교육 시 실무자와 관리자를 나누어 인권교육 추진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나누어 3회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관장과 노동자를 분리하여 7회기 교육을 실시함. 두 번째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임. 인권개념에 대한 욕구보다 조직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한 인권교육’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추진함. 세 번째는 기획자와 강사진의 지속적인 관심임. 사전회의를 통하여 교육기획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육 중 나누게 될 사례토론지 구성에 있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담기위해 많은 고민을 함.”, “교육내용 구성 시 수강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 ● 인권교육 진행 절차(참여자 수요조사 - 교육의 기획 - 실행 - 평가)에 기반한 교육

“교육 참여자의 사전정보 및 욕구 분석(조사, 설문지 이용, 구글)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주제 및 내용을 분류함. 내부, 이전 참여자, 강사진과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참가자 정보와 욕구와 정합성 높은 기획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제와 내용을 협의함. 교육 참여자 사전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당일 인권위원 및 시민참여단과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해 차년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함.”

#### ● 사례 중심의 교육

“교육 콘텐츠를 사례중심으로 구성하여, 교육목적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함.”

#### ● 업무 또는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 내용

“조직 내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소규모 집합교육의 경험이 신선했음. 직급, 직렬별 소규모 맞춤형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를 유도하기에 효과적이었음. 원칙에 그치지 않고, 내 조직 내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되었고, 교육을 통해 변화된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됨. 인권업무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 감추기 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옴.”, “인권교육 수강의 필요를 인권보장의 책무나 사회적 약자만의 인권을 강조하기보다, 나(또는 나의 가족)의 문제로 연관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에 대한 내용, 공무원의 노동자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실질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함.”,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인과 대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적합하였음.”

●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일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줌. 인권은 찬반으로 나누어 논쟁하기 쉬운 주제인데, 어느 한쪽이 옳다고 무작정 주장하기 보다는, 상반되는 시각이 있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점에서 교육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봄.”,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뜬 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후 인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것은 좋았다고 생각함.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는 과정은 매우 불편하고 저항감을 일으키지만, (인권)교육을 통해 새롭게 인식이 전환되고, 나아가 선입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UN 세계인권선언, UN 아동권리협약 등) 및 역사적·이론적 논거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감수성, 일상에서의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먼지차별’ 등을 통해 인권의 시각에서 삶의 문제와 공동체의 기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교육내용 부정경험/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 담당자 및 참여자》의 부정적인 인권교육 경험은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직무와 연관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가 많았다. 이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매번 큰 차이 없이 반복됨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인다.

● **교육의 내용이 인권이 아닌 교육 - 인성교육 등**

“소양교육으로 한 세종대왕의 리더십 교육이 있었는데, 인권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음. 인권교육을 듣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5-9급으로 리더십 교육은 적합하지 않음. 간부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더라도, 수평적 조직문화와 같은 인권적 리더십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을 혼동함. 인권교육을 장애인 인식교육과 같이 시혜적인 배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직장 내 갈등 상황 및 직장 갑질 교육과 변별되지 않는 교육**

“인권감수성이 낮은 일부 교육 대상자의 경우 직장 내 갈등 상황과 직장 갑질을 인권상황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성별·지위·연령 등에 따라 특정한 내용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한 거부감이 생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포용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여건상 교육과정에 반영이 어려움.”

● **새로운 내용 없는 평이한 내용의 교육**

“어느 정도 인권감수성을 갖고 있는 교육 대상자들의 경우, 포괄적 차원에서 인권의 이해를 돕는 교육 보다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인권 침해로 정의되거나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례, 현상 또는 개념들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필요”

### 시사점 |

- 긍정적인 경험의 인권교육이 되기 위한 요인으로 '참여자 특성에 기반한 교육 기획'과 이를 위한 '기획자와 강사와의 협력' 등이 중요하게 제시됨.
- 강사가 해당 기관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이 문제점의 하나로 나타남.
-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성교육 등과 같이 인권이 아닌 사항으로 인권교육의 시간이 채워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많은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타이틀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인권교육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다) 교육 방법

### ① 교육 방법/교수자

사회복지분야 《교수자》가 제시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인권영향평가 활용', '토론식 수업', '인권 규정 작성하기' 등과 같은 참여형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 인권영향평가, 인권규정 작성 등 참여형 학습 필요

“인권영향평가: 그룹별로 기관의 미션, 비전, 목적, 사업계획, 홈페이지, 소식지 등 점검 후 토론”, “인권 딜레마 조별 토론”, “인권규정 작성: 다회기 교육으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 “참여형 교육” 예를 들어 “나의 일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지 마인드맵 그리기”, “토론형 교육-1. 인권침해 관련 사례 찬반 대안 모색, 2. 단계별 질문을 주고 토론하여 발표”, “협동작업, 참여형 협동학습으로 사례분석, 대안 모색”

### ② 교육 방법/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담당자와 참여자》가 제시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직렬별 교육', '수준별 교육', '현장과 참여자 요구 기반 교육', '참여형 교육' 등 교육환경 구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 ●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직렬(행정직, 사회직)을 나누지 않고, 급수(5급, 6급, 7급, 8급, 9급)로 나눠 인권교육을 설계하고, 참

여자들에게 인권교육 내용 중 세부적으로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강사와 협의하면서 진행했을 때,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이 기억이 많이 난다고 대답함.”, “교육 내용 구성 시 수강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의 직급과 직렬 등을 구분하여 참여자에게 맞는 방식, 내용, 강사 등을 준비함.”

### ●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활용 필요 : 역할극, 체험형, 당사자 강의, 도서형 등

“인권침해 역할극, 몇 개의 인권침해 사례의 상황을 주고 그룹별로 3-5분씩 발표하고, 다른 그룹 참여자들은 인권침해적 문제를 찾아보게 하는 것”, “입장과 역할을 바꾸어 몰입하는 상황극 또는 체험형 교육 병행”, “인권 현장 찾아가기(행정가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경험해 보는 것도 방법일 듯)”, “당사자 섭외(강사로 오랜 기간 경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함)”, “사이버 강의와 집합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도서 지원(○○에서는 독서능력향상 교육으로 원하는 책을 1권 선정하면 그 책을 보내주고 1달 안에 책을 읽고 과제를 올리는 제도가 있음).”, “컨설팅 방식의 교육”

### ● 참여자의 인권역량을 견인하는 교육설계 필요

“인권감수성이 낮은 일부 교육 대상자의 경우 직장 내 갈등과 갑질을 인권 상황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성별 · 지위 · 연령 등에 따라 특정한 내용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그러한 거부감이 생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포용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여건상 교육과정에 반영이 어려움. 반대로 어느 정도 인권감수성을 갖고 있는 교육 대상자들의 경우, 포괄적 차원에서 인권의 이해를 돕는 교육보다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인권침해로 정의되거나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례, 현상 또는 개념들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필요”

#### 시사점 |

- 앞서서 지속적으로 언급된바와 같이, 교육 참여자의 특성 및 수준, 업무내용 등을 파악하여 인권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수자와 참여자 모두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의 접목과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함.

## 라)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효과

### ① 직무연결 긍정/교수자

직무 수행 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경험에 대해서 《교수자》가 인식하는 이유로는 직무와 연관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을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례 중심 토론 - 사례를 풀어갈 때 지켜내야 할 인권의 원칙을 나누며 논의’, ‘관련 지침 등 규정의 개선점을 찾고 대안을 논의’ 등이 제시되었다.

### ● 사례중심 토론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 딜레마 사례에 대해 정말 딜레마인가, 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는가, 어떠한 인권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풀어갈 것인지 토론함. 많은 경우 인권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해 인권 딜레마가 아님에도 인권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음. 사례 중심 토론은 이러한 기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인권 지향적 의사결정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줌.”

### ● 인권규정(지침) 점검

“기관의 미션, 비전, 사업목표, 인권 규정이 이용주인과 직원의 인권보장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인권 규정이 없는 경우 토론을 통해 인권 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함. 단회기 교육의 경우 인권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회기의 경우 인권 규정을 작성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수 있음.”

## ② 직무연결 긍정/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직무 수행 시 도움이 된 인권교육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와 참여자》는 자신의 업무를 인권적 관점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됨.’,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전 예방’, ‘인권교육을 계기로 자신의 업무에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찾고, 정책 개선함.’, ‘타 지자체의 선사례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에 도움.’, ‘일상화된 사회적 문제점을 일깨움.’, ‘이용인 노출 등 반복적 인권침해적 업무 관행 개선’ 등으로 응답하였다.

### ●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신의 업무 점검과 개선

“(정확하게 해당 교육 때문이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라 추정되는)인권교육을 수강했던 직원 중 한명이 본인의 업무 중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전반에 대한 차별적 사안에 대한 자문검토를 요청하였고, 검토결과 차별행위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여 정책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자문서를 송부함. 해당부서는 이를 수용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수정함(공동체 주택 입주자 모집시 치매로 판정받은 사람의 경우 입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검토 자문 이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절차를 개선함)”, “행정과 인권 또는 인권행정이 도움이 됨. 해당 교육을 통해 행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됨. 기획-실행-평가의 각 단계에서 시민(민간인)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게 됨”, “행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행정 실천 고민 및 방향 제공”, “정책사업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요소의 사전 예방”, “유관기관 및 시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교육에서 자주 반복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권행정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함. 예를 들어 사회복지 사업 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인을 다중에게 노출시키는 방식(공개적 행사, 집 앞에 특수한 표시 부착 등)을 지양할 수 있게 됨.”

### ●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인권행정 기반마련

“인권부서와 인권교육의 목적이 조직 내 문화를 개선하고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인권교육을 지속해 나감. 이를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권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력(부서별 업무협의, 대상기관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합동인권실태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관계가 형성되는 성과를 도출함.”

### ● 타 시군의 인권행정 사례

“타 시군의 인권행정 사례가 도움이 됨. 그 사례를 똑 같이 활용하기 보다는 응용하여 우리 시군에 맞게 추진하기도 함.(공무원들은 행정에서 처음 하는 일의 경우, 타 시군 추진 사례를 쓰면 좋아하는 것 같음)”

### ● 인권의식 환기

“가끔 한번 씩 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미디어 등으로 세뇌당한) 일상화된 사회를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됨”

### ●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인종이나 출신, 장애 등을 사람을 분류하지 않고 민원인 하나로 통칭하여 상대하려 애쓰게 됨. ‘틀리다’에서 ‘다르다’로 시각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민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음.”

## ③ 직무연결 부정/교수자

직무 수행 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수자》는 ‘유사 교육의 혼재’, ‘형식적 참여’, ‘참여자들의 관심 부족’, ‘개선 의지가 없는 조직 문화’ 등을 꼽았다.

### ● 인권의 개념과 역사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교육이나 인권교육 아닌 교육

“인권의 개념, 역사 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된다면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거나 또는 인권감수성, 차이와 차별, 고정관념 등 매번 반복되는 주제나 감수성 차원으로만 다루지고 마치는 경우의 문제, 혹은 성희롱 예방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 이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유사교육과 혼재되어 진행되는 문제 등이 있음.”

### ● 참여자의 의지가 없거나 무력화 된 경우

“인권교육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권한은 강하나, 인권 감수성이 낮은 경우, 실적·평가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보는 경우(예를 들어, 인권딜레마 상황에 대한 토론이나, 인권규정 지침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을 때, 딜레마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거나 내부협이나 검토 없이 인권규정을 점검해달라고 함)”, “참여자들이 무력화된 상황이라 어떤 변화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체념한 상황일 때”

### ●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한 교육

“모든 현장의 맥락이 다른 상황이라 사용된 사례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참여자들이 자기 현장에 적용하는 역량이 부족할 때(참여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온 경우)”

#### ④ 직무연결 부정/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직무 수행 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인권교육 당자와 참여자》 의견을 종합하면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인권교육 콘텐츠’, ‘단순 사례나열 교육’, ‘맥락 및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회적인 감수성과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인권교육’, ‘질문이 없는 교육’,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하는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인권교육 콘텐츠

“업무와의 연결성이 떨어짐. 대부분의 인권교육 시간은 90분이고 총론과 각론으로 이루어짐. 이론교육 중심으로 사례에 대한 강의는 협소함.”,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이 유효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이 다루고 있는 행정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실제 행정의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여 현장기반 교육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건축, 토목, 도로, 산림, 농업, 보건, 세무, 민원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업에 적용되고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업무연계형 인권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인권의 개념과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교육

“인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에 기반한 직무 설계와 집행을 연결하기 쉽지 않았음”, “맥락 및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회적인 감수성과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인권교육”, “시민당사자의 참여 기회의 보장이 핵심적 가치이나 가치 및 의무 역할 중심의 교육”

### ● 인권문제의 구조적 접근이 미흡한 교육

“사건에 대한 내용만 소개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구조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교육 : 참가자가 토의나 토론을 통해 보고 들은 교육내용을 체화할 수 있게 해야 인권기반행정으로의 실천이 이루어 질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인권교육을 단순히 재미나 가십거리 수준 또는 나와 관련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일로 여겨지게 함”, “대상자에 대한 이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더 키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음. 사회의 인식 또한 ‘사회복지=선량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봉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을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 뒤로 미루라는 관점이 교육 중에 은근히 드러남.”

### ● 질문이 없고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교육

“질문이 없는 교육”,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만 소비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생각 나누거나 의견을 나누지 않는 교육”

#### 시사점 |

- 인권교육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구체성과 업무 관련성을 확보가 필요함. 자신의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인권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이슈나 사례를 다룸에 있어 단순 소개가 아닌 인권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인권적 분석을 위한 방법 제시가 필요함.
-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도와 정책 등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다만 그렇다고 이를 반드시 이론교육으로 선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구조적 개선의 강조가 교육 참여자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환류 체계를 확보하여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분석

### 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의 유형화

《교수자》와 《인권교육 담당자 및 참여자》가 직무수행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교육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구분은 구정화(2020)가 제시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참고하여 유형화하였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내용 요구 조사 결과	
1. 인권의 이해	• 인권 현황 - 사회권위원회 한국사회에 대한 권고
	• 인권의 역사 - 재산권의 논쟁(생존에 필요한 물질 토대에 대한 권리 : 바베프 선언)
	• 인권의 개념/인권의 구조 : 사회복지의 위치 확인
	• 인권의 특성 :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인권문서)
2. 인권보장 규범과 제도	• 인권보장을 위한 법체계 • 국제법: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 국내법: 사회복지 관련 법(아동/장애/노인)
	• 인권보장체계로서 사회복지의 이해: 사회복지의 변천사, 인권책무, 인권경영, 인권행정, 공무원 현장 등
	• 인권구제 방안 및 절차
	• 사회복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특징 및 차이점, 사회권의 이해
3.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방안: 인권기반 실천, 인권보호의 당사자성, 교차성, 업무 대상자의 인권지식, 인권감수성 등
	• 인권침해 사례의 판단 방안: 인권침해 판단법, 분석 방법
	• 인권보호를 위한 실제적 행동 방안 : 대응 방안, 인권관점에서 타당한 개입 방법론
	• 새로운 인권 문제: 기후위기 등 • 사회복지 전문직 내의 인권문제: 사회복지직의 노동권, 조직문화 개선방안

### ② 인권보장의 규범과 제도 및 인권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대한 교육 내용 요구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인권의 이해 영역보다 인권보장 규범과 제도,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영역에서 세분화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 ③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에 대한 요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함께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시사점 |

- 제안된 인권교육의 세부내용 중 '사회복지 관련 법에 명시된 기본 이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는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 관련 법의 기본 이념과 목적에는 사회복지직의 인권적 사명이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직의 인권적 사명을 설명하기에 사회복지 관련 법에 명시된 기본 이념과 목적을 확인하는 것만큼 좋은 콘텐츠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관련 인권 이슈와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구조적 접근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관한 인권 이슈와 사회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각 사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구조적 접근을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 분석

### ① 프로그램 개발 제안사항/교수자

《교수자》가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사항으로는 ‘인권영향평가 활용’, ‘토론식 수업’, ‘인권규정 작성하기’ 등과 같은 참여형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 인권교육의 비대면 전환에 대비한 대안 마련 필요

“코로나19(covid-19)를 거치면서 행정에서 방역의 이름으로 인권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가와 작은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가를 목도함. 코로나19(covid-19) 시간 동안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조금이라도 이러한 행정의 역진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코로나19(covid-19)의 파고를 넘어가면서 이제 공무원 인권교육은 대면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온라인 콘텐츠 상영 등 시간 때우기로 변질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임. 인권 교육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교육방식(대면교육), 교육시간 등 하드웨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함.”

#### ● 인권교육 이력관리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인권교육 이력(주제, 교수자)에 대한 자료를 교수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교육 신청서 혹은 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천함.”

#### ● 인권교육 기획 역량 강화

“인권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공무원 인권교육 담당자(기관 담당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생각함. 그러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간략한 지침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음”

#### ● 참여적 교수법 확대

“지식위주,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교육보다 참여형 교육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 일시적 유행에 휘둘리지 말 것

“최근 ESG 경영이 지방정부에 도입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음. 그러나

이미 법령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지 못한 일반기업들이 이를 하기 위해 ESG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공무원 교육을 ESG를 적용해서 설계하도록 제안은 하지 않았으면 함.”

## ② 프로그램 개발 제안 사항/참여자(인권교육 담당자)

《인권교육 담당자 및 참여자》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제안한 사항으로는 형식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참여형 교수법 확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 밖에도 주의점으로 인권교육의 반감을 포용하고 학습자를 잠재적 가해자 위치에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괄, 개요, 원칙, 사례적용, 개선방안, 실천 약속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2박3일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함. 다소 강압적이고 비인권이겠지만, 의무 참석으로 했으면 함.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사자를 섭외하는 것도 좋다고 봄. 경험해 보면, 정말 이분들이 이게 필요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분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함.”

### ● 참여형 교수법 확대

“그림판을 활용한 인권교육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권침해가 있다면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를 찾아 보는 활동”, “참여적 수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인권관련 책이나 영화를 읽거나 보고 저자나 감독과의 만남을 통한 인권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음. 책 집필(혹은 영화 제작)의 계기나 의도, 에피소드, 한계점 등을 이야기 하면서 (인권을) 편하게 공감하고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음.”, “교육 진행 방법론에서 강사마다 참여유도·몰입도 및 전달의 효과성의 차이가 발생함. 교육주제와 방식에 따른 자리 배치도 중요하나, 한정된 교육 공간으로 교육에 어려움 발생.”

### ● 공무원의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 ● 직무연관성 확보

“직무와 연계된 구체적 사례 교육을 통해 실무에 연계되도록 함.”

### ● 공무원 조직의 문제 및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관리자 인권교육 필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의사결정권자(상급자)의 참여가 없으면 반영되기 어려움. 이것은 공무원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함. 교육 받은 개인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조례, 규정 개정 등”, “관리자 교육 과정이 별도로 필요. 공무원 인권교육을 할 때 대부분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데,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관료제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효과를 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교육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주로 ‘인권 침해자로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근본적인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경직된 조직문화가 강할수록 이런 거부감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교육 대상 기관의 장과 고위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향후 인권기본법 등 국가인권교육 계획 수립 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장들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사점 |

- 교수자와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나온 제안 의견으로, 참여형 교수법의 확대가 있었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참여자를 교육에 초대하여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안 의견으로 교육내용(콘텐츠)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인권교육 운영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됨. 본 연구과제와 별개로 공무원 인권교육 운영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여자 제안 의견 중, 인권교육이 공무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해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나 인권교육 기획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임.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적대시해서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얻을 수 없음.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직업적 사명에 대한 호명을 통해 이들이 인권의 옹호자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함.

## 나. 경찰 공무원 분야

### 1)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분석

#### ① 인권교육 필요성/교수자

교수자가 생각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경찰조직 입장에서는 ‘경찰의 사회적 의미 이해’하고, ‘경찰 직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게 해주며, ‘경찰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예방 등 시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경찰의 사회적 의미 이해

“경찰은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존재함. 단지 물리적 생명과 안전을 넘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살아있는) 인간들의 집합체’를 유지할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가공무원이자 인권수호자인 대한민국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경찰은 공권력의 한 축이자 강제력·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경찰관은 바람직한 인권의식을 함양하여야 하고, 인권보장의 취지와 의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심화

“우리 직군(경찰)은 직무 특성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의식, 개념이 없다면 이를 최소화하고 인권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나 개념이 없다면 아주 큰 침해가 생길수 있는 직군이다. 또한 직업종사자는 정의실현, 국민의 안전 등의 이름으로 그 반대에 생길수 있는, 또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한다. 경찰직업군은 반드시 타 직업군보다 더욱 많이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 경찰의 조직문화 개선

“사회복지와 다르게 경찰, 군인의 경우 폐쇄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폐쇄적 조직 문화(조직의 안전이 우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조직 문화보다 인권가치가 우선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앞서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경찰조직 내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인권을 강조합니다. 여러 중점정책이나 사업의 중심에 반드시 등장하는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나 사업이 실제 인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전혀 흡수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단 몇 %만이 표면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조직 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경

찰관이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해야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현장경찰관에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수의 경찰관(이들은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이 제대로 된 정책을 구상하도록, 그 정책을 실행하는 다수의 현장경찰관(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바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경찰조직 입장 이외 측면: 시민의 인권보호

“인권이 조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법 집행 활동이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작용이므로 경찰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절실함”

## ② 인권교육 필요성/참여자

교육 참여자는 주로 ‘경찰의 사회적 의미 이해’와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인권교육이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심화’시키며 ‘보편적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 경찰의 사회적 의미 이해

“피의자를 다루는 직업이고,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이고 인권을 소홀히 하고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갖는 원리이다. 그러니 경찰의 업무는 시민의 인권을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기관이기에 경찰 활용 현장에서 인권감수성에 대한 감성과 인권교육을 통해 지식적으로 배우는 인권이해가 융합되어야 상황을 판단하고 개입, 대처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없는 인권실현이 가능해진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의무자로서 국가기관인 경찰에 인권교육은 천부적인 것이다.” “관행으로 생각했던 부적절한 수사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민원인을 대할 때도 친절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 등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 ●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

“강제력을 동반하는 경찰력 즉 법을 집행하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권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 개개인의 언행에 인권이 담겨 있어야만 국민 만족도와 더불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임”, “경찰관은 인권의 보호자이자 실천자로서, 경찰 직무는 그 어떤 정부의 업무보다 인권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제 수사권한(체포, 압수, 수색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 ●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심화

“경찰관 업무 자체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항상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보편적 인권의식의 함양

“가해자와 피해자 간 어느 인권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확히 습득해야 한다.”

#### 시사점 |

- 인권교육을 통해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인권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나아가 폐쇄적인 기존 경찰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도 인권교육이 필요함.

## 2) 인권교육 경험 분석

### 가) 교육 목표

#### ① 교육목표/교수자

경찰 인권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의 목표로는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이해’, ‘직무수행에서 인권적 대응’,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의 개념 지식과 인권적 태도 함양을 통한 인권의식 내재화’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개념 지식의 획득에서부터 직무수행에서 구체적인 인권적 대응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인권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이해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경찰관이 인권수호자 또는 인권 보호 의무자인 사실에 대한 인식”, “경찰 활동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있음을 명확하게 주지시킨다.”

### ● 직무수행에서 인권적 대응

“직무수행 중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제고”, “경찰행정에서 인권 적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 마주하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정신질환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 인식 도모”, “국가로부터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할 약자와 소수자,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 ● 경찰 직무수행 시 인권적 공권력 행사

“공권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적법한 법 집행절차의 중요성과 비례원칙을 숙지시킨다.”, “경찰관, 교육공무원, 범죄 피해자 상담사에게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 등 국가의 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약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등을 수강자들이 숙지하는 것”

### ● 인권의 개념 지식과 인권적 태도 함양을 통한 인권의식 내재화

“인권의 정확한 개념(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 인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등 이런 모든 개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대상과 그 교육의 목적(조직의 입장에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방법도 모색하였지만, 이러한 모든 교육과정의 궁극적이고 공통된 교육목표는 인권의식의 내재화”

## ② 교육목표/참여자

참여자의 경우에도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직무수행에서 인권적 대응’, ‘인권의 가치 이해’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 ●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시민과 경찰, 동료 조직을 보호하는 인권 실현 경찰상 구현”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써 존중 받아야 되고 민족, 국가,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 또는 지위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특히 인권존중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실천을 위해 교육을 실시함을 경찰인권 교육의 목표로 삼음” “경찰이 왜 인권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 부분”

### ● 직무수행에서 인권적 대응

“경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업무 수행 중에 생겨나는 언어적, 물리적, 갈등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경찰 동료의 개입을 통한 적극적 개입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대응)을 예방”, “주요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은 목표가 명확하였음. 대표적인 예로 직무상 과오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사 사례 방지교육 등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의 동기와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됨”

### ● 인권의 가치 이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에 대한 존엄”

### ③ 교육목표의 성취 이유/교수자

교수자가 생각하는 교육목표가 명확했던 이유로 ‘직무의 연관성’, ‘소규모 참여형 교육’, ‘간단하고 명확한 목표 제시’ 등을 꼽았다.

#### ● 직무의 연관성

“인권의 기본적 개념과 인권보호의 업무적 적용에 대해 설명했을 때 이해와 적응, 공감이 잘 되었음. (예를 들면 경찰인 경우 국민의 안전권, 신체 자유권 등에 대한 설명)”

#### ● 소규모 참여형 교육

“본직은 소수 인원(10~20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 결정례를 제시한 후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여 피교육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피교육자들이 다양한 인권의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 간단하고 명확한 목표 제시

“교육 목표가 비교적 간단, 명확하여 교육 목표가 불분명하게 전달된 경우는 없었음.”

### ④ 교육목표의 성취 어려움/교수자

교수자가 생각하는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못한 이유로,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 ‘학습대상자 특성’,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방적 강의 중심’, ‘인권교육 기획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 ●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필요

“경찰교육 시 경찰 일상 업무의 고됨, 즉 현장에서 마주하는 민원인과의 갈등, 생명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대한 노출 등을 충분히 공감, 서로 지지해 주는 과정 속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면 교육효과가 더 높았던 경험이 많음. 다만, 자칫 너무 장황하게 흐를 시 국민(민원인)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등으로만 귀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도 필요.”

#### ● 교육참여자 특성

“책임에 비해 처우나 열악한 근무 여건,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대민접점 하위직 경찰관의 냉소주의와 낮은 자존감 등이 교육목표를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함.”, “경찰의 직무 성격상 접하는 모든 사안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고 접촉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대상화하는 습관 때문에 인식 제고에 한계”, “학습자에게 교육목표는 전달되나, 그게 흡수되지는 못하였다 싶습니다.”

### ●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방적 강의 중심

“경찰관 상대 기존 인권교육은 수많은(통상 100명 이상) 피교육자를 상대로 지식 전달식, 강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 진행 측면이 존재하여, 피교육자의 집중력 저하 및 반발감 형성 등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인권의 사전적인, 틀에 박힌 개념들만 설명되었을 때 명확히 전달 안 되었음”

### ● 인권교육 기획의 부재

“교육과정이 진행되기 전, 학습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에는 교육목표가 포함됩니다.”, “학습자는 자신들이 받는 교육과정에 대해 이미 어떠한 목표와 내용으로 진행됨을 인지하고 그 교육에 참여합니다. 교육목표의 전달이 명확하지 못하였다면 교육 준비가 미흡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목표의 전달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학습자에게 흡수되다’ 혹은 ‘목표가 달성되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었고, 이유는 잘못된 교육기획이라 생각합니다.”

## ⑤ 교육목표의 성취 어려움/참여자

참여자의 경우는 교육 운영 측면에서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 부족’, ‘짙은 교육의 피로감’을 제시하였고, 교육내용 측면에서 ‘교육의 목적과 맞지 않은 내용 전개’, ‘직무와 연결성이 부족, 내용 부실 등을 지적하였다.

### ● 교육운영 측면의 문제1: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운영

“일부 고정적으로 진행되어온 인권교육은 단편적으로 외부강사를 배치하여 교육을 진행. 큰 흐름 없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 “경찰청에서는 매년 ‘인권주체성 확립과정’이라는 교육을 각 시도청 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목표나 주제에 대한 제시 없이 ‘잘 알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인권과 경찰행정의 인과관계 즉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두루뭉술한 내용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인권이란 주제가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양하고 짙은 교육, 야간 후 교육을 들어야 하는 등 경찰 이해도 또는 배려가 없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발생 되는 요소임)”

### ● 교육운영 측면의 문제2: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 부족

“개인적인 생각으로 업무에 있어 계속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지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다못해 직원들의 흥미라도 끌 수 있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려면 강사 초빙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속된말로 ‘값싸고 볼만 없이 적당히 시간 때우다 갈 강사’를 최우선으로 알아보게 되고, 당연히 교육목표나 전달력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 ● 교육운영 측면의 문제3: 짙은 교육의 피로감

“찾은 인권교육에 대한 피로감으로 교육에만 참여할 뿐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다양하고 잦은 교육, 야간 후 교육을 들어야 하는 등 교대부서 특성 즉, 경찰 이해도 또는 배려가 없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발생 되는 요소임)”

### ● 교육내용 측면의 문제1: 교육의 목적과 맞지 않은 내용 전개

일상적인 인권교육 중에서 일부 교육들은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권과 연관을 짓기 힘든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레크레이션 교육(인권 박수, 신체 스트레칭하기, 친절하게 인사하는 법 등)을 함.

### ● 교육내용 측면의 문제2: 경찰직무와 연결성 부족과 내용 부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경찰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일반론적인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전, 철학 사상 등을 이야기하는 교육들도 있었음”

#### 시사점 |

- 경찰 인권교육 목표의 범주와 층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부족함. 경찰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강사의 일방적 주입식 강의로는 교육목표가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입식이 아닌 강의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나) 교육내용

### ① 교육내용/교수자

교수자는 경찰 인권교육에서 주로, ‘인권의 개념적 이해’,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 ‘경찰 관련 최근 이슈와 현안 이해’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업무대상자의 이해’, ‘경찰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소수의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 인권의 개념적 이해

“헌법상 기본권의 의미”, “경찰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인권의 개념(사전적, 법률적 개념)”, “인권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 “인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권 감수성, 공감 역량 강화 등 인권에 대한 이해에 대해 우선으로 다루고자 하였음”, “교육의 목표를 인권의식을 갖추는 것으로 삼았고, 그러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첫 교육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조직 내에서 이뤄진 인권교육을 보며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이 ‘왜 인권에 대해 저렇게 알고 있을까?’였음.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기에 아무리 여러 가지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다루더라도 오히려 교육하면 할수록 반감을 사고 인권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예를 들면 ‘시민의 인권만 있냐? 우리의 인권은 없냐?’와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옴. 우선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

“본직이 생각하는 인권교육이란 교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들이 차츰 수용할 수 있는 인권사례를 제시하여 해당 인권교육을 듣고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인권의 측면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 또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경찰 관련 최근 이슈와 현안 이해

“해당 시기 경찰 관련 이슈, 사건 등에 대한 참여 토론(천안 캐리어아동학대사건 등 지역 내서 일어났던 사건이면 더욱 좋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및 충남청 인권위원회서 논의되는 현안”, “장애인이동권 그리고 지하철 출근 시위”, “성소수자(LGBT) 인권과 퀴어축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 ●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대원칙”, “권리기반의 조직 문화와 경찰개혁”, “내가 속한 조직(경찰) 내 인권 및 인권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 지침 등”, “인권 침해 또는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인권 기본 개념 숙지”, “인권 침해 또는 범죄 피해를 본 경우, 대응 또는 복구하는 절차 숙지”, “인권 수호, 보호의 업무적 적용(업무에 적용 사례 및 침해사례)”, “동료개입 프로그램(Peer Intervention)”,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숙지”

### ● 업무대상자의 이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응급인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 ● 경찰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국가(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역할”,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강의 대상인 현장 경찰관의 요구를 파악하였고, 일선에서 인권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 경찰관의 인권 주체성과 경찰관의 인권, 현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등 경찰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들을 강의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적합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 ② 교육내용/참여자

참여자는 교육내용으로 ‘인권의 개념적 이해’와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을 위한 내용, ‘강사양성과정’

등이 교육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강사의 교육내용의 명확한 숙지, 매년 개선되는 교육 내용, 목적에 맞는 교육내용 구성 등을 적합한 이유로 꼽았다.

#### ● 인권의 개념적 이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소중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임”

#### ●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을 위한 교육

“최근 동료개입 프로그램이라는 인권교육이 해당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뚜렷하고, 내부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명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강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생각한다.”, “인권이란 주제를 필두로 성인지감수성, 폭력(언어포함), 리더십, 소통 등 대민접점 부서의 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 예,복습 효과를 통한 인권 경찰 양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도 매년 개선되고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됨.”

#### ● 강사양성과정에서 내용 적합성이 높음

“인권강사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도 경찰 내에서 인권강의를 수행하여야 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적합성이 높았다고 생각됨”, “참여한 교육으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여 중인데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인권 개념, 차별 금지법 등 기초 내용과 전문 강사로서 강의 설계, 기획, 실제 강의 기법과 강의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됨”

### ③ 교육내용 구성 시 어려움/교수자

교수자는 교육내용 기획 시 어려운 점으로 학습자 특성 측면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경찰관이 가진 피해 의식과 고정관념’, 교육 운영 측면에서 ‘형식적 운영’, ‘학습대상자의 수준 편차와 요구분석의 미흡’, ‘강사역량 부족’, 교육내용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 ●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기존 인권교육 및 인권강사들의 영향으로 인권교육 자체에 대해 경찰관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인권교육 탓에 공권력의 위축, 경시 풍조 등이 만연한다는 편견”, “인권교육에 필요한 개념 정의, 역사적 형성과정 등 학문적 내용에 대한 거부감”

#### ● 경찰관이 가진 피해 의식과 고정관념

“법집행관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 등” “외부인들은 경찰 내부사정을 잘 모른다는 고정관념과 마주칠 때”

### ● 형식적 운영

“경찰관 상대 직장교육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존재하고, 수많은 직원 상대로 진행하는 관계로 피교육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이 현상이 관습화되기도 함”, “교육 시간이 짧게 주어지는 경우, 강의 시간 부족”

### ● 학습대상자의 수준 편차와 요구분석의 미흡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분석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진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설계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이외에도 조직 내 구성원 중에는 인권교육이 관심있는 교육일 수도 있고, 필요한 교육일 수도 있고,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교육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필요도와 요구도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대면식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신청을 받아 고른 분포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향된 부서 소속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있는 조직에서는 내근업무 중심의 부서에서 교육의 주제와 그에 따른 관심도, 필요도 등등 관계없이 부서별 순번제로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 ● 강사역량 부족

“경찰청 내 인권 동료강사들의 역량 및 강의에 대한 열정이 서로 상이하여, 인권이란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 “권고사례 토론 시 자칫 ox로 흐르지 않도록 중간중간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

### ● 긍정적 사례 부족

“인권보호에 대한 업무사례 소개 시 부정적인 사례(국가인권위 결정례) 외에는 공신력 있는 긍정적인 사례가 없어 교육 시 부정적인 사례만 교육되고 있음. 물론 부정사례에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긍정적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 ④ 교육내용 부정 경험/참여자

참여자는 교육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직무 연관성 부족’, ‘피의자 인권과 여성인권 등 반복된 주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내용적 측면보다 ‘인권강사와 인권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같은 학습자 특성과 ‘실제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운영’과 ‘인권업무 담당 체계 미흡’과 같은 교육 운영 측면에서 교육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의 인권의식 고취와 함께 일반 시민의 인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 ● 교육내용 측면: 직무 연관성 부족

“교육내용 중 타 부처 사례가 많고 경찰 사례가 부족해서 현장 경찰관들은 인권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음”

#### ● 교육내용 측면: 피의자 인권과 여성 인권 등 반복된 주제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인권과 여성에 대한 인권으로 치우쳐진 인권교육은 거부감이 큼니다. 매번 반복된 내용입니다.”

#### ● 내용 측면 이외: 인권강사와 인권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인권 전문가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인권이 시작이고 끝이 아닌 추가 옵션 같은 (잘못된)마인드”

#### ● 내용 측면 이외: 실제적이지 못한 형식적 운영

“교육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교육 진행에 한계가 많다보니 딱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겠다는 말은 생각지도 않으며 어제, 오늘도 지루하기 만한 인권강의를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교육 참여자와 기획자의 공통된 생각일 것 같다.”

#### ● 내용 측면 이외: 인권업무 담당 체계 미흡

“경찰청의 인권업무가 외부 일반 임기제 직원이 담당하면서 임기 이후 흐름이 끊기거나, 인권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 흐름과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인력체계의 부재, 인권 업무는 단순히 누구나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소명의식이 내재된 인권옹호자에 의해 인권교육이 기획 진행되어야 함.”, “경찰청 인권교육 인력체계의 문제점”

#### ● 내용 측면 이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한 인권교육 확대 필요

“동료들 중에는 조직이 많이 변화해 예전과 같은 가혹행위, 위법절차 수사 등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약해진 공권력으로 경찰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보니 경찰 대상 인권교육보다는 국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변화된 인권의 개념을 이해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적합했다고 생각함.”

#### 시사점 |

-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자의 오해와 반감이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정립을 위한 내용이 필요함.
- 교육 대상의 담당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며 직무와 상관없는 내용보다는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교육 요구가 높음.
-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체계가 필요하다 사료 됨.



## 다) 교육방법

### ① 교육방법/교수자

교수자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은 지식전달보다는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 내용 측면에서는 직무 연관성을 높이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환경 측면에서 적절한 학습자 수, 학습 기간, 교수법, 강사역량 강화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 지식전달보다는 인식개선에 초점

“경찰관 직장교육의 목적은 크게 ‘지식전달과 인식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권교육은 인식개선에 해당함. 단순한 지식전달은 그 전달과정 및 효과달성이 어렵지 않으나, 인식개선(인권강의)은 많은 시간과 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고 피교육자의 반발에 대한 수용 및 공감 그리고 설득 기술이 요구됨”, “인권강의를 지식전달 강의와 같이 진행할 경우, 피교육자의 반발만 초래할 뿐 ‘아니함만 못한 강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함”

#### ● 학습 내용 개선(직무 연관성, 현장 사례 중심 등)

“직군의 직접 사례 및 인권위 결정례를 통한 직군 맞춤형 교육(직군 내 동료 강사 등 활용)”, “경찰뿐 아니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조직에는 이미 지칠 정도로 많은 정책과 사업으로 인권의 지식을 담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미 어설피더라도 이론적 지식을 갖춘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론을 다시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장의 이야기로 결론을 이야기해 준 뒤, 그들이 왜 그 결론이 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스스로 이론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경찰관들이 관심을 갖고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서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음.”, “이는 강사 위주의 주입식 일방적 인권교육이 아니라, 피교육자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피교육자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강사 생각을 주입하려 하지 않고 해당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권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려고 노력하는 등 피교육자가 해당 수업을 일부라도 수용하거나 의식 전환하게끔 유도하였음”, “교육 자체는 직무의 인권적 수행에 필요한 구성원을 위해 이뤄지지 못하였기에 제가 기획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답변드립니다.(적합한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다만, 기획자로서 모니터링하며 강사나 교육진행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개선 수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강사양성 보수교육’ ‘교육담당자교육’ 계획된 교육에서 보다는 실제 그들의 현장에서 언급하였을 때 흡수율이 좋았던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 학습환경의 개선(학습자 수, 학습 기간, 교수법, 강사역량 강화 등)

“경찰관 대다수에 대한 인권의식 개선을 목표로 삼지 말고, 현실적으로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선 인권의식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생각함.”, “이에 인권강의는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10~20명 그룹으로 진행하고, 한두 차례에 걸친 수업이 아니라 장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진행하고, 방식을 현장 사례 중심의 토론회 강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본직은 다수 인원을 상대로 한 비효율적 인권교육이 아니라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10~15명 상대로 인권강의를 진행”, “거꾸로 학습(교육방법론의 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형태로 생각해본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인권주체성 향상을 위해 <나의 권리장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스스로 자기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교육을 받게 되면 그저 자신은 인권보호에 소비되는 국가의 부속품 정도로 위축될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지만 코로나 시국을 넘기면서 거의 사라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기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교육에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대면식 인권교육 과정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례’를 활용한 실습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론으로 나아가는 건 어떨지 합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 등 학습이 된 전문 동료강사를 통한 교육 필요”

## ② 교육방법/참여자

참여자들은 좀 더 교육대상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현장을 공감하고 집단상담, 모둠활동, 토론, 문화콘텐츠 활용, 성찰적 글쓰기, 게임 등 다양한 교육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 교육대상자를 고려(현장 공감, 교육대상자에게 비전 제시)

“나약하고, 힘없고, 민원인의 악질적인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실질적인 경찰의 모습을 인정해주면서 그래도 경찰은 인권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하고, 피의자,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자신의 가족도 지킨다는 내용의 교육, 인권 경찰로 나아가야 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의 교육이 필요해 보임.”

### ● 교육방법 개선(집단상담, 토론, 문화콘텐츠 활용, 성찰적 글쓰기 등)

“집단상담 형태의 소그룹 모둠 교육(이때는 전문인권상담 및 심리학 전공자의 코워크)”,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또는 영화 등으로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론 형식의 인권교육 또는 본인이 취급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소회를 기록해보는 인권 글짓기 등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나마 소규모 대면교육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보임”, “인권 퀴즈, 초성 게임, 동영상, 모둠 활동”

#### 시사점 |

- 지식전달에 그치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 사례를 통한 토론과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함.
-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교육 시간이 너무 짧음. 시간 안에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의 대면 교육, 자유로운 대화 형태의 토론회 수업 등의 요구도가 높음.)

## 라)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효과

### ①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사례/공통

교수자와 참여자 모두 ‘직무의 인권적 이해’와 ‘직무수행의 인권적 대응’ 측면에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②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사례/교수자

교수자는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 사례로 ‘인권위 권고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현장을 개선하는 효과’를 주었으며, 학습자의 ‘인권의식의 강화’됨에 따라 ‘직무수행 시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직무의 절차에 대해 단순히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상의 인권문제를 동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 ● 권고에 대한 반감 절감과 현장 개선 효과

“일선 서에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는 반감 정도가 덜해짐. 거기에 비슷한 다른 사례를 찾아 권고 내용을 적용시키려 함. 예) 수갑가리개 권고→포승줄가리개 새로 제작한 타지역 선례에 대한 토론”

#### ● 강화된 인권의식

“경찰청은 2010년경부터 꾸준히 경찰의 과오(남영동 박종철 사건 등)와 인권보호사례(안병하 경무관 사례 등)를 교육하면서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교육해왔고 최근 경찰관인권행동강령 등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경찰관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음.”, “본직의 토론식 수업에 참가한 경찰관이 이후 공무수행 중 과거와 달리 인권적 측면을 한 번 더 고려하여 직무수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후일담을 전해 들음”, “신체의 자유,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업무 적용 시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지?”에 대한 답이 되고 인권의 이해가 되었다. (경찰공무원으로 과도한 장구 사용 및 부적절한 장구 사용에 대하여 다른 국민과 당사자의 안전과 수사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인권침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

#### ● 일상의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

“일회성 교육만으로 특정 분야의 인권 교육도 완성될 수 없음. 다만, 교육 기회를 통해 수강생들이 특정 분야 인권 강사와 네트워킹을 구성한 후, 수강생들이 인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연락하여 질문하고 해결함.”

### ③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사례/참여자

참여자의 경우 ‘경찰직의 인권적 역할 이해’,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

으며, ‘개인 인권역량 강화’, ‘인권교육의 계기 마련’ 등도 제시되었다.

### ● 경찰직의 인권적 역할 이해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 인종, 국가, 성별 등에 대한 차별과 사회 전반에 고정관념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알게 됨으로써, 경찰업무수행 시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감수성과 함께 공권력 집행 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됨”, “강제력을 동반하는 경찰력 즉 법을 집행하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 개개인의 언행에 인권이 담겨 있어야만 국민 만족도와 더불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임”

### ● 직무수행 시 인권적 대응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교육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직무사례를 기반으로 어떤 점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관으로서 실천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직무교육이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니까요.”, “민원인을 대하는 언행과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

### ● 개인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 계기 마련

“본인은 교육에 집중하는 편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로 진행 되니 인권교육은 수강자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단순 교육이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 강의를 해야 한다는 강사과정 교육이기에 교육 이후 개인적인 인권공부 시간이 필요했다. 즉 인권교육 자체 보다는 인권공부를 하게 만드는 계기, 기회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도움되었다.”

## ④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안 된 이유/교수자

교수자는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진부하고 반복된 내용, 직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문제,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인권침해 예방만을 강조한 내용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형식적 교육운영과 접근 방식 측면에서 인권을 직무수행의 도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 ● 진부하고 반복된 내용

“경찰서 내에서 진행되는 인권강의(내외부 강사 모두)는 대부분 속칭 ‘하나마나한 소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피교육자 역시 ‘들었던 내용을 또 듣는다. 감흥도 없다. 대충 시간 때우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함”

### ● 직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

“결국 인권강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 실질적으로 피교육자 중심의, 피교육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경찰관 대상 인권강의의 큰 문제점임”, “인권에 대한 보편적 내용에 대하여서는 (업무수행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 “본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직군이 매우 중요하고 직군에 적합하게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 없이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곧 직무수행에도 연결되지 못한다.”

### ●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인권침해 예방만을 강조

“경찰의 구체적인 절차위반이나 수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침해 권고사례 등은 현장 경찰관에게 냉소를 심화시킬 뿐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이를테면,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 위반 같은 사례교육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절차위반을 문제로 삼아 권고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오히려 인권 기피증의 원인이 됨.”

### ● 운영 측면: 형식적인 교육운영(강사 섭외, 강의 시간 선정 등)

“무엇보다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경무부서 교육담당이 인권강사를 섭외할 때, 기존 섭외 인력풀을 계속 활용하거나 해당 강사의 강의력을 실제 확인하기 보다는 프로필과 강의 경력을 주로 신뢰하는 경향이 존재한바, 나아가 섭외된 인권강사의 인권 전문성과 강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주로 존재하고, 피교육자를 위한다는 핑계로 계획된 강의 시간보다 단축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하는 등 인권이란 주제의 무게를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교육 참여자들이 인권 교육을 반복해 받지 못한 경우”

### ● 접근방식 측면: 인권을 직무수행 도구로서만 접근하는 문제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는 내근 부서 근무자들로 조직 내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육 자체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인권의식을 갖추지 않고,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은 채 교육의 내용을 TEXT로 인지를 하게 되면 어설픈 꾸밈어로 인권이란 단어가 쏟아집니다. 인권이 직무수행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지요.”

## ⑤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안 된 이유/참여자

참여자가 생각하는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내용의 부실’, ‘편중된 교육내용과 범위’의 영향으로 ‘학습자의 형식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교육기획 부재’와 ‘강사역량 부족’으로 기인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를 가해자 위치에 놓는 식의 접근’은 참여자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 ● 교육내용 부실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집해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도 매년 약 90명 남짓을 대상으로 하는데 워낙 인기가 적어 항상 거의 반 강제로 희망자들을 모집한다. 강의 자체의 질이 높지 않고 흥미도 떨어지다보니 안그래도 남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경찰관들은 애초에 강의를 귀담아 들을 생각이 적고 자신의 업무 습관까지 바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

### ● 형식적 참여(편중된 교육내용과 범위)

“대부분의 동료 직원들은 교육에 형식적으로 참여만 할 뿐 내용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피의자, 여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교육은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에 대한 것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어 균형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인권강의는 100명중 99.9명은 강의를 틀어놓고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어플을 통해 집에서도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집에서 6시간씩 인권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 교육기획 부재와 강사역량 부족

“교육기획 담당자가 인권감수성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내재된 내부 전문가를 양성, 발굴하여 교육을 형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인권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이들이 내부강사가 되어 일할 때, 인권교육에 진심이 실무자를 통해 인권교육이 빛날 수 있도록 듣는 이들에게 배움과 울림이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 교육대상자를 가해자 위치에 놓는 문제

“경찰이 잘못했던 사례(특히,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경찰이 잘못했기보다는 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경찰을 비난하거나 경찰관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 식의 강의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경찰도 아니면서, 현실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강의를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의 대상에 대한 비난 보다는 격려와 공감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할 때는 전체 경찰이 그렇다라는 식의 접근 보다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조금 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시사점 |

-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성 증가. 권고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려는 등 현장 개선 효과 있음.
- 인권침해 관련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인권침해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같은 직무 연관성이 높은 교육내용에 호응도가 높음. 그러나 인권이 직무수행에 있어 금지 가이드라인이 아닌 목적과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해야 함.

###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분석

《교수자》와 《참여자》가 직무수행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교육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구분은 구정화(2020)가 제시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참고하여 유형화하였다.

경찰 공무원의 교육내용 요구 조사 결과	
1.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의미
	• 인권의 역사
	• 인권의 개념
	• 인권과 다양한 가치
	• 헌법으로 읽는 인권
	• 인권의 발달 및 확산 과정
2. 인권보장 규범과 제도	•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경찰이 지켜야할 인권 국제기준, 각종인권관련 협약(고문방지협약), 국제적 인권보호 정서 및 패러다임의 변화 소개
	• 인권보장체계로서 경찰의 노력: 각종 규정(법관련, 규칙,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동료개입 프로그램 등)
	•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경찰직이 가져야할 책임의식, 조직문화 개선 등
3. 인권문제의 인식과 해결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 장애, 정신장애, 범죄인, 노숙인 등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방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이드
	• 인권침해 사례의 판단 방안: 인권침해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
	•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활용(타 기관 연계 등)
	• 경찰직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공감 필요

- 경찰 공무원의 경우 ‘인권의 이해’ 영역과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담은 인권문제의 인식과 해결’ 영역의 요구가 많았다.
- 특히, 교육내용은 방향성으로 최신 이슈 활용, 직무 연관성, 실무 개선, 학습대상자 고려, 통합적 접근과 사실 검증 필요를 제안하였다.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비롯하여 업무 중에 만나는 대상자(민원인,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기타 의견으로 일반 시민(사회적 약자)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4)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 분석

### ① 제안 사항/교수자

교수자의 제안사항으로는 앞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학습대상자의 충분한 고려’, ‘사례 선정에 신중하기’,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체계성 마련, 교육내용의 신뢰 확보하여 교육체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효과적인 교안 제작, 교육 시간, 적정 강의 분량, 강사역량 강화, 학습대상자 특성 파악 등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전담, 경찰 자력화 등 ‘구체적인 교육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 학습대상자의 충분한 고려

“인권 강의는 긴 호흡을 갖고, 피교육자가 해당 강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에 고민을 충분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됨”, “직군과 직업종사자를 이해하는 강사를 통한 전문 교육 필요”, “인권감수성 교육과 같이 당장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꼭 필요한 교육은 최대한 수강생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경찰관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짚어 주어야 강의 내용을 수용하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 사례 선정에 신중하기

“경찰활동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관들에게 수갑사용은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나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제압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물리력이며 신체적 고통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가 불가피한데 수갑사용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단정 짓고 수갑을 채우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결정례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수갑을 사용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수갑사용에 의해 인권침해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갑사용 상황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압하려는 경찰관과 이에 저항하는 피의자 등의 물리적 갈등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성과 최소침해에 있어 이점이 있을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논쟁적인 사례를 들어 경찰관의 법집행을 권한남용으로 규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이 인권교육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 ● 교육체계 개선(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체계성 마련, 교육내용의 신뢰 확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누어 기초과정에서는 개념, 역사, 헌법상 기본권과 법집행의 의미, 나의 기본권(인권주체성확립) 등을 다루고, 심화과정에서는 인권침해 감시기구, 국제인권규약,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어 피교육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경찰관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의 여건에 따라 교양, 직무교육 등 일회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는 식이 되기 쉽습니다.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경찰관, 군인에 대한 생각

과 시선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과연 전부인지 면밀하게 정말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으로 우리가 아닌 그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 ● 교육환경 개선(효과적인 교안 제작, 교육시간, 적정 강의분량, 강사역량 강화, 학습대상자 특성 파악 등)

“교육 PPT 작성 시 1매당, 5줄 내외로 작성하여, 수강자들의 시인성 제고, 교육 PPT 작성 시 PPT 1매당, 강의 시간이 3~5분 내외로 소요되도록 하여 수강자들의 집중도 제고, 교육 PPT 분량이 강의 시간 1시간당, PPT 10매 위주로 강의하여 수강자의 숙지도 제고”, “교육 시간 1시간당, 수강자에게 질의 시간을 10~20분을 제공” “이 같은 교육 PPT자료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에서 강의자의 교육 자료를 사전에 감독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강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과 노력을 저평가하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비난받을 수 있음.”, “강의자가 책 1페이지 전체 내용을 PPT에 복사하여 읽어주거나, 강의 시간 한 시간 동안 30여 장의 PPT를 보여주어 수강자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음”, “동료강사에게 인권위 등에서 전문인증 등 전문화 교육 필요하고. 그 강사(직군과 종사자를 이해하는)로 하여금 지속적 맞춤형 교육이 절실”, “교육기획자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대상자인 학습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습자와의 공감을 위해서는 학습자, 학습 동기에 대한 사전분석이 정말 필요합니다.”

### ● 구체적 인권교육 영역으로 확대

“경찰관의 인권주체성 향상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인권문제만 나오면 “하위직 경찰관의 인권은?”과 같은 공격성 질문을 하는 직원들에게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고 스스로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치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전담 경찰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필요해요. 학교전담 경찰이 종종 학교의 변화된 인권지형을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 ② 제안 사항/참여자

참여자는 제안사항으로 ‘경찰의 인권보호에도 관심 필요’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경찰 인권교육이 그간 교육대상자를 고려하지 못한채 목표달성과 교육내용 전달에만 집중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 강사역량 강화와 학습방법 개선 필요도 언급되었다.

### ● 경찰의 인권보호에도 관심 필요

“제발 좀,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해야 할 직업군이,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국민들에게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 (욕설, 폭행, 잦은 민원제기 등)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스트레스 해소법 제공 등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이야기는 ‘나의 인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진상(?) 시민에게 매일 같이 공격 당하지만 아무런 반



격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갑’이고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이 약자이지만, 공무원의 인식 세계에서 갑은 ‘시민(시민 중에서도 진상 민원인)’이 갑이고 공무원은 ‘을’입니다. 공무원 인권교육에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은 진상들이나 찾는 권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 앞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 공직자로서 당연히 보호하고 옹호해야하는 것으로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무조건인 인권의 실행자로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역시 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려도 교육에 반영되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 없이, 시민 단체나 인권 운동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월급만 받고 일을 안하려고 한다, 인권에 관심이 없다, 아직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이 진행된다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 교육을 패싱해버리거나, 심할 경우 공개적으로 강사에서 반발하는 백래시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설계 시 이에 대한 이해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교육대상자의 세심한 고려

“단순히 국민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교육은 직원들이 너무 자주 접해 식상하고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인권과 공권력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고 공권력의 주체부터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느끼게 교육하면 자연스레 그 영향이 안팎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함”, “공감받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은 거센 반발만 불러올 뿐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게 일상적인 인권교육, 반복된 교육은 질립니다.”

### ● 강사역량 강화와 학습방법 개선 필요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로 가져와서 느끼게 하는 강사의 역량과 진정성이 교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시 의무 교육에 따라 대상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식 교육 보다는 참여식 교육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 시사점 |

- 학습자의 인권 이해도가 모두 다름에도 일회성 혹은 일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짐. 학습대상자의 직무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학습자 분석이 필요함.
-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교육 시 사용하는 사례는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자료 개선에 요구도가 높음.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안이 작성되고 적절한 시간 분배가 필요함. 또한 학습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다. 군인 분야

### 1)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분석

#### ① 인권교육 필요성/교수자

교수자가 생각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에 많이 나타난 것은 ‘군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었다. 또한 ‘군 문화 개선’, ‘군 직무의 인권적 의미’ 이해, ‘시민교육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 군인의 인권보호

“군대 내 폭력과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야 겨우 내부사정이 바깥에 알려지는 수준.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실정이라 군대 내 자정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시급히 필요함.”,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 사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 행동강령 교육, 전군의 인권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됨.”, “군 조직문화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인권교육이 강력히 요구됨.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 속에서 폐쇄성이 강한 조직 특성을 가짐. 그만큼 인권침해가 쉽게 용인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임. 따라서 군대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절실히 요구됨.”, “군에는 다양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군인과 국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간부와 병사의 관계, 병사와 병사의 관계, 간부와 간부의 관계 등에서 장병들은 본인의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고 싶어하고 인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 ● 군 문화개선

“또한, 외부강사가 들어가는 인권교육이 특히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내부의 사정을 밖으로 알리고 동시에 내부도 이로 인해 일정한 긴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 ● 군 직무의 인권적 의미

“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 군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함. 특히, 군인의 경우는 인권 실현의 책무를 진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헌법적 명령을 부여받고 있음. 군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인권 실현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율배반임.”

#### ● 군 직무의 인권적 해석\_군 조직 임무 특성

“군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력을 다루는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서 군인은 올바른 인권 의식 및 가치관 함양이 필

수입니다.”

### ● 군인도 인간

“일단 직무의 영역을 떠나서 군인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인권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 ● 군의 평시, 전시 임무 구분

“다른 직무(경찰, 사회복지 등)의 인권교육과는 조금은 다르게 평상시에 군인은 보통 군 내부의 군인들과의 관계에서 인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전쟁 시에는 국민 등과 접점이 많이 생기므로 당연히 군인도 인간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인권(기본권) 수범자로서 올바른 인권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 ● 우리 사회에 인권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

“인권교육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공교육 시스템 내에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하고 있더라도 인성교육과 혼용해서 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헌법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인권교육이 현실이 될 수 없다면, 군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장병들이 사회로 배출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일상에서 특히 계급사회에서는 무엇이 인권침해적 언동(言動)인지 알지 못하는 위계에 있는 계층에 대한 교육의 시급성과 아무리 교육을 하여 강조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특히 군인은 강력한 도덕적 자질을 요구받는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인권 의식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 ② 인권교육 필요성/참여자

참여자는 주로 기본 소양으로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이외에 인권친화적 군 문화를 위해서, 직무의 인권적 이해, 권리 이해, 인권이슈 이해 등 개인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 기본 소양

“법정의무교육으로서의 부분도 있지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비롯한 4대 악성사고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에 근간이 되고 있으며 관련 지식과 더불어 감수성 배양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교육들이 종합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시민교육 차원/인권친화적 군 문화

“군인으로서 본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발판이 되며, 밝은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때문에”

● **인권친화적 군 문화**

“군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및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

● **시민교육 차원**

“현재 입영장병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교육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함”

● **직무의 인권적 이해**

“군인은 다수의 사람을 접하고, 여러 인권적인 제한을 받기도 주기도 하는 직업이기에 필수 교육으로 생각함”, “군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임”

● **인권침해 예방**

“행정보급관 및 보안업무 담당관 겸직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인해 병력들에게 과중한 업무 지시 등 기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함”, “모든 군내 사고 예방교육의 본질은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일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임”

● **인권이슈 이해**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 개념, 역사, 결정례, 일반적 개념 등은 교육대상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근 인권 이슈를 우리의 삶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확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

●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해**

“‘인권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교육’,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서, 특히 군 인권 교육은 우리 장병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군 복무 기간 동안 휴가권, 진로권 등 기본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추구하고 조화로운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전투업무에 더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사점 |**

- 군인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 인권교육을 통한 군인의 인권 의식 함양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 군인의 존재 의의와 연결된다는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메시지 필요

## 2) 인권교육 경험 분석

### 가) 교육목표

#### ① 교육목표/교수자

군 인권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의 목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권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과 관련한 인권교육 목표를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주로 군조직 문화를 인권적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군이 가지는 역할을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인권의 이해

“인권이론(정의, 역사)을 현실 사례와 연결할 수 있다”

##### ● 인권의식/인권감수성 함양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있는 배제와 차별의 문화,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혐오의 표현을 알아차린다.”,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의 가치 이해 및 내면화 등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 ● 인권친화적 군문화

“인권친화적 군대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실천 한 가지를 약속할 수 있다.”,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 “군대 조직 내 잘못된 의식, 문화, 약자의 인권취약성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 ● 군인의 인권적 역할 이해 등

“군인의 지위(이중적 지위)와 역할(인권 실현) 이해”, “군 관련 인권 주제(질문)에 대한 사고(思考) 확장을 통한 인권 역량 증진”,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고, 임무가 다양해 요구되는 교육목표도 다양함”

#### ② 교육목표/참여자

참여자는 대체로 교수자의 인권교육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의 인권만이 아닌 사회 일반에서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 ● 인권의식 함양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

### ● 인권친화적 군문화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병영문화 육성과 장병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육군’. 이는 군장병 모두가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내 전우를 존중하고, 강한 군대로서 발돋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부대 인권문화 개선, 인권관련 문제의 예방/대응”

### ●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품성을 기르고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기르는 것. 최종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 ● 인권교관 역량강화

“인권교관 역량 강화(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의식 개선, 인권교육에 필요한 지식 습득)”, “인권교육의 필요성, 교수법”

## ③ 교육목표 성취/교수자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목표의 전달에 있어 교수자의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며, 특히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계급이라는 위계질서를 고려한 참여자들의 배치,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여타 인권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보다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목표의 전달이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 ● 군 특수성에 의한 한계

“그 어느 곳보다 상하 위계질서가 공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참여, 토론 등을 강의에 배치할 경우 계급을 고려한 모둠 구성 등 여러 제한 지점들이 많음.”, “병영문화에 익숙한 참여자들의 한계상 강사가 참여자 생각을 듣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듬.”

### ● 명확하게 전달된 경우

“참여자들의 상호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을 때”

### ● 전달되지 못한 경우

“강사가 자신의 지식적 우위를 과시하며 설명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때.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조직 관리 경험을 가진 간부이기 때문에 주관이 강한 편이므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④ 교육목표 성취 어려움/참여자

교안이 제공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 교육목표가 불명확하게 느껴지고 참여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내용 중복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이 중첩됨(인권위 진정조사 사례, 군 인권 사례 부분)”

##### ● 강사자질

“교수법 강의가 강사마다 살짝씩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음.”

##### ● 교육준비 미비

“교안 제공이 미리 되지 않아 지식 습득과 배경지식 이해의 어려움.”

##### ● 편향된 교육내용

“일부 인권교육은 군법교육이나 법리적인 해석 사항이 주를 이루거나, 인권감수성에 관한 이야기로 교육목표가 불분명했음.”

##### ● 교관의 인권역량 부족

“인권교관으로 차출된 경우, 인권교육 필요성 및 교육목표가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됨.”

##### ●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인권에 대한 역사 및 전문적인 내용이 주일 경우 인권이라는 주제가 어렵고 거부감으로 다가옴.”

##### ● 군법교육으로 운영

“초기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이 권리구제/신고 방법, 주요 징계절차 위주 교육으로 강조/편성되어 ‘군법교육’과 비슷한 성향을 추구하며 교육목표가 다소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했음.”

#### 시사점

- 일반적인 인권인식 증진, 인권친화적 군문화 등을 교육목표로 한 인권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교육목표가 제대로 달성하는 데 있어 강사의 일방적 강의로는 역부족임을 엿볼 수 있음.
- 교재 책자 제공. 강의 주제의 중복(특히 사례 강의)이 없도록 강좌 기획시 유의, 군법교육으로 운영 되지 않도록 유의,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경우 교관들의 인권 인식과 지식적 배경에 맞춘 강의 설계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나) 교육내용

### ① 교육내용/교수자

인권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까지 다양한 교육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 존엄성’, ‘인권이해와 가치’, ‘인권친화적 군문화’, ‘군인의 인권’, ‘지휘권과 기본권의 관계’, ‘인권침해의 예방, 구제’ 등으로 나타났다.

#### ● 인간존엄성

“계급은 달라도 각자는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이다.”,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 군대에 묻고 싶다.”,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하여 새로운 인권 상상하기.”

#### ● 인권의 이해

“인권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인권의 역사성과 현장성, 특히 근대 인권 개념이 가지는 국가 권력의 책무성 강조.”, “개인의 용기가 아닌 모든 이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

#### ● 인권의 가치

“차별의 악순환(차별은 확대, 재생산된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인권 다시 생각하기(변화를 위한 나의 태도)”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개인적, 제도적 차원의 연대.”

#### ●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 구제제도(사문화가 되지 않도록)”, “인권이 불완전한 곳에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 ● 군인의 인권

“사례 위주의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최근 군 내외부에서 군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을 가감 없이 살펴봄으로써 인권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군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복을 입지 않은 시민이 생각하는 군 인권에 대한 이야기, 제복 입은 시민이 생각하는 군 인권에 대한 이해.”, “군대 인권 사각지대는 왜 생기는가?(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인권친화적 군문화

“일상의 작은 실천과 소통이 모여 인권친화적 군대를 만든다.”, “인권과 권력관계(인권 친화적 군 문화



를 만들기 위해) “지휘권과 군 인권”, “군 인권 실태”

### ● 지휘권과 기본권

“지휘권과 기본권의 관계, 군인의 이중적 지위, 군대의 인권 실현 책무, 군인의 인권 제한 이유와 근거 (제한과 침해), 군대에서 인권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등.”

## ② 교육내용 기획·구성 시 어려움/교수자

교육내용과 관련된 범위, 강사 간의 내용 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내용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대체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보다는 군 조직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보이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지휘권과 인권에 대한 해석, 군법교육처럼 학습자의 실용적 욕구에 맞추면서도 인권의 본질을 다룰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구성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존하는 인권교육 관련 연구, 콘텐츠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에서의 교육 상황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군 문화\_상하계급성

“같은 보직(군 인권교관)을 맡고 있더라도 계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 군 문화\_세대갈등

“기성세대가 MZ세대에 대해 막연하게 갖는 거부감이 큼(ex. ‘나 때는 ~’, ‘핸드폰 쓰게 되었으니 만족하지 않느냐’, ‘급식도 너무 좋아지지 않았냐’ 등)”

### ● 군 문화\_조직의 특수성

“군대 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 ● 교육내용의 수준\_쉬운 교육 선호 경향과 이에 맞춘 교육 준비의 어려움

“인권교육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하면 군에서 인권 교육을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어려우니 아주 쉬운 인권의 내용만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 인권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 전반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수의 인권학자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한 상황임. 쉽게 내용을 구성하면서도 인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

### ● 전체 과정 기획과 각 강좌의 역할 불명확에서 오는 중복 등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강사들의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 때문에 초기에는 교육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지금은 다른 강사의 강의안 확인을 통해 내용 중복을 피함.”

### ● 교육내용\_지휘권 내용 추가 필요

“예를 들어 특히 군은 무엇보다도 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으로서 인권과 지휘권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고 쉽게 설명해 주기를 원함.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한 상황.”

### ● 좋은 교재/콘텐츠 부족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영역, 태도와 가치의 영역,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태도를 행동화하는 기술의 영역에서의 핵심역량 등에 대해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실 있으면서도 군 인권에 특화된 콘텐츠는 아직 없음.”

### ● 환경\_교육시간 한계

“1~2시간 내에 앞에 언급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의가 가능한지.”

### ● 기획, 설계의 어려움

“인권교육이 군의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집중되면 군법교육으로 흐르거나 인권이 군 조직 관리의 수단쯤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하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실용적 측면, 즉 ‘실제 군 생활에 인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면서도 인권의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 ● 교육환경 개선

“집합교육에서는 매 시간마다 교육하시는 강사들의 열정과 더 구체적인 자료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수고한 흔적이 많아 매우 감사한 반면, 교육 시간이 많이 촉박하였으며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③ 교육내용의 긍정 경험/참여자

군 인권교육에서 참여자는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혼란했던 개념을 정립하고, 나와 연관된 맞춤형 이론과 실무가 함께 진행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가가 인권 존중을 위해 만든 많은 제도와 법률을 알 수 있었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 ● 인권 개념 등 이론적 기초 습득

“교육 대부분이 이론 내용이기에 기초를 배우기에 좋았음”, “인권의 개념, 표준 강의안 습득”, “‘인권’이라는 가치가 탄생된 배경과 역사, 그리고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 ● 인성과 인권 등 혼동스러웠던 개념 정리

“적합하다고 생각함. 기존 부대에서 인권과 인성, 도덕성 관념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인권에 대한 언어나 법률적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내용이 적합했다 생각함”

### ● 인권과 연관된 제도와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됨

“부대에서 임무 수행을 하면서 상급부대 규정, 지침 등에 대해서만 거론하며 지도/교육을 하였으나, 인권교육을 통해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가가 인권존중을 위해 만든 많은 제도와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음”

### ● 맞춤형 교육

“인권교육 대상에 따라 중점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예, 교관일 경우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목표 변경 혹은 교육 대상자의 인권 이해도를 사전 파악하여 교육 중점을 변경하여 적용 등)”, “교육생 수준에 맞춘 상호 교환식 강의로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의 기준을 찾을 수 있었음”, “대상자에 맞는 현실과 기초적인 내용을 통해 접근성 향상”

### ● 이론과 실무(사례, 강의) 교육 : 군 인권 교관 양성을 위한 체계

“인권의 개념, 실제 부대 내 인권사례, 과거 인권침해사례, 본인이 인권교관으로 활동할 때 사용할 인권교안 작성 및 발표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교관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음”, “인권교육 내용이 인권의 정의, 군 인권의 특성, 군인의 인권목록, 인권과 지휘권, 구제제도/절차 등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과 더불어 장병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교관의 노력(Story-telling) 등이 더해져 교육 내용이 적합했다고 생각함”, “인권의 기본적인 지식, 업무수행 시 알아야 할 인권 사항, 인권 침해 사례, 인권교육(안)작성, 발표 및 전문가 조언 등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인권교육으로서 적합”

### ● 난이도를 감수하는 유익성

“인권 교관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다소 강의가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 배운 점이 많기에 교육은 매우 적절함”

#### ④ 교육내용의 부정경험/참여자

이와 달리 군 인권교육에서 참여자는 학습자 수준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현실과 동떨어지고, 부정적인 사례가 나올 때, 강의기법에만 치중된 교육내용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교육대상자들에 인권 인식 수준 및 인권 이해도를 사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의 역사나 일반 개념을 설명하거나, 혹은 인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으로 도입부를 가져올 시 피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교육목표 달성에 기대치가 현저히 낮아짐”

##### ● 부정적 사례 사용

“사례 위주 자료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교육의 전반적 방향을 어둡게 만듦”

##### ●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

“과거 90년대 군의 사고사례 및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현재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장병들에게 공감을 얻기 힘든 교육내용과 사례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 지나친 강의기법 강조

“너무 강의 스킬에 비중을 많이 두는 교육”

#### 시사점 |

- (훈련과과정) 강사 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체계적 분업을 통한 교육내용 중복 방지 필요
- 군의 특수성 반영을 통한 교육효과성 제고 필요: 이론적 접근을 하더라도 사례와 접목해 풀어내는 기획이 필요하며, 인권관련 군법 사례를 인권의 본질을 설명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기획이 필요
- 인권의 개념과 구조, 가치와 원칙 등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가의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콘텐츠 흐름 연계 필요
-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은 지나친 이론교육이나 부정적 사례 등은 지양

### 다) 교육방법

#### ① 교육방법/교수자

교수자가 추천하는 인권교육 방법은 ‘인권적 관점에서 적용’, ‘실천적 활동’, ‘참여형 교육방식’ 등이며,

세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인권적 관점에서 적용 : 인권의 눈으로 군대 새롭게 보기 <30년 후 박물관으로 갈 군대 모습>

- 우리 조직의 현재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정지 장면으로 표현, 어떤 장면인지 맞춰보기
- 피드백 : 왜 그 장면을 골랐는지,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없어진다면 어떨지, 그럼 누구에게 가장 좋을지, 없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힘들지 등

### ● 실천적 활동 : 인권친화적 군대 만들기 <30년을 앞당기는 실천의 약속>

- 각 모듬이 찾아본 문제 장면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장단기적 방안으로 나누고 오늘부터 내가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기.
- 피드백 : 실천을 방해하는 위협요인은 무엇일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을지 등.

### ● 참여형 교육

“토론식 강의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선수 학습(사이버)과 개인 독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하니 지겹다.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참여자의 말입니다. 일부의 의견이라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대안으로 토론과 발표를 더 많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교육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또 있을까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참여자들을 여러 모듬으로 나누면 좋겠지요. 하지만 무작정 토론과 발표만 한다고 좋은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하는 강사의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토론과 발표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들의 상호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을 때”

## ② 교육방법/참여자

참여자들이 추천하는 인권교육의 형태는 교수자와 참여자 간,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론식, 참여형 강의를 많이 추천하고 있다.

### ● 참여형 교육

“다수 대상의 사례 토의식 수업, 교육 시간이 늘어난다면 모든 인원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소수 인원의 참여형 수업(사례 설명위주 교육+개념 부분 토의 교육)”,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집합교육도 필요함. 교육 중 실시간으로 교육생의 의견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설문 플랫폼 활용도 좋고, 토론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으로 교육 진행”, “군 인권교육 교관으로서 현재 교육 방식대로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중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교육형태 추천”

### ● 교관 양성/참여형 교육

“인권강사나 교관의 경우에는 직무별 인권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 및 교관의 자격요건과 강의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으며, 토론식 인권교육이 가능토록 다양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흥미유발

“호기심 유발을 위한 콘텐츠 추가”, “교육 시작시 청자에게 화두를 던져 자신의 인권, 기본권 이해 수준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부여해서 능동적 참여의지 향상”

### ● 실습형 교육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제 같이 실시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 ● 인권지식의 활용 : 상황극

-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행동이 인권침해적인지 아닌지 법률적 해석과 토론을 병행

### ● 교육자료 시각화

“가시화된 시청각 자료 필수”

### ● 군 사례 활용/상호작용 강화

“상호의견을 공유하고 군의 사례를 공유하며 생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다름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방식도 일부 첨가 된다면 창의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교육환경 개선/유사교육을 통합

“필수교육으로서 좀 더 강조되고 다른 사고 예방교육이 ‘인권교육’ 틀 안에서 하위 주제로 다루어짐으로써 교육을 통합시키는 방법”

#### 시사점 |

- 학습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야전의 병사 인권교육에서도 참여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훈련과정 역시 일방적 강의형으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참여형 강좌가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교수자가 참여형 프로그램을 끌어감에 있어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강의도 필요

## 라) 직무 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효과

### ①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사례/교수자

교수자는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 사례로 ‘지휘관 대상 인권교육’, ‘기본권을 넘어선 교육’, ‘군 특수성을 넘어선 인권의 보편성 등’, ‘군인의 인권적 의미를 이해와 실생활에 적용’, ‘인권의 오개념을 잡아주는 강의’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 지휘관 대상 인권교육

“소대장부터 장군들까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간부 교육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지휘관 인권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대 지휘를 하면서 인권을 제한되는 요소로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부대 지휘를 하면서 인권을 필수적이고 당연한 요소로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 ● 기본권을 넘어선 인권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권을 기본권의 영역에서 한정시켜 생각했었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영역을 넘어서 인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이다보니 각종 법률 및 규정 등에 얽매이게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법규 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분명히 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넘어설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 ● 군 특수성을 넘어선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제한과 침해의 분별

“군 내부에서는 인권을 얘기할 때 “군은 특수하니까...인권의 제한을 넘어서 침해가 일정 부분은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침해는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편성 가치의 당연함을 군 내부에도 일정 부분 이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 인권의 관점에서의 직무 분석

“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직무를 분석하여 인권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향성 제시.”

#### ● 실생활에 적용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과목은 보통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인권침해 요소를 판단하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토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실제로 부대 생활을 할 때 유사하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인 듯 합니다(하지만 인권적인 판단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례를 벗어나는 경우,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영역에



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이고 당연한 권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는 윤리 관념이며 이는 인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싶음.”

### ● 인권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잡아주는 강의

“군 시스템상 전 장병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기가 제한되니 부대에서 인권교관(일종의 인권강사)을 임명하고 교관교육을 하여 야전에 있는 장병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교관들이 항상 인권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내 인권은 어디 있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인권(기본권) 수범자의 위치와 인권(기본권) 향유자의 위치에 따른 인권을 복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군에서 병사는 대부분 원치 않은 징집에 당연히 인권을 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물론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간부에게는 당연히 인권은 없고 병사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사례/참여자

참여자의 경우 ‘인권의 이해로서 지휘권을 비롯하여 인권 개념 이해’, ‘법리 해석’, ‘인권적 관점에서 실무’, ‘인권침해 및 구제 방안’ 등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 인권의 이해\_지휘권의 법적 근거

“지휘권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군과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오는 차이점 설명”

### ● 인권의 이해

“인권에 대해 도덕적 판단으로 접근하였는데 법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 “역사적 배경과 개념 교육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인권교육 실무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며, 아직 시대적, 사회적 관점에서 지켜지지 않거나 범문화되지 않은 인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 사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인권침해) 사례 중심 내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 “법리적인 부분에서 인권의 이해 부분보다 실제 사례와 결정례들을 통한 판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차후 상담 및 질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결정례와 판례를 쉽게 설명 가능함”

### ● 인권의 의미 이해를 통한 군 생활 도움

“부대 인권교관으로서 나의 인권과 타인(병사, 동료)의 인권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언어 선택, 상황공유, 올바른 이해 등 올바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임”



### ● 인권침해 예방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고 있던 행동들이 상대방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인식”, “실제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도록 조언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 “조직의 특성상 상관, 임무, 명령이라는 단어 속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서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함”

### ● 인권구제 방법

“‘군인의 인권목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장병 10대 기본권’ 등의 교육을 통한 장병 기본권 보장 부분과 인권침해 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에 대한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음”, “사고 발생 시 조치와 인권 수호의 중요성 개념”, “장병 민원 처리”

### ● 인권교육 진행에 도움되는 강의

“인권교육 노하우 교육에서 실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소양)을 갖출 수 있었음”, “인권 발표 강의안 작성에서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 교육이 인상적”

## ③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안 된 이유/교수자

교수자는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학습자 수준과 학습자를 배려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견으로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없었음’,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음’, ‘학습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 ‘현실과의 괴리’,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부족’ 등이 나왔다.

### ●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없었음

“국제인권규범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인권은 한 국가의 규범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규범이어서 자신이 속한 군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류 공통의 가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 학습자 수준을 미고려

“혐오와 차별과 관련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인권위 추천받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혐오차별 관련 내용은 굉장히 교육 대상자들의 평상시 가치관 및 바라보는 시각 등에 따라서 교육이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의 강의라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적어도 교육 대상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교육내용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학습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

“특히 병사들은 100% 남성인 상황에서 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강사들과 ‘성차별’ 관련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 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필요하고 건전한 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사들은 이러한 상황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었고 장병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및 내용을 구성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심도 있는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 후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 현실과의 괴리

“요즘 병사들은 형평·공정·평등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이유 없이 차별받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와 병사는 왜 다르게 대우 받는지(간부와 병사의 두발 문제 등), 병사들 사이에서 병장과 이등병은 왜 다르게 대우 받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최신의 사례(인권위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서 사례 구성)를 소개하면서 교육을 하는 부분과 더불어 상대적 평등의 차원에서 평등원칙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인권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인권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법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인권위 등에서 이 부분에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부족

“군 내에서도 분명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성소수자, 다문화장병, 여성군인 등 예전보다는 관심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④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안 된 이유/참여자

참여자가 생각하는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론중심으로 진행되고 교육내용의 중복이 많으며, 교육방법의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강사자질 부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 ● 이론중심 교육

“이론에 대한 교육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지루한 부분이 있었음”

### ● 교육내용의 중복

“표준 교안을 통해 교육하다 보니 교관들의 교안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음”

### ● 공감 부족/주입식 교육

“교육하는 교관님들의 성향에 따라 장병들이 다소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주입식 교육의 성향”

● **교육방법의 문제**

“아이스 브레이킹, 스토리텔링 없는 딱딱하고 무거운 교육 내용”

● **강사자질 부족**

“인권의 개념이나 역사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부존재하나, 각종 설에 의한 강사별 인권의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정을 일반화하는 부분도 있어 주의깊게 인권의 역사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군 내 다양한 주체들(간부, 병사, 군무원 등)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해함으로써 직무 수행 시 이러한 관점을 항상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교육으로 구성될 필요
- 군 조직의 특수성, 교육 참여자인 간부, 병사들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해 호기심,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 및 구성이 필요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분석**

《교수자》와 《참여자》가 직무수행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교육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구분은 구정화(2020)가 제시한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참고하여 유형화하였다.

군 교육내용	
1.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역사
	• 인권의 특성
	• 인권의 구조
	• 인권의 개념
	• 인권과 다양한 가치
	• 인권의 발달 및 확산 과정
2. 인권보장 규범과 제도	• 인권관련 문서와 법: 인권선언, 국제법, 헌법, 기본권 등
	• 인권보장체계로서 군인권: 군인권의 이해, 인권과 지휘권, 기본권의 제한의 이유 등
	• 군인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군인 공무원으로서의 인권 책무성, 군의 특수성과 제한된 권리 의미 등
3. 인권문제의 인식과 해결	• 군인의 인권보호 방안: 인권침해 예방, 지휘권자의 인권행동강령

군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구제 방법: 법령과 규정에 제시된 권리 구제 절차, 장병 10대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구제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 사례의 판단 방안: 인권의 작동과 관련된 사항(인권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원칙 등)</li> </ul>

- 군인의 경우 인권보장의 규범과 제도 영역에서 인권과 지휘권 및 군인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내용, 인권문제 인식과 해결에서는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특히, 인권침해 사례의 판단 방안과 같이 인권적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실제적 가이드를 요구하였다.
- 인권교육 내용체계에 따라 구분된 세부 교육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넓게는 인권의 이해(인권의 의미와 역사, 인권의 유형과 내용), 인권보장 규범과 제도, 인권문제의 인식과 해결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직무와 연관한 유용한 사례와 기타의견을 함께 정리하였다.

**시사점 |**

-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군 조직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집단 내에서의 인권과 관련된 지식, 군 내에서 발생해 온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및 사회변화와 맞물린 최근 군 조직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4)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 분석

### ① 제안 사항/교수자

교수자의 제안사항으로는 외부강사와의 교류를 늘리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며, 교수법에서는 참여적 학습방법을 생각하고, 교육내용을 보다 다양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외부 강사 확대

“현재로서는 외부 강사의 인권교육이 군을 긴장시키는 수단으로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에 들어가려고 하는 외부 강사들이 많을까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예산책정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 개발 시 온라인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학습자 맞춤형 교육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요자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내에서 분명 장교와 부사관 및 병사 등이 마주하고 있는 인권 현실이 다양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콘텐츠보다는 간부와 병사용 콘텐츠라든지, 지휘관용 콘텐츠(고급, 중급, 초급 지휘관)라든지 맞춤형 교육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학습자 수준 고려

“군에서 최종적으로 인권 강사가 전부 외부 강사로 충원되지 않는 이상, 군 내부에서 인권교관을 교육하여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교관들은 부대에서 본연의 군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통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인권 강사의 임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쉬운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쉽다’라는 기준이 군 외부에서 생각하는 수준보다 조금은 더 낮춰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참여형 교육

“참여지향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주변에서 겪고 있는 반인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 수립하여, 이를 실천까지 옮기고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교육내용의 다양화

“인권교육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인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수요자인 장병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형식과 다양한 교육내용을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충분한 학습시간 확보

“현실적인 문제로 줌(zoom) 교육을 진행한다지만 현장에서의 대면(집합)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교육 간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숙소 제공(경비 자가부담) 등의 문제와 교육 시간의 축박함으로 인해 교류나 나눔의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음.”

## ② 제안 사항/참여자

참여자는 내용적으로는 실제적인 내용 구성과 학습자를 고려한 단계별 학습 내용 설계를,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는 대면 교육 활성화, 교재개선,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관을 위한 처우 개선과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실제적 교육

“인권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향의 교육 필요”, “추상적 내용이 아닌 나의 생활과 현실에 더 다가오는 내용 반영”

### ● 단계별 학습내용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기초-> 기본-> 심화 등)”

### ● 대면교육 활성화

“대면교육이 비대면 교육보다 집중도가 높을 것 같음”

### ● 교재 개선

“교재 내용이 PPT가 아닌 강의안(서술형)으로 구성 필요”

### ● 교육시간 확보

“교육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음”, (학습자끼리 소통 시간 확보) “다른 조와의 왕래가 없어 교육 참가자 간 교류가 부족함. 교육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상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음”

### ● 학습자 고려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고, 되도록 비슷한 집단(직급 등)과 인권 수준을 갖고 있는 교육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교육을 이수한 인원들의 의견을 받아 더 좋은 교육이 되길 바람”

### ● 공무원 인권보장

“공무원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공직사회 인권에 대한 접근의 변화.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

### ● 인권교관 처우 개선 및 보수교육

“인권 교관 인센티브가 공식적인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교관화 교육을 받은 인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교관화의 의미가 있는지 확인 필요”, “다수 교관을 예산을 투자해 양성하지만 양성 이후 활용 부분이 다소 투자하지 않는 듯해 투자대비 활용에 떨어진다고 생각됨”, “인권교육의 특성상 다소 교육생들이 어렵고,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에 교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초반 교관의 스토리텔링,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청중과 소통하고 주입식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관 양성시 교육이 필요하며 최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함”

**시사점 |**

-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동안 외부 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나 외부 강사의 처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군 조직 내에는 다양한 주체(간부, 병사, 군무원 등)가 혼재하고 있고 각 주체별로 인권과 관련된 관점, 상황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내용의 마련이 요구됨.
- 참여형, 토론식 교육 진행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프로그램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 기본강좌는 가급적 생활 속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고
  - 2) 훈련과정은 이를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의 가치와 원칙 훈련과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

## 라.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할 주요 사항

앞 장에서 진술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분야의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 및 교육 방향을 요약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사회복지 담당> 조사 결과 반영사항

- 교육 목표는 인권보장 대리자로서 정체성 확보 및 인권역량 강화
- 교육 방법은 개념 이해를 위한 강의형과 더불어 활동을 통한 참여형 방법으로 전개
- 각 분야 업무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증진을 위한 전문가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자신의 전문적 역할 내에서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 <경찰 공무원 분야> 조사 결과 반영사항

- 교육목표는 경찰 업무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권적 이해
- 교육방법은 개념 이해를 위한 강의형과 더불어 사례분석 훈련으로 전개
- 경찰에게 왜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
- 특히,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 지원

### 3) <군인 분야> 조사 결과 반영사항

- 교육목표는 군대의 인권적 의미와 장병 인권사례 이해
- 교육방법은 개념 이해를 위한 강의형과 더불어 토론과 같은 참여형 방법으로 전개
- 군인 인권에 대한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권 침해를 구별하는 사례 훈련 방식 필요
- 특히, 관행으로 받아들인 불편함 속 인권적 문제점과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인권훈련 지원



# III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 III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 1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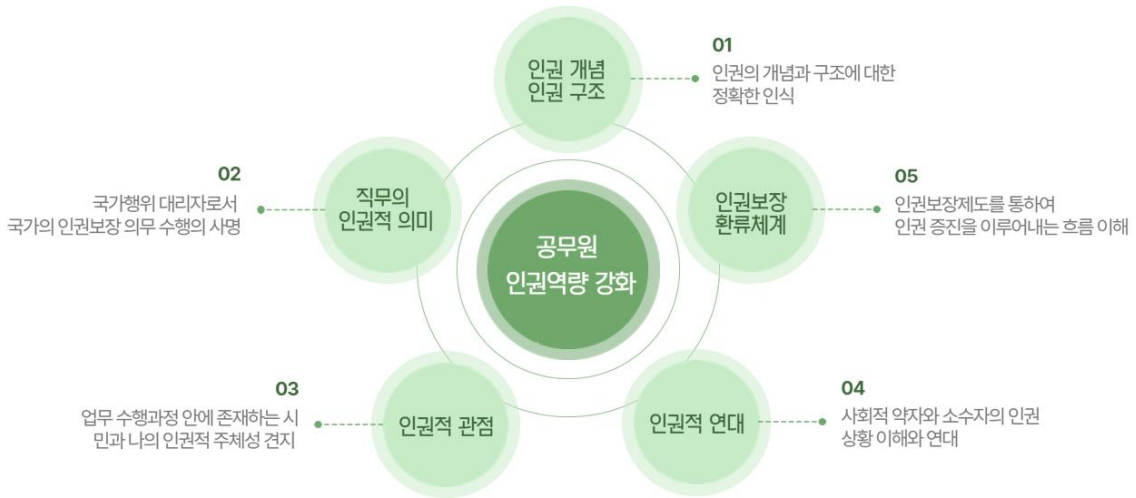
###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제2조

"인권교육 및 훈련은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특히 사람들이나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훈련·정보제공·인식개선·학습 활동들이다." 여기에는 ① 인권에 관한 교육, ② 인권을 통한 교육, ③ 인권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 규범 및 원칙, 그 기반이 되는 가치와 보호를 위한 체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제공"
- ② 인권을 통한 교육 "교육자와 학습자 양쪽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학습 및 교수"
- ③ 인권을 위한 교육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각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짚고, 나아가 이것이 인권적 가치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인권 기준)을 사례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것을 기본적 구조로 한다. 근래 문제로 지적되는 단순한 인권감수성 교육의 반복이 아닌,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내 업무 안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실현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을 지향한다(법무부, 2021).
-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교육이다. 그 가치를 토대로 내 삶과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 가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족하면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챙겨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찾고, 실천적으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찾거나 만드는 것까지의 흐름으로 나가야 인권교육이고 그럴 때 교육의 효능감도 당연히 같이 확보될 수 있다(법무부, 2021).
- 공공분야 인권교육 역시 이러한 설계가 담겨야 한다. 지식-태도와 관점-실천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자의 사명은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융합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 이러한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이해’, ‘인권적 관점 확보’, ‘인권적 지향’, ‘인권의 환류 체계’ 등을 핵심적인 교육 방향으로 설정한다.



[그림 5]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

**목표 :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 ▶ 인권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인권역량 지원’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한 학습자(공무원)의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 ▶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인권교육의 목적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실현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정부 조직과 공동체가 **인권 실현이라는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 ▶ 따라서 인권교육의 목표는 공무원의 인권역량 지원임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표가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이런 점에서 기존의 금지 가이드라인 숙지식,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단순한 사례 소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한계 속에서 진행되는 인식 개선 교육 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의 인권 사유과 분석, 실천 역량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의 구조가 필요하다.
- ▶ 학습자군에게 필요한 인권역량의 내용 및 현재 역량 수준 등 파악에 기반한 교육의 기획·실행으로 학습자(공무원)의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핵심 내용 1.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 ▶ 인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

- 인권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 : 인권은 국가와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인권에서 있어서의 권리자와 의무자의 구조 : 인권은 국가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므로 인권에서의 권리자와 의무자는 각각 시민(모든 사람)과 국가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한 사건, 관계를 분석할 때 해당 사건에서 인권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이나 개인의 인성 문제로 왜곡되어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핵심내용 2.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 ▶ 직무의 의미와 역할을 인권적으로 해석·분석하는 콘텐츠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

- 인권보장이라는 국가의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자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인권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실현하는 인권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 인권보장이 곧 존재 이유인 국가의 업무 행위자가 바로 공무원이다. 따라서 원칙과 개념상으로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시민(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수행되는 업무이다.
- 업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인권적으로 해석해 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내재화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업무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되 정답을 제공하는 식의 설계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핵심 내용 3. 인권적 관점 훈련

#### ▶ 학습자의 태도·가치관·관점 등에 인권적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 인권의 내재화 및 실천은 학습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인간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는 명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철학관이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공무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동료 시민을 인권의 주체로 맞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경우가 인간을 대상화 또는 수단화하는 비인권적인 접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실천했음에도 접근 방법의 차이에 따라 인권의 실현이 아닌 시혜적 접근이 되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민의 인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적 옹호자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통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핵심 내용 4.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

- ▶ 학습자의 업무와 접점이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
- ▶ 업무 과정에서 학습자가 그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업무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업무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한다.
- ▶ 이는 앞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자연스럽게 내재화될 수 있는 만큼 앞의 프로그램 구성시 학습자 업무별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관련 소재를 배치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 핵심 내용 5. 제도적 변화를 통한 인권 증진의 환류체계

- ▶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낸 인권적 노력과 이를 통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인권 증진 환류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 ▶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나 사회 모습이 도달 불가능한 이상으로 느껴질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반감과 피로도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이 발전해 온 사례를 통하여 인권적 발전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권교육에서 인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 공무원의 직무와 연계된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업무 또는 조직과 관련된 변화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권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무원

개인의 변화가 아닌 구조, 제도, 조직적 차원의 변화에 초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출된 변화과제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거나, 더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
- 행정에서의 변화가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실제 사례의 흐름을 통하여 공무원이 행정 현장에서의 변화를 통한 인권 실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변화가 가능했던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업무에서 마주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2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조

< 표 1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조

구분	인권의 이론		인권의 실제
과목	인권의 이해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인권의 적용과 훈련
목적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	직무의 사회적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	인권적 분석과 대안 모색 역량 훈련
교수학습전략	지식과 사고의 틀 구성	책임과 권한 부여	실습을 통한 내재화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과 구조</li> <li>• 인권의 특성</li> <li>• 인권의 역사</li> <li>• 인권보장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의 인권적 해석</li> <li>• 직무의 인권적 역할</li> <li>• 직무 관련 인권 규범</li> <li>• 직무 관련 인권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분석</li> <li>• 문화콘텐츠 활용</li> <li>• 인권영향평가</li> <li>• 인권보장의 환류체계</li> </ul>

- 앞에서 조사 및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 구조를 위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구조에 기반하되 각 업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강약을 조절해 가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짚기에 앞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민을 향해 주장하거나, 시민 간의 인권을 충돌한다고 인식하는 민민갈등화의 함정에 빠지는 등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왜곡하는 인식의 문제점을 거를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나아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희생인 인권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을 포함하였다.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지나간 인권의 역사, 만들어가야 할 인권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만나게 한 것이다.
- 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인권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경찰이나 군의 경우 업무상 부여된 공권력에 대한 권한의 의미를 ‘인권침해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 공권력 부여의 목적 자체가 인권 보장인 만큼 그 행사의 조건과 정도가 지켜지는 인권의 제한과 이를 넘어서는 인권 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 또한 군의 경우 조직과 구성원 모두 징병제의 특성상 가해지는 인권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인권침해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권적 재조명과 이에 기반한 인권의 제한 기준과 한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군인권의 증진의 방향을 공유하고, 나아가 군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전체적으로 공무원 각자가 직무의 (인권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과 인권 규범 등을 숙지하되,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닌 인권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무엇보다 직무 현장에서의 인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학습자 간 토의,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인권적 성장이라는 인권교육의 내용적 및 방법론적 지향을 실현할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직무에 관련되는 인권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권적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 한편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인권보장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이며 이는 인권교육의 목적이기도 한 만큼, 인권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방법을 활용한 실습 기제를 활용하였다.
- 또한 인권교육의 효능감 위에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던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제2부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 개발 범위

-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회복지(장애/아동/노인)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세 분야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과정, 군인과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을 진행할 훈련가 역량강화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최종 과업임.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3종)
  - 장애인권과 사회복지(3-4차시)
  - 아동인권과 사회복지(3-4차시)
  - 노인인권과 사회복지(3-4차시)
-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훈련가과정(2종)
  - 기본과정(2차시)
  - 훈련가과정(30차시)
-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본과정/훈련가과정(2종)
  - 기본과정(4차시)
  - 훈련가과정(30차시)

## ‘훈련가과정(Training of trainers)’

인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인권학습(learning)이라면,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업무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훈련(training)이라 할 수 있음. 공무원 인권교육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에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일반적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권실천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에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와 역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둔 훈련이 필요함.(국가인권위원회, 2018 : 206) 따라서 이러한 인권 훈련과정을 이끄는 사람을 인권교육 훈련가라 함.

# I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I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 ☞ 수요조사 분석 결과 주요 반영 사항

〈1〉 목표 및 내용 : 인권보장 대리자로서 정체성 확보 및 인권역량 강화

〈2〉 방법 : 개념/활동 수업 진행

- 특히, 각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증진을 위한 전문가적 역할 이해
- 자신의 전문적 역할 내에서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적용

### 가. 기본과정 개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대상** | 사회복지 담당(장애/아동/노인)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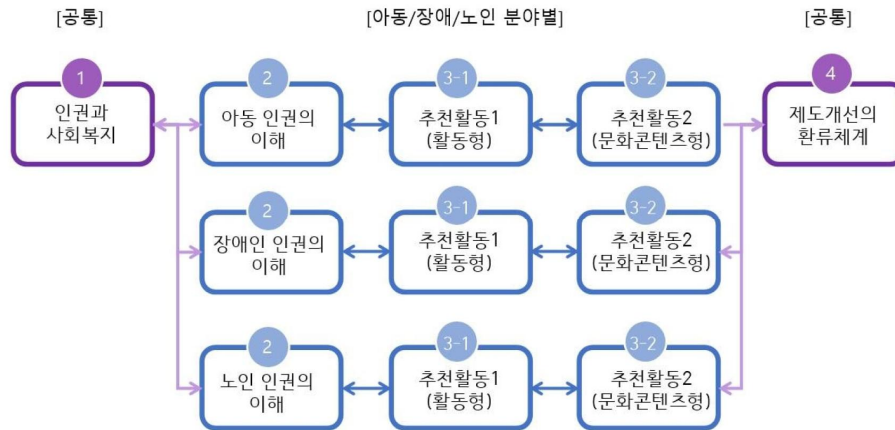
● **교육 목표** | 인권보장 대리자로서 정체성 확보와 인권역량 강화

- 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은 사회복지 행정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이해를 통해 시민의 인권 실현을 위한 업무 과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권역량을 지원하고자 한다.
-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과 보장의무 이행 차원의 사회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 숙지를 통한 업무의 인권적 기준을 훈련하고자 한다.

● **교육 내용**

-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책무와 실천)
- 아동/장애/노인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 이해
- 아동/장애/노인 인권 관련 이슈 분석
- 아동/장애/노인 인권 관점을 훈련할 수 있는 활동
- 인권보장체계 이해를 통한 제도개선 등 환류 체계 이해

● **교육 구조** | [공통 개념]-[아동/장애/노인 분야별 개념과 활동]-[공통 적용]으로 전개되며, 사회복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4차시로 구성하였다.



[그림 6]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조

▶ **교육 방법** | 개념 이해와 인권교육 활동으로 전개

- 각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증진을 위한 전문가적 역할 이해
- 자신의 전문적 역할 내에서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적용

## 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

차시(시간)	내용	학습자원
공통 1차시 (90분) 공통	인권과 사회복지	
	<b>1. 인권의 개념과 구조</b> - 인권의 주체와 의무자(헌법 제10조) <b>2. 인권의 권리자</b> - 인권의 역사,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차별 극복 역사 <b>3. 인권보장 의무</b> -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b>4. 인권의 특성 이해</b> -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b>5.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책무와 실천)</b> <b>6. 사회복지에 있어 인권기반 접근 이행</b> ※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권고 등 + <b>생각하기, 확장하기</b>	① 노년기. 건강과 인권(국가인권위원회, 2021). 페이지 ② 서프러제트, 레미제라블 ③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는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대체하면 좋음(카드뉴스, 14F 형식 등)



차시(시간)	내용	학습자원
<b>노인 인권 분야</b>		
	<b>노인 인권의 이해</b>	
노인 인권 2차시 (60분)	<b>1. 노인 인권 보장의 원칙</b> <b>2. 노인 인권에 대한 접근-권리기반 접근</b> <b>3. 카드 뉴스로 보는 노인 인권</b>	
	<b>노인 인권 추천 활동 1. 활동형</b>	
노인 인권 3-1차시 (60분)	<b>활동 1. 만다라트 활동</b> [노인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질문] <b>활동 2. 사례 토론 활동</b> 사례1 : 치매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 사례2 : 노인요양병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돌봄 제공하기 + [사례분석을 위한 질문] + [확장하기]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활동 1, 2 중 선택
	<b>노인 인권 추천 활동 2. 문화콘텐츠형</b>	
노인 인권 3-2차시 (120분)	<b>1. 도서 연계형</b> ★ 우리는 왜 나이들을 혐오하는가-산업사회에서 잉여가 되는 존재, 가족파산-노인을 돌보기 위해 다른 가족이 같이 파산 (기타-선배시민, 임계장이야기, 어깨동무, 흰둥이네 할머니, 하늘의 황금마차, 어떤 호소의 말들) ●● 도서형 예시 : 「아빠의 아빠가 됐다」(2019, 조기현) <b>2. 영상 연계형</b> - 나 다니엘 블레이크, 봉구는 배달 중, 휴머니티드 접근: KBS1다큐 인사이드(부드러운 혁명) ☞ 몇가지 예시 구성해 진행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권위원회 권고 중 노인 관련 부분 →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권고 => 주인공의 삶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개선방안 모색까지) - 몇 가지 예시 구성해 진행 가이드라인 제시 ●● 영화형 예시 :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로치)	이동권리위원회 주요 권고 내용은 임팩트 있는 형식으로 구성해 활용하면 좋음 (카드뉴스, 14F 형식 등)
<b>아동 인권 분야</b>		
	<b>아동인권의 이해</b>	
아동 인권 2차시 (60분)	<b>1.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인권' 이해하기</b>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1. 아동인권 기본권리와 일반원칙 ②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2 : 국가의 책무	참여적 방법  인권관점에서 타당한 개입 방법론

차시(시간)	내용	학습자원
	③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3 : 참여권(들려질 권리) ④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4 : 가용자원 최대한도 내 보장 <b>2. 인권원칙을 아동 인권 현장에 적용하기</b>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이행 <b>3. 카드뉴스로 보는 아동인권 이해 - 소년사법제도와 아동인권</b>	
아동 인권 3-1차시 (60분)	아동인권 추천 활동 1. 활동형 <b>1. 예시활동&gt; 아동정책영향평가 활동하기</b> -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점검해보는 나의 업무 + 아동정책영향평가 더 알아보기 + 국내외 사례	참여적 방법
아동 인권 3-2차시 (120분)	아동인권 추천 활동 2. 문화콘텐츠형 - <b>영화나 도서 연계</b> - 4등, 범죄소년, 다음 침공, 유통기한, 동물농장(별별이야기), 소년심판, 이상한 정상가족,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산다는 것은, '입없는 아이', 어떤 호소의 말들 => 주인공의 삶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개선방안 모색까지) - 몇 가지 예시 구성해 진행 가이드라인 제시 ●● 도서형 예시 : 「이상한 정상가족」(2022, 김희경) ●● 영화형 예시 : <범죄소년>(2012, 강이관)	이동권리위원회 주요 권고는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대체하면 좋음(카드뉴스, 14F 형식 등)
<b>장애인 인권 분야</b>		
장애인 인권 2차시 (60분)	장애인 인권의 이해 <b>1.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이해하기</b> <b>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b> <b>3. 장애인 인권 관련 주요 이슈 다루기</b> <b>4. 카드 뉴스로 보는 장애인 인권</b>	
장애인 인권 3-1차시 (60분)	장애인 인권 추천 활동 1. 활동형 <b>1. 예시활동&gt;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하철 출근길 장애인 시위</b> -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점검해보는 나의 업무 + [사례분석을 위한 질문] + 확장하기 :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참여적 방법
장애인 인권 3-2차시 (120분)	장애인 인권 추천 활동 2. 문화콘텐츠형 ●● 도서형 예시 : 「장애의 역사」(2020, 킴닐슨 저, 김승섭 역) ●● 영화형 예시 : 함께 보는 인권영화(코다)(2021, 선혜이더)	주요 권고 등은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대체하면 좋음(카드뉴스, 14F 형식 등)

차시(시간)	내용	학습자원
	+ [유용한 질문] + 확장하기	
공동 4차시 (30분)	<b>1. 제도개선을 통한 환류체계 : 인권보장체계 설명</b> - 선 사례를 통한 예시 필요 : 다산콜센터의 재단 전환 등 : 당사자 목소리+사회적 지지+인권체계의 작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짐 - 인권의 역사와 수미쌍관 흐름 <b>2. 제도개선 필요+가능 사례 뽑아보기</b> → 관련 조례 찾아 분석하기 : 법이 없어도 조례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기 ★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직무자의 역할로 마무리 <b>**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지원 사례</b> - 인권위 사건 접수→정책제도 개선 권고→관련 제도 개선→인권보장 수준 견인 <b>** 부천시 사례(판례)</b> - 지자체 조례로 인권보장 내용 확대 → 지자체법 제25조 해석 :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의 역할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사례

## 다. 교육 운영 가이드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시간과 교육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① 차시 구성 방법

- 차시 구성은 기관의 인권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차시 구성시 시간을 (60~120분)일 경우, <학습내용1>과 <학습내용2와 3-1>을 결합하여 운영한다.
- <학습내용1>만 강의형으로 진행할 경우, '인권의 구조'와 '사회복지와 사회권'의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 ②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 활동형의 경우 학습자 및 학습환경에 따라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활동형 구성시 최소 2~3시간 이상 시간을 배정하여 <학습내용1>의 기본 개념과 함께 함께 진행하면 좋다.
- 1차시 구성시, <학습내용2>과 함께 배치하여, 분야별 인권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로 구성한다.

- 2차시에서 제공된 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참여자들이 활동지 내용을 발표하여 참여자들에게 서로 공유하고 교수자와 참여자가 피드백하며 업무에 있어 가져야 할 인권적 관점에 대해 익힌다.
- 활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퍼실리테이터로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본 프로그램은 강사의 퍼실리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① 활동형 수업 진행의 틀로서 질문 설정의 방법과 전개 방향 가이드
  - ② 활동형 진행에 참조할 자료와 기초 인권교육 콘텐츠 지원
- 제시된 추천 활동은 인권적 관점을 직무에 적용하기 위한 위해 각 분야 인권쟁점으로 구성된 예시이므로 기관의 필요에 따라 맞는 사례 및 활동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문화콘텐츠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도서,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도서’와 ‘영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확장하기>에 제시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다.
- 영화, 도서를 이용한 인권교육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1박 2일 이상의 워크숍을 진행할 때 한 강좌로 구성한다면 참여자들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인권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을 만들 수 있다.

#### 영화형 진행 방법

- 영화를 현장에서 참여자와 함께 본다. 참여자들이 모여 영화를 보는 것은 혼자 보는 것과 다른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 영화형은 GV형식으로 감독, 출연진, 당사자 등을 초대하여 진행도 가능하다. GV의 장점은 참여자들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증을 즉석에서 묻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영화 너머의 서사, 영화 촬영 과정에서 에피소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인권의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대자와 학습자가 나눌 대화(질문)를 촘촘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대상화하거나 희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GV : Guest Visit의 약자로 영화감독, 영화 관계자 혹은 배우들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관객(교육참여자)의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을 말한다.

- 강사가 패들렛(<https://padlet.com>)을 활용하여 집단 토의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영화와 관련하여 인권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한다. 스크린(화면)에 패들렛 활동 결과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의견을 나누며 종합하고 논의한다.

### 도서형 진행 방법

- 참여자들과 독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발제와 주제토의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혹은 저자와 함께 북토크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저자와 함께 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나누고, 인권적 관점으로 책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다.
- 참여자들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적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서형의 묘미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논의 속에서 서로 배우고 구성원의 사고를 진전해가는 것이다. 이때 진행자는 지식 전달자보다 인권의 지향을 찾아가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독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하고 즐거운 토론을 위한 토론 규칙을 만든다.(예시: 발언을 독점하지 않는다. 논의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발언을 3분을 넘지 않는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세부안

### 1 인권과 사회복지

#### 학습안내

- ▶ 사회복지 행정은 권리로서의 인권보장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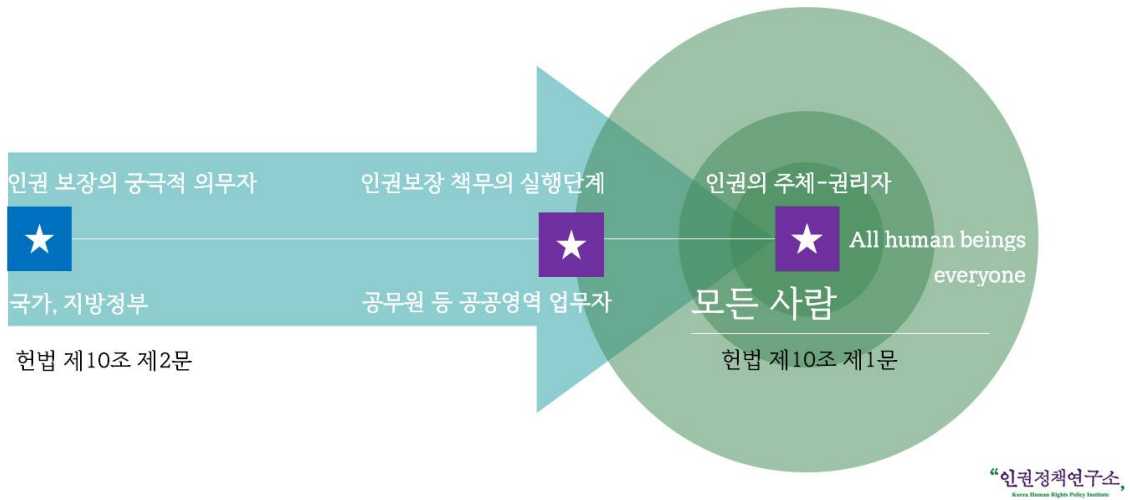
#### 학습하기

##### (1) 인권의 개념과 구조 : 인권의 주체와 의무자(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말한다. 내재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으로 분리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존엄성은 불가양성과 불가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이 인권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으로 모든 권리와 원칙들의 토대이고 초석이다.”

「인간존엄성」, (인권운동사랑방)

- ▶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주어는 모든 사람이고 인권보장의무자는 궁극적으로 국가라는 인권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 전개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인권과 권익, 인권과 인성의 개념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인권의 역사, 국가와 지방정부 인권보장 의무의 내용, 인권의 특성 등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 인권/인성/이권/권익/시혜 등 인권이 아닌 것과 인권의 구별을 통한 인권의 이해



[그림 7] 인권의 구조-의무자와 권리자(헌법 제10조)

- ▶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보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권리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 all human beings, 누구나 everyone ≠ 개인의 권익, 이익
- 인권보장의 궁극적인 의무자는 국가(지방정부 포함)  
: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obligation)≠ 공동체 구성원의 사명(duty-도덕적 차원)
- 인권의 개념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전제 : 인권≠인성(상호 존중과 배려)
-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타인의 존엄을 해하거나 부정할 권리

(2) 인권의 권리자 : 인권의 역사,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차별 극복의 역사

**“존엄성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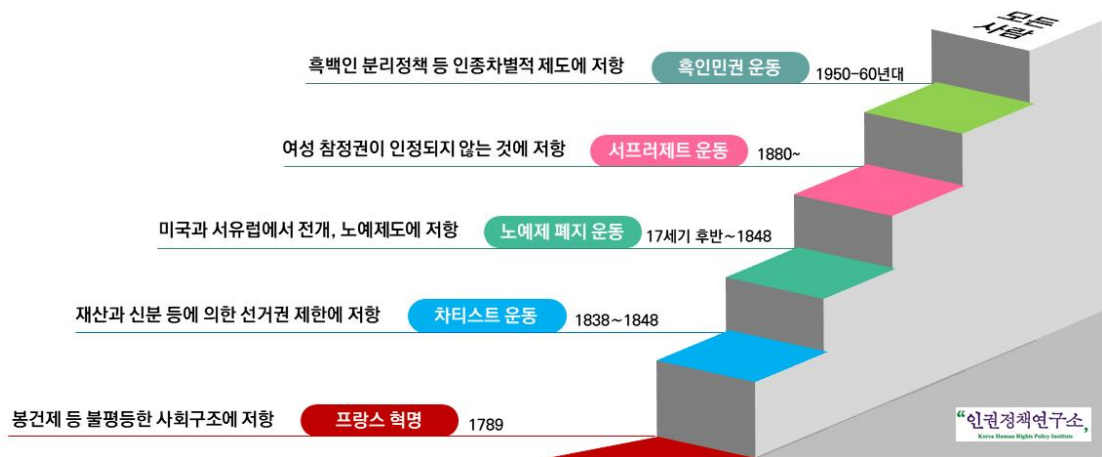
「사람을 옹호하라」, (류은숙, 2019), 50쪽

- ▶ 인권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 차별 소거의 역사(차별금지법까지)입니다.
- ▶ 지금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의 인권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빈곤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 산업 현장에서의 희생,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건 등

“인권 개념은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담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완벽하게 충족해주는 국가와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권의 이상과 현실에는 큰 간극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필연적으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이 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과 도구의 역할을 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인권을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통해 ‘성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권행정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5쪽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한 인권운동의 역사**



**[그림 8]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인권의 역사**

3세대 인권론 등으로 인권의 역사를 소개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이 모든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3세대 인권인 발전권 등의 의미를 통하여 인권 실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인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구분 짓게 되면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특성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김수정 외, 2021) 00쪽

**(3) 인권보장 의무 :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 ▶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 3대 책무인 존중(respect)-보호(protect)-실현(fulfill) 책무 이해
  - 국가 책임에 기반한 인권의 구조와 내용 및 작동을 이해합니다.



### 유엔의 국가(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3대 책무	가치	내용
존중(respect)	자유 보호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한 <b>인권침해 금지와 예방</b> - 국가가 시민(개인)의 인권보장의 책무자로서 시민(개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할 의무
보호(protect)	반차별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b>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b> - 사인(개인, 집단, 기업 등)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개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실현(fulfill)	기본적 생존(인간다운 삶) 평등 연대	<b>기본적인 생존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수준 보장, 주체의 역량 강화, 공동체의 인권의식 증진</b> - 국가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의 인권실현과 증진을 위해 각종 조치들, 예컨대 법률적, 행정적, 예산적 그리고 사법적 대책을 취할 의무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보고서」, (법무부, 2022), 28쪽

#### (4) 인권의 특성 이해 :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 ▶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적 관계를 이해합니다.
- ▶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전반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업무를 확인합니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역량이론)의 유기적 확보 :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 자신의 인격이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체계(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명('duty'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을 이행하게 됨.

#### (5)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책무와 실천)

- ▶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인권 실현의 모습에 맞는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인권의 최접점인 '최소핵심업무'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지방정부 업무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인권 실현을 위한 지원 : 헌법 제10조, 제117조 “주민의 복리”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목표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중략) ... 해당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이 이르지 못했다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용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없이 관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적어도 필수적인 수준에서 보호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기아, 기초교육, 응급의료, 기본 주거시

설에 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할 기초 요건에 해당되고 언제나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이다. 경제 침체나 기타 위기상황에서도 이러한 핵심요건은 모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노년기 건강과 인권」,(국가인권위원회, 2021),322쪽

- ▶ 인권보장의 점진적&진보적 실현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 이해
  - ⇒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를 위 3대 책무와 연계해 제시
  - ⇒ 사회복지는 특히 최소 핵심의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89쪽을 참고하세요.

**TIP** 최소 핵심의무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_ 류은숙

**(6) 사회복지에 있어 인권기반 접근 이행**

- ▶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인권기반 접근에 대한 이해
- ▶ 사회복지의 변천사 확인 : 지침에 기반한-욕구에 기반한-권리에 기반한 이행
- ▶ 사회복지에 있어 인권기반 접근법은 기획, 정책, 이행의 전 과정에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중심에 두는 모델
- ▶ 여기에는 당사자의 참여, 인권보장 의무자 책임성과 투명성, 차별금지와 평등, 당사자의 권한, 적법성이라는 5가지의 핵심가치(PANEL)가 포함됩니다.

☞ 「노년기 건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2021), PART 3. 제1장을 참고하세요

“나는 현장 영양보호사가 인권을 또 다른 규제로서 부담으로 여기는 대신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매우 고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인권기반 접근법은 돌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직업의 본질과 닿아 있다.”

진 굴드, 법무담당관, Help the Aged UK

「노년기 건강과 인권」,(국가인권위원회,2021), 334쪽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등



## 생각하기

### Q. 천부인권론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는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투쟁과 희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닌 희생의 역사 위에 확보되어 온 인권의 역사를 토대로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인권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 Q.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까?

☞ 모든 권리주장이 인권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해하는 주장은 인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사회권의 보장=사회복지일까? 아닐까?

☞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가 인권보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시민의 자력화가 필요한 이유, 자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방법 등을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Q.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권일까? 아닐까?

☞ 개인의 희생과 봉사, 양보만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 Q. 인권과 인권은 충돌할까? 그래서 상호 양보하는 문제일까?

☞ 인권의 충돌이라는 오해와 함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우리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 있는 인권사회일까요?

☞ 차별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 1) 모든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한 차별
- 2) 포함된 것 같은데 온전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차별 등을 떠올려 봅니다.

“이처럼 차별이나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는 인권을 지켜내는 목적도 결국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 가치를 다루고 있음은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역시 이러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한 사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문의 첫 문단을 통해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이 단순히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만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인권위 사이버 강좌 <인권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내용 중

**사회복지법제 안 인권의 이야기**

• 공공부조법의 의미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34조 제1항의 생존권 규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최승원 외, 2022), 209-210쪽

• 공공부조법의 의미

- 1)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이다.
- 2) 생존권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원리이다.
-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급부내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 5)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난 다음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원리이다.
- 6)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이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최승원 외, 2022), 209-210쪽

**확장하기**

**읽을 거리**



**「인권의 문법」(조호제, 2007)**

학자들의 전문적 인권담론에 갇힌 설명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적 배경의 독자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집필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개설서.



「사람을 옹호하라」(류은숙, 2019)

인권활동가 류은숙이 쓴 '인권 가치 교과서'다. 저자는 다른 인권활동가, 사회학자, 여성학자 등 십여 명과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정의하고 다시 발견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추려 이 책에 담았다.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류은숙, 2008)

세계인권선언 25조에 나와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를 살펴본다.

🎬 볼거리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 로치 감독, 12세 관람가, 100분)

평생을 성실하게 목수로 살아가던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계속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니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이 좌절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두 아이와 함께 런던에서 이주한 싱글맘 케이트를 만나 도움을 주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게 된다.



〈다음 침공은 어디?〉(2015, 마이클무어, 15세 이상, 120분)

마이클 무어의 침공 기록! 9개국의 판타스틱한 사회 제도!  
8주 유급휴가의 이탈리아부터 진정한 양성평등의 아이슬란드까지.  
살기 좋은 9개국의 사회 제도를 빼앗아오는 기발하고 유쾌한 침공 스토리!

🔍 더보기

〈활동예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약을 구하지 못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면, 당신은 이 약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단, 당신은 이미 오랜 기간의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방법을 떠올려 주세요.

- 참여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개인적 대응 방법과 사회적 대응 방법을 구별하고 인권보장 사회라면 어떠한 할지 이야기 나눕니다.
- 사적인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인성과 인권의 구별, 각자도생적 시스템의 문제(인권보장 의무자인 국가존재의 부재) 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 2-1 노인 인권의 이해

### 학습안내

- ▶ 누구나의 현재이자 미래인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인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논의를 살펴봅니다.

### 학습하기

#### (1) 노인 인권 보장의 원칙

- ▶ 여성, 아동 소수 민족,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다른 협약과 달리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국제협약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는 「노인권리선언」이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권리협약」 제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제4차 인권NAP권고(2022, 국가인권위원회, 167-168쪽 참조)

#### ● 노인을 위한 인권 원칙

노인을 위한 인권 원칙도 다른 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일반 원칙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존엄성 존중, 연령 차별금지, 자율성(독립성)의 보장, 사회참여의 보장,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돌봄과 관련한 원칙 및 자기실현 보장**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원칙의 바탕은 노인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와 증진'**의 실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성안 연구(2017, 국가인권위원회). 39쪽 참고하세요.

#### 노인을 위한 원칙

(1991년 12월 16일 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위해 UN총회에서 채택)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각국 정부가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반영해야 할 18개의 원칙들을 5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하였다.

**가. 자립 (Independence)** : 노인이 독립성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춰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나. 참여 (Participation)** : 노인의 사회참여는 단순한 임금노동 이상의 것으로 일상생활의 영위,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한다.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 자신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하고 참여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다. 돌봄 (Care)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의 자율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시설에 입소해 적절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권과 자유를 가진다.

#### 라.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종교,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존엄성 (Dignity)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또한, 나이·성별·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경제적 수준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viewArchiveDetail.do?file\\_no=200041055215&ritem\\_no=000000001&sitePage=1-2-1](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viewArchiveDetail.do?file_no=200041055215&ritem_no=000000001&sitePage=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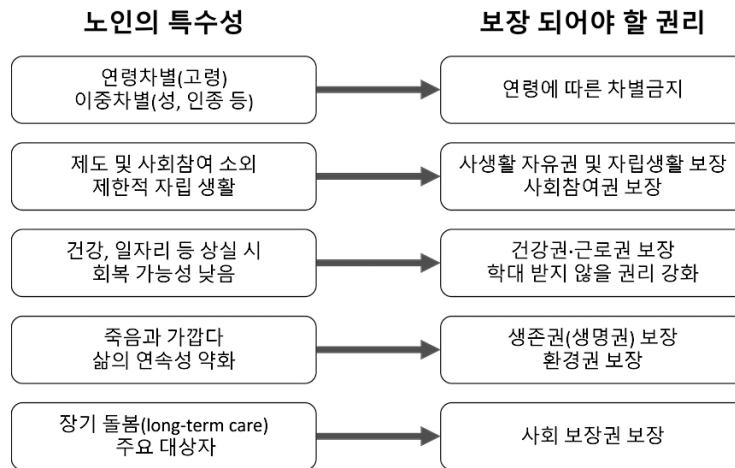
#### 해외사례

노인 인권의 선진 사례를 노인 인권의 원칙에 근거해 살펴보면 좋습니다. 영국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학습공동체(The Third Age Trust[U3A])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는 노인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하는 시스템(Elder Abuse)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중에게 노인 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 하며, 문화나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소수자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 국가인권위원회). 34쪽 참고하세요.

● **노인의 특수성에 기반한 주요한 권리**

▶ 노인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연결된 권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림 9] 노인의 특수성에 기반한 권리 보장(2017, 국가인권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성안 연구(2017, 국가인권위원회). 61쪽 참고하세요.

(2) **노인 인권에 대한 접근**

▶ 노인 인권 문제를 질병, 비참여, 의존, 배제에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 의미에서 건강, 참여, 독립, 포용 등 통합이슈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인권의 사회적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자세한 내용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 국가인권위원회), 119쪽 참고하세요.

● **권리기반 접근은 무엇일까요?**

▶ 직면한 때 상황에서 권리기반 접근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권 보유자는 누구인가? 그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자는 누구인가? 권리자와 의무이행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 메리 로빈슨,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출처: 노년기 건강과 인권, 2022, 325쪽, 국가인권위원회



- ▶ 노인 인권 역시 주체자가 가진 권리 내용을 확인하고, 의무 이행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권과 관련한 권리 내용으로는 일반적 기본권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 ‘삶의 질(생존권, 생명권)’, ‘건강권과 장기 돌봄’이 있고,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에서는 ‘학대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자유권 및 자립생활’, ‘사회 참여권’, 사회권적 기본권과 교육권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권’, ‘환경권 및 주거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성안 연구(2017, 국가인권위원회). 62쪽 참고하세요.

### (3) 노인 인권 관련 법제의 인권적 의미 이해

#### 카드뉴스로 보는 인권

노인 인권의 권리 내용 중에서 ‘건강권’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 인권**  
 - 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삶이행, 돌봄이행

**건강권보장의 의미**  
**건강하다는 것은?**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난 건강해!  
 보호를 넘어 삶의 질 향상  
 건강(health)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wellness) 상태를 의미 (WHO, 1978)

**건강권의 잘못된 통념알기**  
**건강 상태를 보장하는 것?**  
 국가가 건강 상태를 보장하는 것인가?  
 내 건강을 책임지나요?  
 무리라고?  
 아니요! 건강권과 건강한 권리는 동일하지 않다. 양호한 건강상태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에 벗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건강권은 그 실현을 위한 재화, 시설, 서비스 및 조건에 관한 것이다. 즉, 도달 가능한 최소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본다.

**건강권의 잘못된 통념알기**  
**재정이 없다면, 어렵지 않나?**  
 재정확보가 안되면, 의무 이행을 미뤄야 하는 것인가?  
 힘들 힘들  
 힘들다고 국가의 의무를 미룰 수 있나요?  
 국가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는 가용 자원이 빠듯한 상황이라 해도 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관련 법제 속 인권이야기**

**「노인복지법」**

- 목적 및 기본이념

고령화시대에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심신의 건강유지와 축적된 지식의 활용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보람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을 받으며 제2의 사회참여기회에 보장받음으로써 안정된 생활은 물론, 소외되지 않은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제2조). / 최승원 외(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31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연혁 및 체계

노인요양은 전통적으로 노화에 따른 자연현상, 가족부양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핵가족화·노인독립세대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요양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95년 독일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요양에 관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요양의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치매·중풍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급증, 노인요양에 대한 가구 내의 경제적 부담의 확대는 노인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공동체 전체가 연대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294-295쪽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최승원 외(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97쪽

### 정리하기

- ▶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인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논의를 살펴보았다면, 학습자가 속한 기관과 노인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운 내용과 연결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2-1-1 노인 인권 추천 활동 1. 참여형**

**학습안내**

- ▶ 1, 2차시에서 알게 된 인권, 노인인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관 정책과 사업에 접목해 점검해 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소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접목합니다.
- ▶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확인하고, 노인 인권 증진의 방향을 견지할 수 있기 위한 업무 내용의 확장, 개선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도출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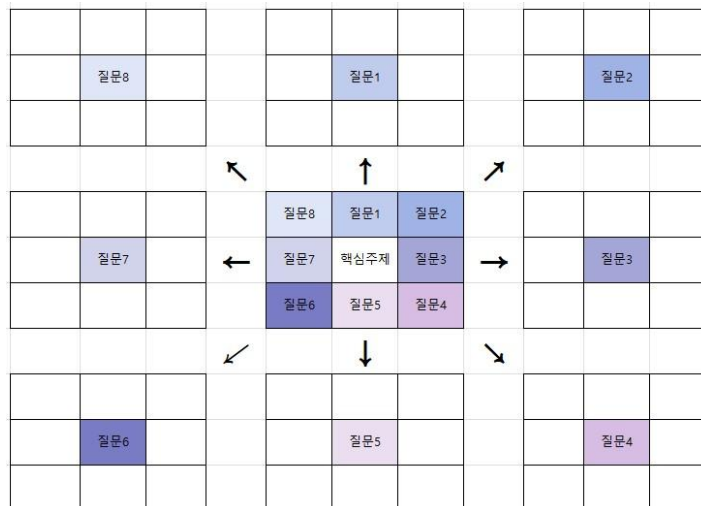
**활동하기**

● **노인과 노인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 ▶ 나의 이웃, 나의 이전 세대, 나, 나의 미래 등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 ▶ 이를 통하여 노인을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노인의 인권주체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도록 합니다.

(1) **만다라트 활동**

- ▶ 먼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3의 표를 9개를 그립니다.



- ▶ 9개의 표 중 가운데 표의 가운데 칸에 핵심주제를 넣고, 나머지 8개의 칸에는 핵심주제와 관련해 생각을 확장하고 펼칠 수 있는 질문을 넣습니다.
- ▶ 핵심주제를 둘러싼 8개의 질문은 핵심주제와 관련해 강사가 드러내고 싶은 내용이나 쟁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 ▶ 각각의 하위 질문별로 다시 3×3의 표를 만들어 하위 질문에 대한 참여자 생각을 정리합니다.
- ▶ 각 하위 질문을 종합하여 핵심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노인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질문

노인인권과 관련한 만다라트 활동 질문

	질문	질문설계 의도
질문1	나의 주변에 노인은 누가 있나요?	나와 연결된 노인들을 떠올려 봄으로써 노인은 바로 자신이기도하고 자신의 가족이기도 하며 자신의 이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질문2	노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노인으로 특징지어지는 연약함, 돌봄과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은 노인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징이며,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질문3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요?	세대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함.
질문4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보도록 함.
질문5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의 질문들의 답과 비교해보며,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인의 인간다운 삶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함.
질문6	나는 어떤 노인으로 살고 싶은가요?	
질문7	나의 노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국가가 해야될 것은 무엇인가요?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역할을 생각해보도록 함.
질문8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나의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인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도록 함.

만다라트 작성예시

커뮤니티 확충	정책, 제도를 운영하는데 노인 당사자의 참여 창구 만들기	돌봄 노동자와 노인당사자 어려움 등 묻기	태극기 할아버지..	부모님	나	쉽게 다치고, 회복력이 느리다	다양한 경험을 한 존재(생활에 대한 노하우가 있음)	오랜시간 한국사회를 경험했다.
평생교육, 대학과 연계하여 배움의 장을 열기	8) 노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내 업무에서 할수있는일은?	노인 인권 현황을 알수 있는 실태조사	친구들, 직장 동료	1) 나의 주변에 노인은 누가 있나? (노인이라 누구인가?)	형제 자매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2) 노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허하다
인간다운 일자리를 위해 기관 담당자와 협력	노인 각자의 개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주거복지 연계	요양사	식당 주인	갈거리,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노인	돈을 벌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	시간이 많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나와 관련된 정책, 제도, 사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게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해주기	8)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단위에서 할수있는일은?	1) 나의 주변에 노인은 누가 있나? (노인이라 누구인가?)	2) 노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밥 잘 먹기	노후 걱정 안 하기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7) 나의 노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나의 일상과 함께하는 돌봄(원하는 시간, 원하는 정도로)	7) 나의 노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국가 단위에서 할 일은?	노인 인권	3)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주거 비용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집에서 살기	3)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커뮤니티 제공	교육의 장 마련	물, 전기, 도시가스등의 안정적인 공급	6) 나는 어떤 노인으로 살고 싶나요?	5) 내가 노인일 때 걱정은?	4)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 하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자기 존중감 갖기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 먹고 차 마시고, 유흥도 즐기기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살기	운동하면서 건강한 사람	삶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	빈곤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아집)	자아실현을 못할 것 같음	안정적인 주거지	돈 걱정 없이 놀이, 일 등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공간	교육
주체적인 노인	6) 나는 어떤 노인으로 살고 싶나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사람	공허함	5) 나의 노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울감	다른 사람의 도움 (신체적, 정신적)	4) 나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
사회에서 존중받는 존재로	일탈을 즐기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병원비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마음 나눌 사람이 없는 것	의료 지원	식사, 주거, 의료, 친구들과 만나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소득	무료 건강센터

● 노인의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나?

- ▶ 노인인권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해당 이슈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참여자로 하여금 탐색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여 참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권적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2) 사례 토론 활동

### ● 사례1 : 치매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

#### ▶ 중증 치매 환자들이 주민인 동네,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은 중증 치매 환자들이 주민인 동네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일상'과 '자유'를 컨셉으로 한 마을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장을 보고, 미용실을 가고,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이들은 기존의 요양시설에서 했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 주민들 곁에는 요양관리사들과 간호요원들이 함께 하고, 치매 노인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그백 마을의 주민들은 환자라는 이유로 보호와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더 필요한 삶의 주체로서 인생을 즐긴다.

#### ▶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하여 치매 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본 오무타 시

노인 복지 강국인 일본은 치매 노인들을 위해 최고급 시설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여러 국가의 선모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치매 인구가 급증하자 질 높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시 부야 구의 주민들 노인요양보험료로 매달 약 5만원을 납부하는 등 재정 부담은 커졌고, 결국 국가는 시설 지원 비용을 삭감하였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설과 당사자에게 전가되었다. 그 후 일본은 어떤 변화를 취했을까?

일본의 후쿠오카 현 오무타 시의 인구는 약 13만 명, 그 중 약 6000명이 치매를 앓는다. 주민들은 치매를 인구의 다수인 치매 주민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까지 치매 교육을 받아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하기 노력했다. 치매 주민들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모의 훈련을 받거나, 지역의 상점, 택시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오무타 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과제로 여겨,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출처: KBS <명견만리> 제작팀 저자(2016), 『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행복한 기억상실자들의 사회' 266-289쪽



### 사례분석을 위한 질문

-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과 일본 오무타 시에서 치매환자가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봅시다.
-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 치매노인의 지역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인가?

### 정리하기

- ▶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과 일본 오무타 시의 사례는 국가는 노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노인을 공동체의 주체로 바라보는지, 노인의 삶에 대한 지향점은 무엇이고, 그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노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일본 오무타 시 사례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노인정책의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 당사자가 살아온 방식처럼 지역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지역사회 역시 노인을 함께 살아갈 주체로 인정하고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 ▶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사례는 자유와 신뢰에 기반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간 우리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와 통제 그 사이에 있던 것은 아닐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가의 역할 중 하나는 돌봄 영역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사례를 확산하는 것임을 공유합니다.

### ● 사례2 : 노인요양병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돌봄 제공하기

올리브와 조는 부부 사이이다. 조에게 70세에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심화되면서 올리브가 조를 더 이상 케어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올리브는 마음이 아팠지만, 조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 조는 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고, 흥분하며 내보내달라며 요구하였다. 요양병원에서는 ‘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였다. 이따금 조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자, 조의 낙상 방지를 위해 무릎 벨트를 사용해야 함을 설명 올리브에게 설명하였다. 올리브는 조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동의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무기력한 조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 ▶ 인권에 기반한 접근

요양병원은 조가 입소할 때 조를 충분히 관찰하고, 올리브의 조언을 들어 조에게 맞는 돌봄이 분석한 돌봄계획을 작성하였다. 돌봄계획에는 조가 산책을 매우 좋아하고, 산책을 할 때 조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요양시설 내의 안전한 폐쇄형 정원이 있고, 조는 정원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 요양원 거주자는 식물을 가꾸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직원과 함께 동네 상점과 공원을 가는 시간에 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요양병원 종사자는 조가 우체부였다는 정보를 알고,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는 이 일을 좋아하며, 조는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며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 조는 처음에 요양병원을 들어왔을 때보다 현재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1), 『노년기, 건강과 인권』, 329-330쪽  
원 출처: The Alzheimer Society of Ireland(2013), 『Human Rights and Older People in Ireland』, 15-16

#### 사례분석을 위한 질문

- 기존의 돌봄과 인권에 기반한 돌봄에서의 문제해결(치매로 인한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 등)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인권에 기반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권에 기반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나의 업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정리하기

- ▶ 동일한 조의 행동에 대해 기본적 돌봄과 인권에 기반한 돌봄의 대응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 돌봄이 조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짓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인권에 기반한 돌봄은 그 행동이 촉발된 원인을 살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약물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의 행동도 줄이고 조의 삶의 만족도도 높였습니다.
- ▶ 치매 노인에 대한 물리력 및 원하지 않는 약물의 사용이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권에 기반한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돌봄시간 및 인력,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노력 및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즉 인권에 기반한 돌봄이 가능한 환경 및 여건과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이 사례토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권적인 노인정책을 위한 조건과 구조를 파악해보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 2-1-2 노인 인권 추천 활동 2. 문화콘텐츠형

### 학습안내

- ▶ 영화, 드라마, 그림책, 소설 등 서사구조를 가진 문화콘텐츠의 장점은 다양한 해석적 잠재성을 가진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아동을 둘러싼 인권문제를 생생한 이야기를 매개로 되짚어 보는 과정을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서사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의 참여자와 연결고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갖지 않고서 문화콘텐츠를 통한 참여적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인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가진 다층적이고 다양한 맥락 속에 숨어있는 인권적 의미를 읽어냅니다.

### 활동하기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 촉진하기

- ▶ 인권교육에서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인권의 눈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참여자가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1) 함께 읽는 인권도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2019, 조기현)

#### ● 활동가이드

- ▶ 이야기를 확장하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 참여자 간의 촘촘한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질문은 책 내용의 이해를 돕고 아동인권 원칙에 기반하여 생각을 열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 ● 활용할 주요 질문들

##### +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자기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읽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책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주세요. 자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이의 경험도 좋습니다.

- 책에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내용을 적어주세요.

#### + 노인 인권 원칙에 기반한 질문

- “나는 효자가 아니다. 시민이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노인 돌봄은 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가?/돌봄의 주체가 가족이어야만 하나?  
→ 노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 당신의 노후, 시설에서 살 것인가? 마을에서 살 것인가?  
→ 노인 돌봄 문제의 사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 노인 돌봄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사회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사회문제의 개인화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인 돌봄이란 무엇인가?

💬 자세한 내용은 노년기 건강과 인권, 2022, 327쪽, 의사결정에서의 인권기반 접근 참고하세요.

**TIP** 이야기와 참여자를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은 후 달라진 생각이나 공감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주인공의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핵심 주제를 담은 토론 거리를 찾기보다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 (2) 함께 보는 인권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로치)

### ● 활동가이드

- ▶ 함께 보는 인권영화는 기본적으로 함께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 이때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자신과 연결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보는 인권영화'의 주요 진행과정과 질문거리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 + 진행과정

- 영화를 보기 전에 인권교육의 목적과 영화의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토론 작성은 패들릿(padlet.com)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공유합니다.
- 진행자는 영화에서 인권적 해석이 필요한 장면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도 좋습니다.

- 참여자와 연관된 정책과 제도의 구조와 한계, 대안 등을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 활용할 주요 질문들**

「노인인권 원칙」의 기본원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 ‘다니엘 블레이크’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무엇이 있을까?
-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공공시스템의 민영화는 괜찮을까?
  - ‘다니엘 블레이크’는 인권의 주체인가? 행정의 대상인가?
  - ‘대상’에서 벗어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TIP** 인권 문제를 볼 때, 인권의 주체와 권리의 내용, 그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자가 누구이며, 현실 맥락을 기 반하여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칫 감상 위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행자는 영화를 인권의 구조 속에 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리하기**

- ▶ 노인 인권 교육활동이 끝났다면, 경험한 일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마무리 정리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운 내용과 배움의 과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노인 인권을 위한 교육자료

## 읽을거리



## 「아빠의 아빠가 됐다」(2019, 조기현)

치매 걸린 아버지와 고졸 흡수저 아들이 보낸 9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가족 돌봄의 책임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보자.

## 가족의 파산



## 「가족의 파산」(2017, NHK 스페셜 제작팀 저, 홍성민 역)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50% 시대 노후 파산이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왜 나이들을 혐오 하는가」(2018, 류승연)

★ 우리는 왜 나이들을 혐오하는가-산업사회에서 잉여가 되는 존재,



## 「정든 마을에서 늙어가기」(2009, 이노우에 유키코 저, 전홍규·남원석·김윤이 역)

일본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거주자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노인이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에 대해 다층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볼거리

##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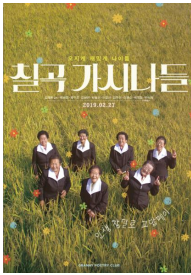
## &lt;어떤시선(봉구는 배달 중)&gt;(2013, 박정범, 12세 이상, 109분)

실버 택배기사인 할아버지 봉구는 어느 날 길에 남겨진 6살 행운이를 보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려고 선심을 쓰지만, 행운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일이 꼬여 아동유괴범으로 몰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늘의 황금 마차>(2014, 오명, 12세 이상, 8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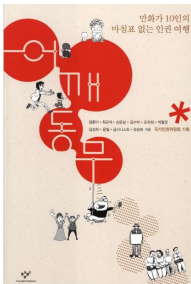
노인의 이야기이면서 가난한 이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간암 말기로 곧 생을 마감하는 큰현님의 제안으로 밴드를 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사건이 전개된다.



**<칠곡 가시나들>(2019, 박재환, 전체관람가, 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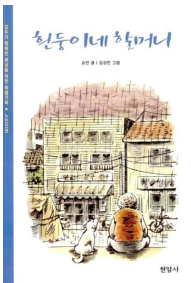
한글과 사랑에 빠진 칠곡 할머니들의 이야기이다. 박금분 할머니의 극 중 대사인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시가 천지삐까리다.” 영화 속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할머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림책**



**「어깨동무」(2013, 윤필, 조주희 저/최규석, 손문상, 김수박 글 그림)**

어깨동무는 동시대에서 잘 알려진 만화가 10인이 참여한 인권 만화이다. 독거 노인의 고독사를 소재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자.



**「흰둥이네 할머니」(2003, 송언 글)**

노인문제를 소재로 한 동화 6편이 담았다. 작가는 이 동화를 쓰기 위해 노인복지기관과 시설을 취재하면서 현실의 노인문제의 사례를 수집했다. 노인학대의 문제와 같이 다소 무거운 주제를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

**사이버 강의**

**노인 인권의 이해(2022, 8차시, 2시간 50분, 국가인권위원회)**

생활 속 노인의 인권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한다.

**노인인권의 이해 강좌(2022, 동영상, 1시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 증진 차원에서 노인 인권을 설명한다.

**언론인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2022,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과정이다.

## 2-2 아동 인권의 이해

### 학습안내

- ▶ 아동 역시 독립된 인격체인 권리의 주체이므로 모든 아동은 자신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내용을 당연히 권리로 보장받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아동 인권을 이해합니다.

### 학습하기

####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인권' 이해하기


#####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1. 아동인권 기본권리와 일반원칙

- + 본 협약의 핵심 |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
- + 아동권리의 내용 |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확인
- + 4개의 일반 원칙 |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4개의 원칙 제시


#### < 카드뉴스-아동권리의 내용과 일반원칙 >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비차별의 원칙(제2조)** :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버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18)

②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2 : 국가의 책무

- + 「아동권리협약」의 전문 첫 시작은 ‘이 협약의 당사국은’으로 시작하고, 각 조항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궁극적으로 국가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아동권리협약」의 제3조는 국가의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작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삶과 연결된 모든 국가 작용은 아동 최선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한 자신의 업무의 인권적 역할을 이해합니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외교부 번역본으로 가져오면서 원문의 care를 돌봄으로 조정


③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3 : 참여권

- + 아동 최선 이익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당사자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은 제3조(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와 제12조(참여권)는 상호의존적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 + 제12조 참여권은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낼 권리를 가지며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 이는 아동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내용적 측면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주체성을 보장한다(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닌 것)는 절차적 측면 모두에 있어 인권적 의미가 있습니다.




- ▶  제12조 참여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sup>1)</sup>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특히, 제3조와 관계 : 263쪽)
- ▶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④ 유엔 「아동권리협약」 핵심포인트 4 : 가용자원 최대한도 내 아동 인권 보장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양육책임자의 자원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신하여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알맞은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 ▶ 가용자원 최대한도 활용과 점진적 실현에 대하여는 1차시 내용 참조

(2) 아동 인권 현장에 인권원칙 적용하기

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이행에 대해 알아보까요?

 이와 관련된 현장의 정책 찾아보기

- + 아동권리의 이행은 공공예산 모든 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권리 일반원칙과 연결하여 공공예산 이행의 실제적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 + 모든 행정적 차원에서 차별을 방지한다. 예산 관련 법령, 정책, 프로그램 시행에서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 비차별에 대한 권리(제2조)  
예) 실질적 평등을 위해 특별조치를 받을 아동 집단을 확인하여 공공예산을 사용한다.
- + 예산 과정의 모든 단계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예산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참여권을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로 강조하여 다룹니다. 본 일반논평에서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라는 언명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자 하는 바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이에 아동의 의견을 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아동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가진 주체는 아동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포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가인권위원회, 2021)은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를 '아동의 피청취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 예) 예산 의사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보여준다.
- + 예산 결정시, 각기 다른 연령의 아동이 생존하고 성장하며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생명, 생존 및 개발권(제6조)
  - 예) 초기 아동기 발달에 적게 투자하는 것은 인지 발달에 해로우며, 기존의 박탈, 불평등, 빈곤을 강화할 수 있다.
  - +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 참여권(제12조)
  - 예) 주요 예산 문서의 접근권에 대한 아동권리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

출처: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21, 국가인권위원회)

② 카드뉴스로 보는 아동인권 이해 - 소년사법제도와 아동인권

**Q. 촉법소년에 대한 인권적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적 대안을 찾아봅시다.

출처: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2021,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여 제작

+ 유엔에서 권고한 제 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사례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2022, 국가인권위원회)]을 살펴보세요.

### 정리하기

아동인권의 이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며, 모든 아동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 2-2-1

## 아동 인권 추천 활동1. 참여형

## 학습안내

- ▶ 1, 2차시에서 알게 된 인권, 아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관 정책과 사업에 접목해 점검해 봅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tool을 활용해 보면 더 좋습니다.
- ▶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확인하고, 아동 인권 증진의 방향을 견지할 수 있기 위한 업무 내용의 확장, 개선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도출해 봅니다.

## 활동하기

## ● 아동정책영향평가 활동지 채우고 개선계획 나누기

아동 관련 인권기준과 규범을 직접 업무로 가져와 적용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 ① 자신의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확인해 봅니다. 이를 통하여 내 업무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지키는 일이 나의 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제시한 원칙에 맞춰 내 업무가 '사람'을 제대로 지키기에 충분한지 진단해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채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까지 제안합니다.
- ③ 진행자는 학습자들에 제시한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도출된 제안 사항을 정리해 제도개선 창구와 연결합니다. ☞ 사전에 이를 공지해 교육의 효능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점검해보는 나의 업무**

- 비차별(Non-discrimination)** :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내 업무의 인권적 의미〉** 나의 업무는 아동의 어떤 인권과 관련되어 있나요?  
 -

- ☞ 나의 업무를 아래의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점검해 봅니다.
- ☞ 무엇이 잘 지켜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b>비차별의 원칙(제2조)</b>	진행사항	
	개선방향	
<b>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b>	진행사항	
	개선방향	
<b>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b>	진행사항	
	개선방향	
<b>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제12조)</b>	진행사항	
	개선방향	

## 정리하기

아동인권 교육활동이 끝났다면, 경험한 일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마무리 정리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운 내용과 배움의 과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관련 체크리스트 현황 등을 볼 때 아직 도입 초기 단계라 하겠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의 영향평가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진단과 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업무자가 제대로 진단과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동정책영향평가 : 『202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2022) 참고

## ● 아동정책영향 평가 더 알아보기

### 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과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정책과 사업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및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 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능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중략)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중략)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유엔아동 최종견해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20) 63쪽, 67쪽

### +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유엔아동 최종견해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20) 111쪽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2003) 아동의 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E. 이행 감독-아동 영향 평가와 감정의 필요성

45. 아동에 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임을 보장하는 것(제3조 1항)과 협약의 모든 규정이 입법 및 정책 개발과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에서 존중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동영향 감정(아동과 그들의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안된 입법, 정책 또는 예산 배치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 및 아동영향 평가(이행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지속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정책의 개발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설립되어야 한다.

46. 자기 감독과 평가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를 들어 국회 위원회, 비정부기구, 학술기관, 전문가 단체, 청소년 단체 및 독립인권기구에 의한 이행의 진행 정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65항 참조).“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국가인권위원회, 2021) 71쪽

## ② 국내 사례 소개

### + 경상북도 상주시 자체평가 -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는 노인 인구가 많고 아동 인구는 적어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고, 지역의 아동들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주시는 아동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향후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 판단하였고 이 사업을 아동 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담당자는 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였고, 사업에 배제되는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 지원 아동 확대 방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교육과 종사자 역량강화 중 우선되어야 할 것,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의 특성상 단기보다 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고민하게 되었고 차년도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담당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해 외부기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정책 및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다시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상주시 사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환류체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유튜브 '20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 우수사례 발표1경상북도 상주시'  
(<https://youtu.be/vH1wlfi-NsA>)

**+ 서울시 '꿈나무정책참여단'**

서울시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 및 제언할 수 있는 꿈나무정책참여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6학년 아동 약 70여명이 참여, 존중,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8개 분야 정책 중 선택하여 활동하고, 이후 아동정책발표회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 중 최종적으로 선택된 정책 제언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꿈나무정책참여단은 아동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아동견해 존중을 통해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시민참여조사 실시**

용인시는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가 참여한 시민참여조사를 실시하여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질문과 이외 아동정책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질문 다음과 같이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 '우리 동네의 변화에 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 '어린이와 청소년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 '우리 집, 우리 동네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민참여조사 결과 ‘우리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알려주세요’, ‘교과목 외에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지역 간 주거환경 차이를 줄여주세요’, ‘우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용인시는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용인시 사례는 시의 정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시의 정책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 해외 사례: 스웨덴은 1999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전략(A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Sweden)」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관한 통계 개발, 도시 및 교통 계획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확보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아동정책영향평가 : 『202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2022) 참고

## 2-2-2 아동인권 추천 활동 2. 문화콘텐츠형

### 학습안내

- ▶ 영화, 드라마, 그림책, 소설 등 서사구조를 가진 문화콘텐츠의 장점은 다양한 해석적 잠재성을 가진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아동을 둘러싼 인권문제를 생생한 이야기를 매개로 되짚어 보는 과정을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서사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의 참여자와 연결고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하기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 촉진하기

- ▶ 인권교육에서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인권의 눈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참여자가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1) 함께 읽는 인권도서 「이상한 정상가족」 (2022, 김희경)

- ▶ 이야기를 확장하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 참여자 간의 촘촘한 대화 유지를 위해서는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질문은 책 내용의 이해를 돕고 아동인권 원칙에 기반해 생각을 열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이상한 정상가족」에 활용할 주요 질문들

##### +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자기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읽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책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주세요. 자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이의 경험도 좋습니다.
- 책에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내용을 적어주세요.

##### + 아동인권 원칙에 기반한 질문

- 체벌은 사랑의 매인가? 친밀한 폭력인가?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을 위해 성인의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인가?-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

-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가지는가?
-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 조항은 왜 없어졌을까?



이야기와 참여자를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은 후 달라진 생각이나 공감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주인공의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핵심 주제를 담은 토론 거리를 찾기보다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 (2) 함께 보는 인권영화 <범죄소년>(2012, 강이관)

- ▶ 함께 보는 인권영화는 기본적으로 함께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 이때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자신과 연결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보는 인권영화'의 주요 진행과정과 질문거리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 + 진행과정

- 영화를 보기 전에 인권교육의 목적과 영화의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토론 작성은 패들릿(padlet.com)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공유합니다.
- 진행자는 영화에서 인권적 해석이 필요한 장면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도 좋습니다.
- 참여자와 연관된 정책과 제도의 구조와 한계, 대안 등을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 + 활용할 주요 질문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 '지구와 엄마'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무엇이 있을까?
- '지구와 엄마'가 겪은 차별은 무엇인가?
  - '지구'가 처한 대물림의 사슬을 끊어낼 사회제도와 정책은 없는가?
- '지구와 엄마'의 인권을 지켜줄 방안은 없는가?

-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TIP** 인권적 대응이 반드시 법률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sup>2)</sup>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해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6.23. 92추17 판결).

### 정리하기

- ▶ 아동인권 교육활동이 끝났다면, 경험한 일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마무리 정리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운 내용과 배움의 과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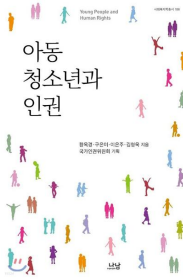
#### 읽을 거리



#### 「이상한 정상가족」(2022, 김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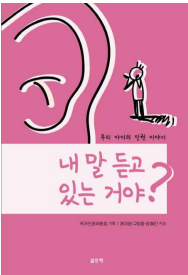
아동인권과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실에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촘촘하게 담고 있다. 아동인권의 현황과 쟁점을 고루 담고 있어 실제적인 이야기를 토론편 거리로 끌어내기 유용하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아동·청소년과 인권」(2017, 황옥경·이은주·구은미·김형욱)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인권의 역사와 법제, 교육방법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은 교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자 등이 인권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유용하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2017, 권귀염·구정화·장혜진)

양육과정에서 어떻게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인권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 볼 거리

영화



<4등>(2015, 정지우, 15세 이상, 119분)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대회만 나갔다 하면 4등에서 못 벗어나는 수영 선수 준호와 1등에 집착하는 엄마, 수영 코치 광수가 그러가는 1등에 대한 비틀어진 도전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



<다음 침공은 어디?>(2016, 마이클무어, 15세 이상, 120분)

미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타곤의 전사가 된 마이클 무어, 그가 총성과 약탈 없이 전 세계를 침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코믹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기한>(2021, 유준민, 전체관람가, 28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는 물건들처럼, 사람도 쉽게 쓰이고 버려지는 일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지숙이 어린 남매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주면서 사건에 시작된다.



**<동물농장(별별이야기)>(2005, 국가인권위원회, 전체관람가, 15분)**

양들과 함께 살고 싶은 염소 이야기로 차별에 대해 그리고 있다. 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염소의 고군분투가 눈물겹다. 다양한 동물들이 찾아온 동물농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가버나움>(2018, 15세 이상, 126분)**

출생기록조차 없이 살아온 어쩌면 12살 소년 '자인'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희망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

**드라마**



**<소년심판>(2022, NETFL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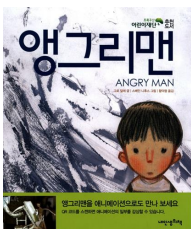
촉법소년을 혐오하는 판가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법정 오피스극이다. 소년범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법과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자.

**그림책**



**「입 없는 아이」(2020, 박범)**

읽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읽히는 그림책이다. 주인공 재인과 입 없는 아이의 일화는 어떤 것이 상처가 되고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 지를 보여준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털어내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앵그리맨」(2014, 그로 달레 글, 스페인 뉘후스 그림)**

가정폭력을 다룬 그림책으로 전반부는 가정폭력의 실상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치유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운율로 잘 표현되어 있다. 치유의 주체가 의사나 다른 이가 아닌 폭력 행사자인 아버지이다.

**사이버 강의**

**사회복지와 인권(2022, 15차시, 6시간 20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에 바탕을 둔 사고와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2022, 15차시, 5시간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원칙 등을 소개하는 과정

**인권과 함께하는 사회복지(2022, 3차시, 1시간, 국가인권위원회)**

다양한 인권 의제와 기본적인 인권의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역량을 증진하는 과정

**아동청소년의 인권(2022,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생활, 여러 시설 및 관계 속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부모를 위한 아동인권(2022,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돌봄, 발달, 놀이 아이의 인간 관계 의사결정 등 여러 주제를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책 형태의 영상

**아동 청소년 인권 발달의 역사(2022,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의 보호 증진의 관점에서 인권의 개념과 발달사를 풀이하는 영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목록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국가인권위원회, 2020)에서 논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논평 1호 (2001)	교육의 목적
일반논평 2호 (2002)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일반논평 3호 (200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4호 (2003)	"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일반논평 5호 (2003)	아동의 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일반논평 6호 (2005)	출신국의 외부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일반논평 7호 (2005)	유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 8호 (2006)	체벌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일반논평 9호 (2006)	장애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10호 (2007)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11호 (2009)	선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
일반논평 12호 (2009)	아동의 들려질 권리
일반논평 13호 (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14호 (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제3조 제1항)
일반논평 15호 (201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제24조)
일반논평 16호 (201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17호 (2013)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18호 (2019)	유해한 관행에 대한 아동의 권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31호와 공동)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목록	
일반논평 19호 (2016)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제4조)
일반논평 20호 (2016)	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
일반논평 21호 (2017)	거리 상황의 아동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2호 (2017)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 관련 일반적 원칙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3호와 공동)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3호 (2017)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4호와 공동 논평)
일반논평 24호 (2019)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25호 (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 2-3 장애와 인권 이해

### 학습안내

- ▶ 장애관련 이슈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권의 개념이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참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장애 관련 정책이나 이슈들에 대한 인권적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과 권리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습하기

#### ● '장애인 인권'을 살피는 관점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제3조).

최승원 외(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20쪽

#### (1)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이해하기

- ▶ '사회적 장애 모델'에 기반해 장애를 이해해야만 본 교육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아닌, 장애인 인권교육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전 '개별적 장애 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 과 '사회적 장애 모델'의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 -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 서술합니다. ‘장애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은 사회가 변화·발전해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 이와 함께, 장애는 손상을 입은 사람과 그 당사자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태도, 환경, 사회 시스템과 제반이 함께 맞물려 나타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별적 장애 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과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 + 개별적 장애 모델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보고, 장애를 개인적 비극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이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손상의 제거 또는 극복을 위한 치료와 강화가 됩니다. ‘개별적 장애 모델’에서는 장애인은 주로 사회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치료되고, 다뤄지고, 변화되고 개선되어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사회적 장애 모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사회적 억압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갖추지 못한 데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장애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며 장애에 대한 책임 역시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인권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가 ‘모든 사람의 존엄성’, ‘국가의 책무성’, ‘인권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인식’ 등임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장애 모델 중 인권에 기반한 장애 모델은 ‘사회적 장애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참여자들이 장애를 ‘사회적 장애 모델’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안 도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이윤경, 2014), 국가인권위원회

###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 ‘장애인 인권’ 말할 때 우선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협약의 핵심은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는 것입니다.

## 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

- a.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b. 비차별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녀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 제3조 일반원칙은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이나 제도를 수립·해석함에 있어 해당 법, 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자 협약의 전 조항의 해석 및 응용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으로 협약의 이행과 협약의 목적의 실현을 위한 주된 요소임.

출처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31쪽

## ②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탈시설화’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권고의 인권적 의미를 되짚어 봅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할 것.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22), 제19조 내용 중에서

-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한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은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를 이해해봅시다.

### (3) 장애인 인권 관련 주요 이슈 다루기

- ▶ 장애인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장애 모델’ 및 인권의 관점에서 해당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해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와 ‘최선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보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2014,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하·이윤경, 국가인권위원회

#### ② 자립생활과 의존의 보편성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왔습니다. 이처럼 ‘자기결정권’과 ‘선택’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립생활 개념은 ‘자기결정권’ 조차 ‘의존’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후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은 고립된 개인의 ‘결정’과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 됩니다. 장애학 연구자인 빅터 핀켈스타인은 “비장애인들 세면기, 수도꼭지, 배관시설 등만이 아니라 그/그녀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유지해주는 일군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의존이 장애인들에게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자립/의존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의존’은 장애인이 가지는 특수성이나 비정상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이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자립과 의존은제로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자립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장애학의 도전」, 2019, 김도현, 오월의 봄

#### ③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는 거주시설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구호로

‘좋은 시설은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주 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표현한 문구입니다. 거주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 등은 시설 운영자나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권침해를 발생 시킬 수밖에 없는 기제임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발표한 탈 시설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설수용은 인권침해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의 부족, 장애인의 보호 등 그 어떤 사유로도 시설수용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2014,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이윤경, 국가인권위원회  
 참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 ④ 장애인의 노동권

노동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노동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고 사회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이윤 창출에 기여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노동만을 노동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을 노동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공동체로의 참여를 막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장애를 ‘사회적 장애 모델’에 기반해 이해하고 노동의 본래적 개념을 회복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재해석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인권의 이해 : 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2019

#### 카드뉴스로 보는 인권 이해

유엔에서 권고한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화’와 관련한 주요 개념에 대해 살펴봅시다.

**탈시설화 정책**

왜 시설에서 살아야 하지?

내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  
내 삶의 방식대로

왜 집단 생활을 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장애인 시설 생활**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회에서 분리시켜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은 사는 것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삶의 방식을 존중받지 못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설 생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 과거 ·

장애인의 의료적 관점이 팽배하였던 시기에는  
재활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 되기도 함

형제복지원 시간 인권유린	에버다 놓아원 시간 비리와 부패	양지마을 시간 폭력과 억압
---------------------	-------------------------	----------------------

### · 탈시설 정책 ·

시설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거주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 제공
제약을 최소화 거주인의 자율성 보장	사생활과 소유권 보장

### 탈시설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포함(inclusion)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 합니다.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결정권과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주세요.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17

출처: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

## 정리하기

- ▶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한 사례를 다룰 때에도 학습자가 취해야 할 관점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과 권리 중심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2-3-1 장애인 인권 추천 활동1. 활동형

## 학습안내

- ▶ 인권교육에서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인권의 눈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참여자가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활동하기

## ● 사례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하철 출근길 장애인 시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권 보장 등 장애인 인권 관련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는 대해,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크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연착되어,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고 장애인 단체 대표는 비난을 받더라도 시민들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은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불편한 거지만, 장애인들은 일상이 불편하니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사례분석 활동을 위한 질문

-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고, 우리사회가 해당 사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앞서 정리한 우리사회의 다양한 시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각의 시각들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본 사례에서 침해되고 있는 인권을 무엇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 인권규범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색 등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참여자들이 어려워 할 경우, 찾아 볼 수 있는 규범의 범주나 사이트 등을 안내해 주셔도 좋습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사례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도나 정책들을 찾아보고 해당 제도나 정책들이 관련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대안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리하기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비판의 핵심은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출근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가의 책무성과 연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 등장한 것으로 지하철 시스템이 멈추어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배제해온 것은 아닐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왜 중요한 인권의 목록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집회·시위·결사의 의미를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TIP** 인권교육의 핵심은 참여자의 인권역량을 증진하여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내재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의 의견이 정답의 강요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분석의 내용을 변형하여 사례토론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기 - 토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 ●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 유의> 강서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나타난 현상-장애인의 교육권과 지역주민의 재산권의 충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원인을 짚어 보도록 합니다.

### ● 장애인 탈시설과 보호

▶ 유의> 탈시설을 이야기 하다 보면 시설에서 살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런 질문(시설과 지역사회 중 어떤 곳에 살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자기결정, 자립, 거주 자유 등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탈시설을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3-2 장애인 인권 추천 활동 2. 문화콘텐츠형

## 학습안내

- ▶ 영화, 드라마, 그림책, 소설 등 서사구조를 가진 문화콘텐츠의 장점은 다양한 해석적 잠재성을 가진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생생한 이야기를 매개로 되짚어 보는 과정을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서사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의 참여자와 연결고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하기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 촉진하기

- ▶ 인권교육에서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인권의 눈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참여자가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게 하고 여러 복합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Q. '장애인 인권'을 살피는 관점은 무엇인가?

-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갖지 않고서 문화콘텐츠를 통한 참여적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과 권리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 (1) 함께 읽는 인권도서 「장애의 역사」(2020, 김닐슨 저, 김승섭 역)

- ▶ 이야기를 확장하되 인권교육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 참여자 간의 촘촘한 대화가 이어지도록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질문은 책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 인권 원칙에 기반하여 생각을 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장애의 역사」에 활용된 주요 질문들

## +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자기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읽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책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주세요. 자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이의 경험도 좋습니다.
- 책에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나누어주세요.
-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내용을 적어주세요.

**+ 장애인 인권 원칙에 기반한 질문**

- 장애를 가지는 것은 개인인가? 사회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봅시다.
- 사회로부터 배제 당하고 낙인 찍혔던 소수자의 삶을 바꿔놓은 국내의 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운동인가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예: 보호자가 반대하는 데도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사례)
- 장애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가는 어떠한 책무를 가지는가?



이야기와 참여자의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은 후 달라진 생각이나 공감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세요. 장애인의 존엄이 지켜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찾아봅시다. 핵심 주제를 담은 토론 거리를 찾기보다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 함께 보는 인권영화<코다>(2021, 선 헤이더)**

- ▶ 함께 보는 인권영화는 기본적으로 함께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 이때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자신과 연결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과정**

- 영화를 보기 전에 인권교육의 목적과 영화의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토론 작성은 패들릿(padlet.com)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공유합니다.
- 진행자는 영화에서 인권적 해석이 필요한 장면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도 좋습니다.
- 참여자와 연관된 정책과 제도의 구조와 한계, 대안 등을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보는 인권영화'의 주요 진행과정과 질문거리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 활용할 주요 질문들**

- '루비'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루비'는 왜 꿈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나요?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무엇이 있을까?
- '루비'에게 필요한 것은 행운인가? 시스템인가?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루비’의 꿈과 가족을 지켜줄 방안은 없는가?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TIP** 인권영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참여자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영화는 최신작이 좋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 많거나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보다는 재미와 의미를 함께 담은 영화를 골라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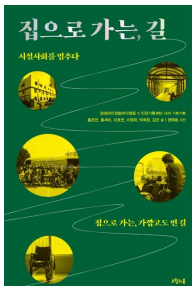
## 확장하기

### 읽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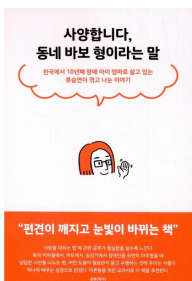
#### 「시설 사회」(2020, 장애여성공감 편)

사회에서 배제되고 은폐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억압의 구조로서 시설이 갖는 폭력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한다. 탈시설 운동이 갖는 인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집으로 가는 길」(2022, 홍은전 외)

“더 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탈시설’과 ‘자립’을 일궈내기까지, 그 치열하고 아름답고 험난했던 연대의 과정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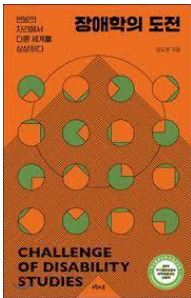
####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2018, 류승연)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이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게 된 낯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공감된다.



「사이보그가 된다」(2021, 김초엽·김원영)

청각장애(김초엽)와 지체장애(김원영)를 지닌 채 살아온 저자들의 장애권리운동안에서 경험한 타자, 환경, 사회를 그리고 있다. 장애인 사이보그로서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지만, 울림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닿아 있다.



「장애학의 도전」(2019, 김도현)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장애 문제를 다룬 책이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억압과 배제는 무엇인가 장애의 자립·자기결정권·노동 등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화두를 엮은 책이다.

🎬 볼 거리

영화



<학교 가는 길>(2021, 김정인, 12세 이상, 99분)

강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설립되는 과정 속 장애인부모회 어머니들의 용기와 강단 있는 행보를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다. 차별당하고 배제되어 온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한다.



<낮잠(별별이야기)>(2005, 국가인권위원회, 전체관람가, 15분)

별별이야기의 6개의 에피소드가 각각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가진 만큼 독립된 생각 거리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 낮잠은 걸모습이 다를 때 생기는 편견을 다루고 있다.



<미라클 벨리에>(2015, 에릭 라튀쥬, 12세 이상, 105분)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영화이다. 들리지 않는 것은 내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주인공과 다혈질 아빠, 루저 음악 선생 등 인물이 가진 다양한 결핍을 통해 나답게!라는 의미를 다시 짚어보자.



### <코다>(2021, 선 헤이더, 12세 이상, 112분)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 아이를 부르는 말, '코다'. 주인공 루비는 농인인 부모와 오빠를 대신해 지금껏 가족의 귀와 입이 되어왔다. 자신의 꿈이 생긴 루비는 가족을 떠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하지만, 자신이 떠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루비의 꿈을 위해 끈끈한 가족애 이상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 드라마



### <우리들의 블루스>(2022, TvN)

14, 15회에서 다운증후군 장애인 '영희'의 이야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운 경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하게 한다. 영옥과 영희자매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자.

#### 그림책



### 「귀 없는 그래요」(2020, 스테판 세르방 글, 시모네 레아 그림)

토끼의 상징인 귀가 없는 그래요는 코도 없고, 꼬리도 없다. 대신 입이 크다. 무엇을 물어도 “그래요!”라고 말해 그래요가 되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해 겨울」(2014, 권정생 원작, 유은실 글, 김재홍 그림)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열여섯 살 창섭이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독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 사이버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2022, 15차시, 7시간 50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과정이다.

### 인권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2022,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 공무원에 필요한 인권개념과 사례를 담고 있다.

### 3 제도개선을 통한 환류체계 : 인권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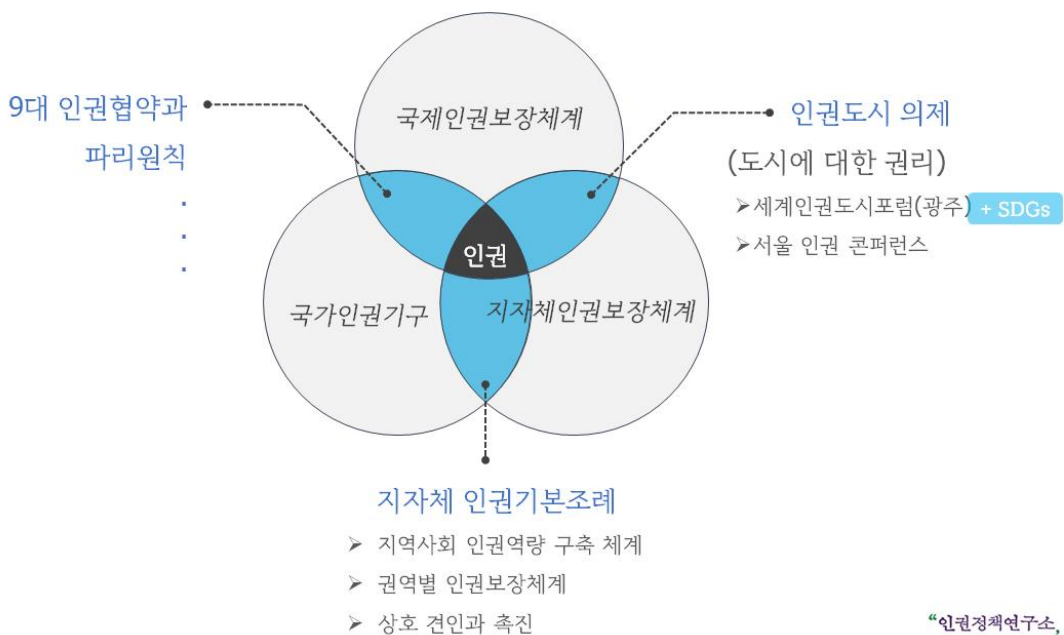
#### 학습안내

- ▶ 인권제도 및 체계를 통해 일어난 사회적 변화와 영향을 규명하여 인권제도 및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업무 속에서 실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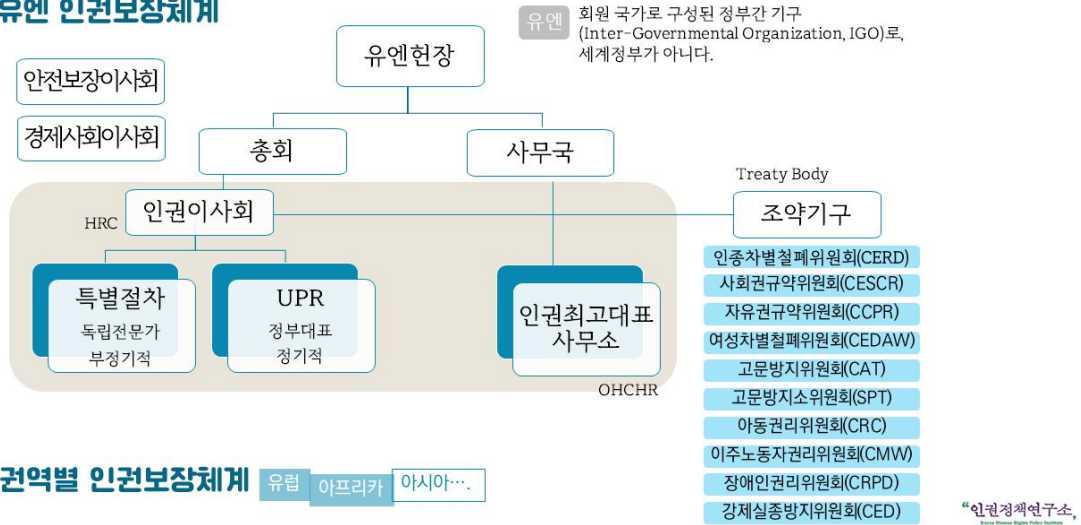
##### (1) 국내외 인권보장체계 이해

- ▶ 국내외 인권보장체계의 큰 흐름을 이해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봅니다.
- ▶ 국내외 인권보장체계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인권적 증진의 변화가 일어나 사례를 알아보고, 여러 인권기준을 통하여 지금 현재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생각해 봅니다.



[그림 10] 국내외 인권보장체계 연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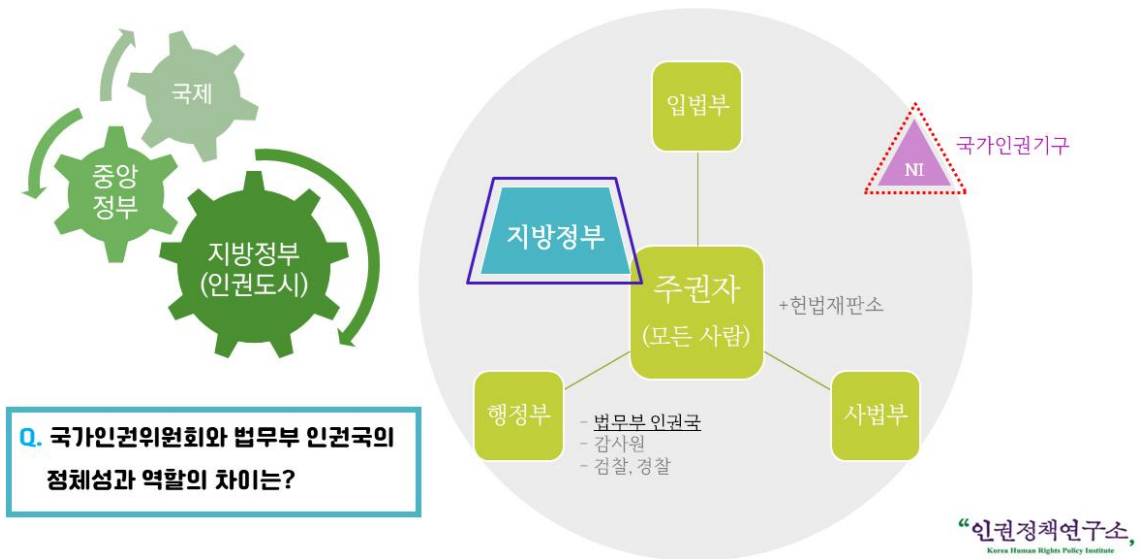
● 유엔 인권보장체계



● 권역별 인권보장체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림 11] 유엔 등 주요 국제인권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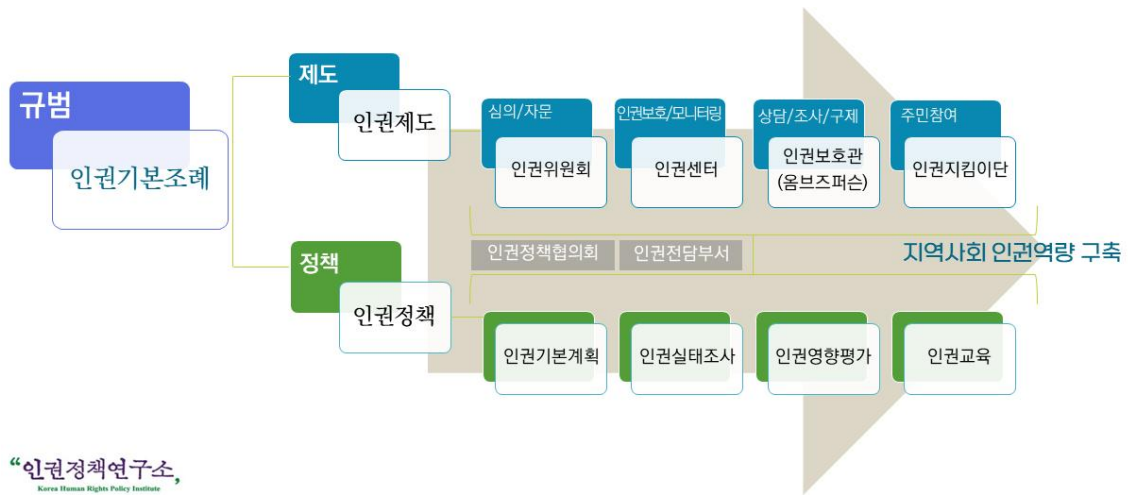
▶ 국가체계 자체가 인권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만큼, 다음의 각 단위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 및 업무 관련 문제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2] 국내 인권보장체계 이해\_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역할 증대

▶ 인권보장체계 안 인권부서 및 인권기구 등의 역할을 이해하여, 업무에서의 인권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인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13]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규범-제도-정책)

(2) 인권보장체계를 통한 인권개선 사례

① 제도개선의 환류체계 : 인권보장체계 설명

- 선 사례를 통한 예시 필요 : 다산콜센터의 재단 전환 등  
: 당사자 목소리+사회적 지지+인권체계의 작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  
으로 이어짐
- 인권의 역사와 수미쌍관 흐름

● 제도개선 사례

인권현장의 목소리→제도 개선 권고→관련 제도 개선→인권보장 수준 견인

▶ 인권이 무너진 현장

“경기도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가난때문에 또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기료를 넉달 동안 못 내는 바람에 단전돼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출처 서울신문 2005 기사



▶ 인권체계의 작동

“빈곤가구 전기·수돗물 끊지 말아야”

- 인권위, 최소한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빈곤가구의 단전·단수에 대해 사회복지재정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대책 마련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 등 다수의 빈곤가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로 하여금 모든 국민에 대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약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단전단수조치개선' (2007.12.3.)

▶ 제도개선을 통한 환류체계 작동 : 인권보장 수준의 견인

 「에너지법」 및 각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시행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3.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제4조(시의 책무) ③ 시는 자치구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4조(책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략)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 [시행 2019.2.20.]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의2(정의)

①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③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분항 신설 2021.6.4.]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 논평 내용 소개

② 제도개선 필요+가능 사례 뽑아보기

- 관련 조례 찾아 분석하기 : 법이 없어도 조례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기
- : ★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직무자의 역할로 마무리

● 관련 조례찾아 분석하기 <예시-장애>

국제인권보장체계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관련이 있는 국내 법률이나 조례,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인권보장체계간의 상호연관성 이해하고 제도개선의 환류체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제2·3차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주요 권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인권모 델을 반영해 장애평가시스템을 변경할 것</li> <li>•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li> <li>•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부담을 면제·경감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li> <li>• 모든 성 관련 법률과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을 주류화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li> <li>•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를 확충할 것</li> <li>•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li> <li>•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을 보장할 것</li> <li>• 포용적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li> <li>•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등의 장애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할 것</li> <li>•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마련과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조치 시행할 것</li> <li>• 장애여성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역사회 참여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히 조치할 것</li> </ul>
--------------------------------------	--

<p>최종견해와 관련 있는 국내 장애인 이슈 및 문제점</p>	<p>(예시)                  관련있는 최종견해 :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를 확충할 것,                  • (기사)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                  • (기사) 일상생활 속 장애인 접근권, 현실의 벽 여전히 높다                  • (기사) 편의시설 설치 대상 50제곱미터 이상? 되려 장애인의 접근권 제한하는 복지부의 기만적 꼼수                  • 문제점 : 장애인 접근권 관련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 1998년 시행됨에 따라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음. 법률 시행 이후에 지어진 건물일지라 하더라도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접하게 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음.</p>
<p>최종견해와 관련 있는 국내 법률 및 제도</p>	<p>(예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p>
<p>국내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p>	<p>(예시)                  201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사업장의 규모와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을 달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정을 권고함.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와 비용지원, 공무원 및 사업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대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                  • 서울시는 해당조례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p>

### 정리하기

- ▶ 교육참여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접점이 있는 개선 사례를 위 인권보장체계와 연계하여 정리합니다.
-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적 인식과 관점이 관련 인권보장제도를 움직여 시민의 인권보장의 수준을 증진하게 된다는 흐름을 정확하게 공유합니다.
- ▶ 이를 통하여 인권교육과 인권제도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마무리합니다.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II

##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II

##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 1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기본과정/훈련가과정)은 교육 시간과 교육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가. 기본과정 운영 방법

- 1차시 구성시, 2회차 중에서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운영한다.
- 각 차시들은 연계성을 갖지만, 연간당 2회 훈련에 맞게 독립적으로 강의를 구성할 수 있다.
-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의 경우는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소재를 차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차시별로 제공된 토의 활동은 교육 시간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한다. 토의 활동에서 인권 문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참여자들 간 의견을 공유하고 강사의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며 경찰로서 가져야 할 인권적 관점에 대해 익힌다.
- ☞ 2차시의 경우 경찰 현장의 인권사례 분석 토론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의 두 개 강의 중 선택할 수 있다.
- ☞ 2차시 내에서도 필요한 소재를 선택하거나 전체 내용을 압축해 강의로 구성할 수 있다.
- ☞ 기본과정 2차시 모든 내용은 훈련가과정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나. 훈련가과정 운영 방법

- 훈련가과정은 인권의 개념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교수법 훈련을 함께 구성한다.
- 특히, 인권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교육 방법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인권사례 분석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시 부분은 기본과정에 자세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두었으므로 그대로 도입해 사용할 수 있다.
- 학습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교육 수준을 선정하고, 강의별 강사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
- 오리엔테이션이나 팀 빌딩 등을 통해 정서적 화합과 강사양성 과정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훈련과정에는 인권사례의 인권적 관점과 지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실제 교육현장을 염두에 두고 실습과 시연 과정을 포함하여 직접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로 소통해보며 교수 감각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 다.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 활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퍼실리테이터로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 활동지는 강사의 퍼실리테이션을 지원한다.
- 사례분석 방법
  - 인권사례는 참여자의 경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자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활용)
  - 인권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활동지를 참고하여 사례의 쟁점과 인권적 관점을 명확히 한다.  
(사례에서 얻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사례의 발생 이후에 달라진 현시점에서 변화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하나의 기준으로 정답을 찾기보다는 참여자의 인권적 관점 확보에 의미를 두고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역시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보기)



## 2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 ☞ 수요조사 분석 결과 주요 반영할 사항

〈1〉 목표 및 내용 : 경찰 공무원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권적 이해

〈2〉 방법 : 개념/사례분석 훈련 교육

- 왜 경찰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
-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 필요

### 가. 기본과정 구성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대상** | 경찰 공무원
- **교육 시간** | 총 2차시(2시간)
- **교육 목표** | 경찰 업무는 인권보장의무자로서의 국가, 그 국가행위자로서의 직무라는 이해를 통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향할 인권적 기준 훈련
  - 경찰 업무의 의미와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하여 업무자 자신과 시민의 인권 존중감을 제고한다.
  - 특히 직군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해 강사는 물론 학습 참여자 간 발화 및 긍정적 대화를 강화한다.
- **교육 내용** | 인권의 개념 지식과 인권적 태도 함양을 통한 인권의식 내재화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
  - 경찰 업무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이해
  - 직무 수행에서 인권적 대응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인권 보호

- 교육 구조** | [인권과 경찰]-[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로 전개되며, 기관의 교육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60분 단위 2개의 차시로 구성하였다.



[그림 1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조

- 차시 구조** | [학습내용1: 인권의 개념과 구조 및 경찰 직무의 인권적 해석]-[학습내용2: 인권 사례분석 및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적 대응에 대해 탐색한다.

- ☞ 2차시의 경우 경찰 현장의 인권사례 분석 토론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의 두 개 강의 중 선택할 수 있다.
- ☞ 2차시 내에서도 필요한 소재를 선택하거나 전체 내용을 압축해 강의로 구성할 수 있다.

**교육 방법** |

- 인권의 개념 이해와 사례 분석을 통한 토의 활동으로 전개한다. 경찰 업무가 가지는 인권적 의미를 바탕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인권적 기준을 훈련한다.

## 나. 경찰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인권교육 기본과정	
교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 업무의 의미와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하여 업무자 자신과 시민의 인권 존중감 제고</li> </ul>
교육 목표	<p><b>인권과 인권수호자라는 직무 역할에 대한 이해</b></p> <p><b>이를 통한 직무수행 수행 과정에서 지향할 인권적 기준 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이해</li> <li>직무 수행에서 인권적 대응</li> <li>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li> <li>인권의 개념 지식과 인권적 태도 함양을 통한 인권의식 내재화</li> </ul>
학습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시, 2시간</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과 경찰</li> <li>경찰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li> </ul>
1 차시 인권과 경찰	
학습내용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의 개념과 구조</li> <li>2. 인권의 권리자</li> <li>3. 인권보장 의무</li> <li>4. 인권의 특성 이해</li> <li>5. 경찰 업무의 인권적 역할 이해</li> </ol>
2 차시 인권과 경찰	
2차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 다음 사례 중 선택해 진행	
학습내용2	<p><b>경찰 관련 사례 분석 토의 프로그램</b></p> <p>- 경찰청 인권센터 제작 「경찰관을 위한 인권기본서」 내용 중 결정례 등을 인권적으로 토의해 볼 수 있도록 선별해 구성합니다.</p> <p><b>1단계&gt; 사건의 내용 이해</b></p> <p>※ 유의점 1. 토의를 위한 사례이므로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 팩트 체크에 천착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학습자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p> <p><b>2단계&gt; 어떤 인권이 문제되는가?</b></p> <p>- 신체의 자유, 안전권, 인격권,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인권의 내용을 찾아 봅니다.</p> <p><b>3단계&gt; 인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가?</b></p> <p>- 인권 제한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p>
	경찰관을 위한 인권기본서 참조

	<p><b>4단계&gt; 제한의 방법과 정도는 적정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을까?</li> <li>-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p>※ 유의점 2. 결정례 등 이후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가 인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시민의 인권 보호에 더 적합한 방향의 변화였는데, 현장에서의 실질적 구동을 위한 조건 등은 무엇인지를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p>	
<p>2-1차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 다음 주제 중 선택해 진행</p>		
<p>학습내용2</p>	<p><b>1. 정신장애인 인권 이야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보다는 ‘정신장애인’으로 호명</li> <li>-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응급입원</li> <li>- 정신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차별금지</li> </ul> <p><b>2. 노숙인 인권 이야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배제</li> <li>- 노숙인 관련 인권 이슈 : 제도와 규범 확보</li> </ul> <p><b>3. 이주민 인권 이야기</b></p>	

## 경찰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세부안

### 1 인권과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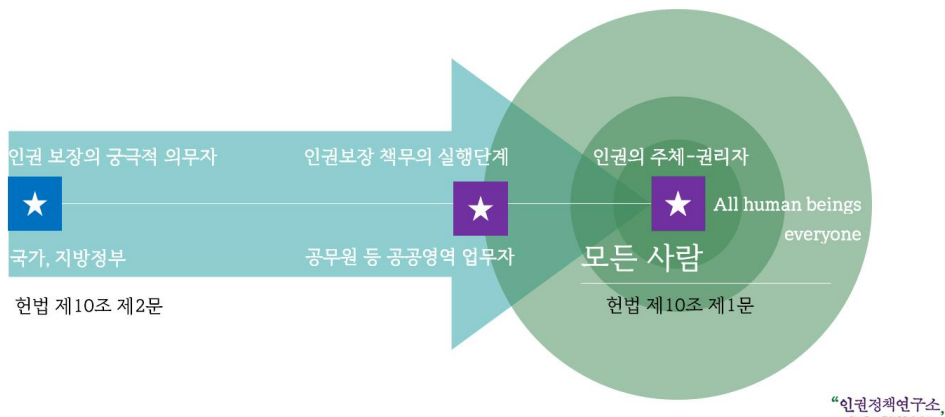
#### 학습안내

- ▶ 인권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은 ‘모든 사람’이고, 국가체제는 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합니다.
- ▶ 이를 통해 국가체제 안에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의 인권적 역할을 이해합니다.

#### 학습하기

##### (1) 인권의 개념과 구조 : 인권의 주체와 의무자(헌법 제10조)

- ▶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주어는 모든 사람이고 인권보장의무자는 궁극적으로 국가라는 인권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 전개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인권과 권익, 인권과 인성의 개념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인권의 역사, 국가와 지방정부 인권보장 의무의 내용, 인권의 특성 등을 이해하여 경찰의 인권적 의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그림 15 ] 인권의 구조-의무자와 권리자(헌법 제10조)

- ▶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보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권리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 all human beings, 누구나 everyone ≠ 개인의 권익, 이익
- ⦿ 인권보장의 궁극적인 의무자는 국가(지방정부 포함)  
: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obligation)≠ 공동체 구성원의 사명(duty-도덕적 차원)
- ⦿ 인권의 개념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전제 : 인권≠인성(상호 존중과 배려)
- ⦿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타인의 존엄을 해하거나 부정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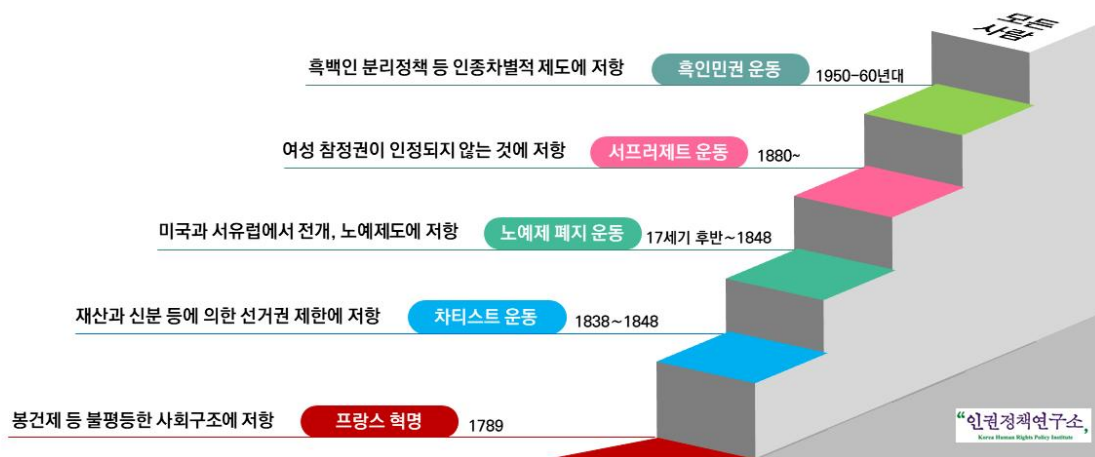
(2) 인권의 권리자 : 인권의 역사,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차별 극복의 역사

**“존엄성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을 요구한다”**

「사람을 옹호하라」, (류은숙, 2019), 50쪽

- ▶ 인권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 차별 소거의 역사(차별금지법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한 인권운동의 역사



[ 그림 16 ]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향한 인권의 역사

- ▶ 지금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의 인권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빈곤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 산업 현장에서의 희생,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건 등

“인권 개념은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담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완벽하게 충족해 주는 국가와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권의 이상과 현실에는 큰 간극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필연적으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이 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과 도구의 역할을 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태어나면서 여받은’ 인권을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통해 ‘성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권행정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5쪽

3세대 인권론 등으로 인권의 역사를 소개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이 모든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3세대 인권인 발전권 등의 의미를 통하여 인권 실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인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구분 짓게 되면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특성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와 인권(김수정 외, 2021) 62쪽

**(3) 인권보장 의무 :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 ▶ 국가와 지방정부 인권보장 3대 책무 존중(respect)-보호(protect)-실현(fulfill) 책무 이해
  - ↳ 국가 책임에 기반한 인권의 구조와 내용 및 작동을 이해합니다.

**유엔의 국가(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3대 책무	가치	내용
존중(respect)	자유 보호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한 <b>인권침해 금지와 예방</b> - 국가가 시민(개인)의 인권보장의 책무자로서 시민(개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할 의무
보호(protect)	반차별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b>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b> - 사인(개인, 집단, 기업 등)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개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실현(fulfill)	기본적 생존(인간다운 삶) 평등 연대	<b>기본적인 생존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수준 보장, 주체의 역량 강화, 공동체의 인권의식 증진</b> - 국가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의 인권실현과 증진을 위해 각종 조치들, 예컨대 법률적, 행정적, 예산적 그리고 사법적 대책을 취할 의무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보고서」, (법무부, 2022), 28쪽

(4) 인권의 특성 이해 :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 ▶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적 관계를 이해합니다.
- ▶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전반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업무를 확인합니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역량이론)의 유기적 확보 :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 이때 바로 자신의 인격이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체계(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명(‘duty’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을 이행함.

(5) 경찰 업무의 인권적 역할 이해

● 경찰의 직무집행 = 인권보장의무자인 국가의 행위



인권보장체계로서의 국가

경찰업무와 인권

- ▶ 경찰은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인권 사명을 위하여 법에 의거 그 직권을 부여받아 이행하는 공직자입니다. 경찰 업무는 다른 모든 국가기능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 ▶ 다만 더 긴박한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일부 인권 제한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 대응이 되도록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업무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의 제한의 상황을 넘어서면 인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 경찰 업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 경찰 업무의 특성상 긴박한 상황이 적지 않는데 매번 그 모든 판단을 경찰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의 의무자가 국가(와 그 기관인 경찰)가 아닌 경찰관



개인으로만 귀결되고, 결국 시민과 경찰관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 ▶ 따라서 국가와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이를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경찰 업무의 본래적 의미가 인권의 보호입니다. 그 수행과정에서의 직무 집행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권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만들어진 중요한 장치가 바로 적법절차라는 점 등을 핵심적으로 설명합니다.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이해하기



※ 이미지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인권행동강령

### 생각하기

**Q. 천부인권론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는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투쟁과 희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닌 희생의 역사 위에 확보되어 온 인권의 역사를 토대로 현재 쓰이고 있는 인권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Q.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까?**

☞ 모든 권리주장이 인권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해하는 주장은 인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권일까? 아닐까?**

☞ 개인의 희생과 봉사, 양보만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 <아래는 인권 포켓북(경찰청, 2020), 현장이야기, 인권이야기 참조-사례와 해설이 담겨 있음>

**Q. 인권적이라는 것, 나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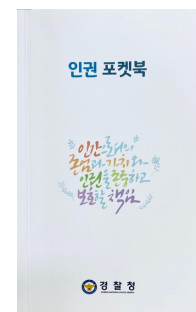
**Q. 인권과 인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Q. 인권은 왜 늘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하는가?**

**Q. 인권보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가?**

**Q. 범죄자의 인권 왜 보장해야 하는가?**

**Q. 경찰의 선한 의도는 인권침해를 면하는가?**



### 활동하기

▶ 국가의 인권보장 3대 책무의 내용에 자신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활동해 봅시다.

#### 유엔의 국가(및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3대 책무	가치	내용	
존중(respect)	자유의 보호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한 <b>인권침해 금지와 예방</b> - 국가가 시민(개인)의 인권보장의 책무자로서 시민(개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할 의무	
		경 찰 업 무	
보호(protect)	반차별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b>인권침해 예방과 구제</b> - 사인(개인, 집단, 기업 등)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개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경 찰 업 무	
실현(fulfill)	기본적 생존(인간다운 삶) 평등 연대	<b>기본적인 생존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수준 보장, 주체의 역량 강화, 공동체의 인권의식 증진</b> - 국가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의 인권실현과 증진을 위해 각종 조치들, 예컨대 법률적, 행정적, 예산적 그리고 사법적 대책을 취할 의무	
		경 찰 업 무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보고서」, (법무부, 2022), 28쪽

2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1

**학습안내**

- ▶ 경찰 업무 현장에서 문제되곤 하는 사례 속 인권적 쟁점을 이해합니다.
- ▶ 사례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원칙의 방향을 이해하고 업무 사안에 적용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학습하기**

- ▶ 본 차시는 학습자들이 사례 안에 연결된 인권의 쟁점을 직접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 학습이 일어나도록 구성합니다.
- ▶ 인권의 가치와 원칙의 틀에서의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합니다.
- ▶ 학습자들이 오해하거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점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 둡니다. 학습자가 인권적 기준을 찾고 그 기준을 방향타 삼아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생각의 전환을 끌어낼 수 있는 추가 질문 등을 준비해 두면 유용합니다.
- ▶ 주의점 : 사례 나열식 강의는 사례 안 인권적 쟁점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나열식 강의는 오히려 인권을 무언가를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문제(금지가이드 라인)라는 식으로 왜곡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합니다.

(1) 내사,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사와 수사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고, 경찰 현장에서는 진정·접수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처리하느라 내사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일부 내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내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현장 경찰관 적합성 자문).

**Q. 내사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

사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는 ○○○법 위반 혐의로 2015~2021년까지 약 6년간 내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2017년 A의 SNS와 메일 등을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종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사를 지속하였다.</li> </ul>
확인할 인권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차례의 수사 후 혐의가 없었음에도 근거 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li> </ul>

인권적 분석을 위한 질문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한 것일까요? 아니면 침해한 것일까요? 2) 우리 조직(경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혹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참고	•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27-29쪽 참고

**(2) 불심검문, 무엇이 문제이길래?**

사실 요즘은 불심검문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찰의 업무 상황도 인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불과 10년 전에는 종종 불심검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증진되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찰관들도 자칫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심검문에 신중합니다. 무분별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긴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장 경찰관 적합성 자문).

**Q. 불심검문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

사건 소개	• 택시를 타고 출장지를 향하던 회사원, △△△ 근처를 산책하던 시민, ○○ 부근에 사는 주민은 ○○ 근처를 지나가다 불심검문을 받았다. 경찰관들은 검문 목적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설명하였다. 경찰관들은 중간에 성명, 검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행선지를 묻고, 가방 내부를 보여 달라 요청하였다.
확인할 인권적 기준	• 불심검문은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심검문 역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만큼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들이 자칫 인권침해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적성, 범위와 정도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적 분석을 위한 질문	1) 위 사례에서 불심검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2)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심검문을 진행한다고 할 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 절차 및 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혹은 불심검문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고	•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29-31쪽 참고

**(3) 중복집회, 무엇이 문제이길래?**

“사실, 축제 당일까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혹시라도 있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걱정때문이었죠.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질서유지 업무를 진행해 주신 저희 지역 관할 경찰관분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 국가가 있구나’ 하고 정말 나를 지켜주는 국가의 존재를 느낀 날이었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여했던 한 엘라이(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함께 하는 비성소수를 부르는 말)의 진술)

Q.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p>사건 소개</p>	<p>• 진정인들은 2018. 5. 24. '제△△회 ○○퀴어문화축제' 개최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반대대책본부는 위 집회 개최일, 위 집회 장소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p>
<p>확인할 인권적 기준</p>	<p>• 국가는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대 시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p>
<p>인권적 분석을 위한 질문</p>	<p>1)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찰은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양측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경비 대책 수립과 이를 위해 경찰 인원을 두는 등 실질적인 대비를 하였다. 비록 당일 반대단체의 돌발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여 행사에 차질이 생겼으나, 경찰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다수에 의해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등 권리 실현을 위하여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2)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3)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포함한 모든 사람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p>
<p>참고</p>	<p style="text-align: center;">“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p> <p>피진정인들은 2018. 12. 27., 2019. 1. 3. 진정인 측과 향후 ○○퀴어문화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경찰의 역할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략…)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규정하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근본 요소로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결정 참조).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2016. 6. 15.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집단 중 성소수자들도 집회에 참가하는데 있어 반대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하고, 집회 반대자들도 집회를 할 권리는 있으나 다른 집회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저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 신고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산발적이고 조직적인 집회 방해는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급기야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시위경로 점거행위로 인해 당초 예정된 행진 경로로 시위 행진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는 등 진정인 등이 본래 예정한 대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관할 경찰이 2014년 이후 반복되어 온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와 충돌을 예측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에도, 합법적인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할 정도의 방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성소수자, 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그에 따른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p>

	<p>따라서 국가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p> <p>「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9), 6-7쪽.</p>
--	---

(4) 강제집행, 무엇이 문제이길래?

Q. 강제집행,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건축을 반대하는 건물주와 재건축을 찬성하는 재건축조합의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80여 명이 각목을 들고 건물의 기물을 파손하고 주민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하였다. 현장에 있던 주민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인근 경찰서 경비과는 이를 주시하고 있었고,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였다.</li> </ul>
확인할 인권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고,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했다. 국가의 책무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상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와 제2조와 연결해보자.</li> </ul>
인권적 분석을 위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의 상황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분화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li> </ul>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55-56쪽 참고</li> </ul>

### 3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2

#### 학습안내

- ▶ 경찰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모습이 시민이 있습니다. 이 중 현직 경찰관들이 인권교육에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야기, 특히 정신장애인, 노숙인의 인권 이야기로 구성하였습니다.
- ▶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한 이야기 안에는 여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차시는 주제 자체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자칫 인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시민뿐만 아니라 업무자의 인권까지 위협하는 것이 되곤 합니다. 본 프로그램이 이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학습하기

##### (1) 정신장애인 인권 이야기

- ▶ 조현병 등 경찰관이 업무 현장에서 만났을 경우 어려워하는 시민 군상의 특성을 이해하여 인권옹호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돕도록 구성합니다.

##### ●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보다는 '정신장애인'으로 호명

- ▶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정신장애인'으로 부르지, '정신질환자'로 부르는 의학·법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법적 정의는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증증도가 심한 사람을 의미하며,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로 인정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중복 또는 포함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더 적합한 개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질환’이라고 할 경우 의료적 치료를 통한 정상화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정신적 어려움을 ‘장애’이라고 할 경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억압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의 개념이 ‘개별적 장애모델’에서 ‘사회적 장애모델’로 변화·발전해온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 장애의 개념의 ‘개별적 장애 모델’과 ‘사회적 장애 모델’

‘개별적 장애 모델’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보고, 장애를 개인적 비극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이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손상의 제거 또는 극복을 위한 치료와 강화가 됩니다. ‘개별적 장애 모델’에서는 장애인은 주로 사회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치료되고, 다뤄지고, 변화되고 개선되어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사회적 억압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갖추지 못한 데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장애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실패를 의미하며 장애에 대한 책임 역시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2014, 34-37쪽.


- ▶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보다는 '정신장애인'이라고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교육의 방향성

- + 정신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보호·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과 권리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 + 정신장애를 이해함에 있어 장애의 개념을 '개별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 + 정신장애인의 행동적 특성을 이해
  - 정신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오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신장애인의 '이상해 보이는 행동'은 정신장애인의 독특한 감정과 감각 등에 의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자기 보호행동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무턱대고 그에 대해 제재하기 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나누도록 합니다.(논리적 설득이나 교정보다 보다는 메커니즘의 이해와 필요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는 지지의 메시지 보내기)
  -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관련 자료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는 것도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 당사자를 초청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방법, 유튜브 등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 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경찰의 업무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 소개
  - 「장애인 수사 매뉴얼」 등 경찰 내에 있는 장애인 지원 규정이나 절차를 소개하고 이를 숙지합니다.
  - 정신장애인의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 +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나 절차의 실효성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경찰 내부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을 고민해 봅니다.

- ▶ 장애인 수사와 관련한 실제 사례(인권침해 사례 또는 선 사례 모두 가능)를 분석하여 현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 봅니다.
- +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나 절차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 응급입원제도는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큰 사람을 최장 72시간까지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필요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운용에 있어,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응급입원과 관련해 주요한 인권적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중요한 인권으로서 자신의 신체, 라이프스타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됩니다. 정신장애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지는 응급입원의 경우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리**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침해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즉 신체의 안전성과 신체 활동의 임의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는 반드시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에 의해서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응급입원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 ▶ 응급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과하게 우려하여 이 조항의 해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할 경우 즉,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응급입원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응급입원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의 제한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일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일지는 일괄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응급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그 시점의 상황과 여건, 맥락을 고려해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1차시 인권과 경찰, 5.경찰 업무의 인권적 이해 참조)
- ▶ 경찰관 개인이 응급입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인권침해로 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발, 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전담인력의 확충 및 배치, 정신장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 ▶ 정신장애인 인권교육에서 응급입원과 관련 사례를 다룰 경우, 해당 사례의 결론(해당 사례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는가? 인권침해였는가?)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과 그 근거 논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응급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다면, 인권침해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제도나 시스템의 문제)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정신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차별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경찰의 원활한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하여, 2015년에 「장애인 수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장애의 개념, 장애인 조사 시 유의사항, 장애유형별 조사가이드, 장애인 수사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업무 관련 규정 등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수사 시 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장애인 수사 매뉴얼』 주요내용 중 장애유형별 조사 가이드(정신장애인 부분)

① 소환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조사대상 장애인의 특성 및 진술능력 등을 미리 파악
- 수면시간, 약 복용 여부 등 정신장애인의 컨디션에 따른 출석시간 고려
- 신뢰관계자가 함께 출석하도록 조치

② 조사시 유의 사항

- 의사소통조력인 참여권 고지
-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고 신뢰관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조사
- 영상녹화제도를 적극 활용
- 환청·환상·망상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진술에 대한 선입견 갖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지난친 다그침, 압박 금지)
- 이상행동 발생 시 장애인이 소지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끊임없이 말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생일이나 이름을 물어 상황을 전환시키고 불안증세로 발작이 있을 경우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 후 재조사 실시

- ▶ 장애인 조사시 공통 유의사항과 장애유형별 조사 가이드 중 정신장애인 부분을 참고하여 수사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신장애인의 성별,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하기**

- ▶ 응급입원 또는 정신장애인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침, 매뉴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각 규범과 연관된 인권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 ▶ 해당 규범들이 해당 규범과 연관된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에 따라 점검해보도록 합니다.
- ▶ 적합하지 않은 규범들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 ▶ 해당 규범들을 경찰 업무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스템은 무엇인지 찾아 봅니다.
- ▶ 도출된 제안 사항을 정리해 제도개선 창구와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 효능감을 높이도록 합니다.

**<활동지>**

<b>관련 규범</b>		
<b>규범과 연관된 인권</b>		
<b>점검결과</b>		
<b>과잉금지 원칙</b>	<b>목적의 정당성</b>	
	<b>수단의 적합성</b>	
	<b>침해의 최소성</b>	
	<b>목적의 정당성</b>	
	<b>수단의 적합성</b>	
	<b>침해의 최소성</b>	


**TIP** 일선 업무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만났을 때, 정신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 해야하는가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의 정신장애인 인권교육의 일부를 참고해 구성한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의 환청과 망상

### 환청과 망상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만났을 때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환청, 망상 등 정신장애인의 주요 증상은 허구가 아니라,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환청과 망상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 증상을 물어보거나 환청, 망상임을 알려주려 하기 보다는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 정신장애인과 의사소통 하기

##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태도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정신장애인 역시 그런 다양한 사람 중에 한명임을 이해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신장애인을 존중해주세요

정신장애인이 신뢰하는 가족, 사회복지사, 이웃 등 조력인이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편안해 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신장애인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부른 조언 보다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존중해주세요

### 정신장애인과 의사소통 하기

##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

각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정신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제공하도록 합니다.

1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오 할때	해당 증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고통을 견뎌온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표현
2	질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이어질 때	어느정도 경청 후 짧은 질문으로 방향을 전환
3	너무 장황한 이야기나 부적절한 요구	들어줄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함
4	긴장이 되어있을 때	나의 경우는 이리한데 어떠세요?라고 물으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
5	의사표현이 거의 되지 않을 때	지적장애, 치매, 뇌손상 등의 요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매우 명료하고 짧은 질문을 사용

## (2) 노숙인 인권 이야기

▶ 노숙인의 개념을 확인하고 제시된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에서 노숙인을 배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 앞의 1차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숙인 역시 당연히 국가에 의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히려 여러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인 만큼 그 인권 보호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이라는 점에서 업무 현장의 고민을 나눠 봅시다.

● **경찰관이 알아야 할 우리 사회 인권 문제 :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배제**

① **노숙인의 개념**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숙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노숙인의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별, 기관별로 그 기준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도 노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IMF 경제위기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오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랑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부랑자’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만 생각하고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늘어난 ‘노숙인’을 보며 그들이 개인적 결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보통의 사람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났고 노숙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숙인 부분 참조)

② **노숙인의 인권 이슈 : 제도와 인프라 확보 필요**

**관련 기사 1. 전국 유일의 노숙인 전담 경찰관 “노숙인도 국민의 한사람”**

서울역 파출소 소속인 ‘노숙인 전담경찰관’인 그의 하루는 간밤 노숙인의 상태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체온을 체크하고 손이 차가운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밤새 체온이 내려갔으면 건강 이상 신호니 바로 다시서기센터나  
응급일 경우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이렇게 노숙인의 상태를 살피는 일을 하루에도 몇 차례 해야 한다. 그가 부임한 이후는 줄곧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노숙인들에 대한 선별 진료를 먼저 제안했고 1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찾을 수 있었다. 백신 미접종한 노숙인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모두가 꺼리는 노숙인 전담경찰관,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원칙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숙인분들도 국민의 한 일부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길에서 아프시고 쓰러져 계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

JTBC뉴스(2021.7.11),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2022.01.20. <https://smartsmpa.tistory.com/7165>

우리동네 경찰서 (남대문) 가장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 관련 기사 2. 영등포역 노숙인 전담 경찰관 ‘노반장’의 2년간 공백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들을 보듬어 주던 ‘노반장(노숙인 반장)’이 사라졌다. 11년 동안 노반장 역할을 자처했던 경찰관이 명예퇴직했으나, 이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경찰관이 없기 때문이다. 관할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숙인 관련 민원·신고도 노숙인 전담 경찰이 해결했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임자는 없는 상황이다. 업무가 고되고 인센티브도 없다 보니 희망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역파출소에서 노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경찰관은 “노숙인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일반 민원인보다 대응이 어렵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2.4.6)

✦ 관련 기사 1.은 국가의 인권보장 시스템이 부족한 가운데 인권적 사명감으로 무장된 경찰관 개인의 헌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인권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 2.는 그러한 경찰관 개인이 없을 경우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이행 공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두 기사를 보면서 인권 보장이란 것이 인권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즉 시스템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 ✦ 활용할 주요 질문들

- 시스템 공백으로 인한 인권 피해 발생에 대한 진정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 ▶ 인권 피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때, 우리 경찰관 역시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시스템 부재가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봅니다. 결국 시스템의 공백은 경찰관 개인의 희생으로 채워지게 되고, 반면 그렇지 못하여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경찰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됩

니다.

- ▶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시스템의 공백을 채울 때 극복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시민과 경찰의 인권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 ③ 노숙인의 인권 이슈2 : 규범 확보의 필요성

#### 사회안전망의 부실, 거리 노숙인이 받는 소외

**노숙인 사망 사건** : 2011년 1월 서울역에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술에 취한 노숙인을 역 직원과 공익요원이 혹한에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 밖으로 이동시킨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노숙인 사망 사건 판결문 중에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의 마지막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노숙자였던 망인은 이승에서의 마지막인 이날 참으로 고달픈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성치 않은 몸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를 타인에 의해 부축을 당하거나 휠체어에 실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차가운 곳에 버려져 이승을 하직하였으니, 그 심신의 피로가 오죽했을까 싶다. (...중략...)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 갈지도 모르겠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도 함께 계속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민을 남긴 채로 먼 길을 가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법률신문 (2011.2.17.) 대법원 판결기사 [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8408](http://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8408)  
 일요신문 (2011.2.28.) [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4](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4)

- ▶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사건이 벌어진 그해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숙인 관련 시설은 물론 경찰과 소방 등에도 응급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1.6.7.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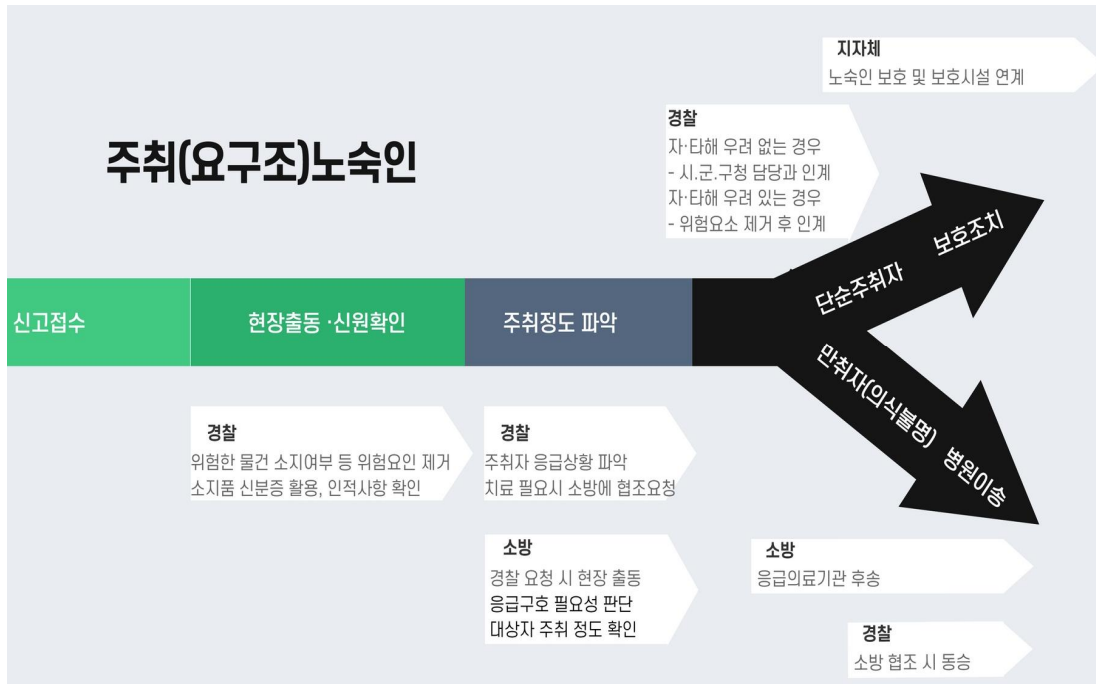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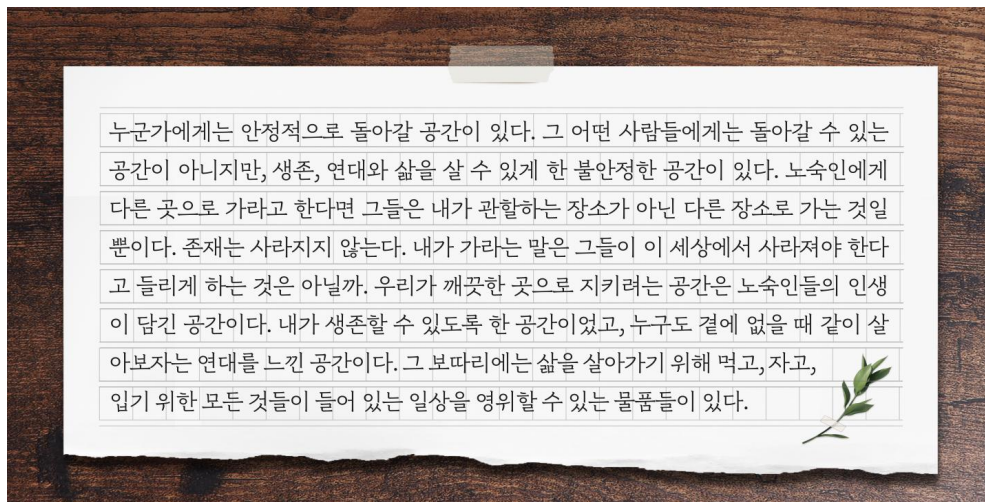
**+ 활용할 주요 질문들**

- 노숙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험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없지만 지방청에서 만든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함께 필요한 대응 체계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TIP** 직접 경험한 노숙인과의 사례 혹은 노숙인에 대한 민원 경험을 나누어보며 노숙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근거 없는 '유령' 같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 우리 안에서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편견과 차별은 혐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사람'인 동료 시민의 '존엄성'을 삼켜버리곤 하는 유령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2018),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교장용』, (교육부, 2021) 217-222쪽의 '혐오 발생의 배경과 구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및 자료**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2022.01.20. 우리동네 경찰서 (남대문) 가장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https://smartsmpa.tistory.com/7165>

내일신문 2021.12.1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8112](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8112)

2021.06.20.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879>

2021.07.11. JTBC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0875?sid=001>

**(3) 이주민 인권 이야기**

- ▶ 영화, 도서, 웹툰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래 두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 ▶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박찬욱, 2003, 12세 이상, 27분)
- ▶ 도서 「어떤 호소의 말들」, (최은숙, 2022)

● 경찰관이 알아야 할 우리 사회 인권 문제 : 영화와 책을 통해 본 이주민 인권

나이지리아인 M 이야기

K가 고물상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자신을 같이 일하던 M으로 속이고, M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경찰들은 M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였고, K는 그 사이 도주해버렸다. M은 경찰과 교도관에게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행위를 소란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구치소에서는 M이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팔과 다리를 포박하고, 투구 모양의 장비를 얼굴에 씌웠다. 또한, M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작성한 반성문까지 있었다. M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한다.

이후 영장 집행을 결정했던 검사는 인권위에 '당직 검사는 통상 구속되는 피의자를 일일이 대면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결정한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인권위원회 조사관은 M과 만나 조사를 진행할 때 그의 몸짓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M의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문화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자신 속의 편견과 선입견을 확인했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M과 마지막 만남에서 M은 조사관에게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신이 너희와 함께 하길 빌게."라는 말을 전했다.

'신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다', 「어떤 호소의 말들」, (최은숙, 2022), 51~54쪽

- ▶ 함께 보는 인권영화는 기본적으로 함께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 이때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자신과 연결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보는 인권영화'의 주요 진행과정과 질문거리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 진행과정

- 영화를 보기 전에 인권교육의 목적과 영화의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의 경우 교육참여자들이 미리 책을 읽어온다면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학습시간을 풍부하게 합니다.
- 토론의 내용을 패들릿(padlet.com)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공유합니다.
- 진행자는 영화에서 인권적 해석이 필요한 장면과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도 좋습니다.
- 참여자와 연관된 정책과 제도의 구조와 한계, 대안 등을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 + 활용할 주요 질문들

- 위 사례에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과 관련한 법률이나 업무 매뉴얼, 지침 등이 있나요?
- 해당 법률, 매뉴얼, 지침 등이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가요?
- 해당 법률, 매뉴얼, 지침 등이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나요?
- 경찰 업무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TIP**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인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검사에게 적법한 서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책무를 명시했을 것입니다. 검사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기에 자신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집행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말끔히 끝날 문제인가 되짚어 보게 합니다. 검사에게는 이러한 항변으로 자신의 과오가 아님을 밝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당사자에게 이 일은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당락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갇혀진 공간에서 말은 통하지 않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사람도 없다면 그 당혹감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검사의 항변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여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일까요?

그렇기에 법의 테두리에서만 인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은숙은 법은 그 속성 자체로 그물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 그물망 사이에 빠져 나오는 것을 메꾸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즉,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이 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은 결국 국가를 대리해 인권 보장의 책무를 실현하는 업무자인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TIP** 찬드라와 나이지리아인 M의 이야기에서 놓쳐진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는 이러한 노력을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겠지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무게감 있는 이 표현에는,  
 그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상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내가 나뉠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는 것처럼  
 그도 세상을 보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삶의 격』, 피터비에리, 문항심 옮김, 2018, 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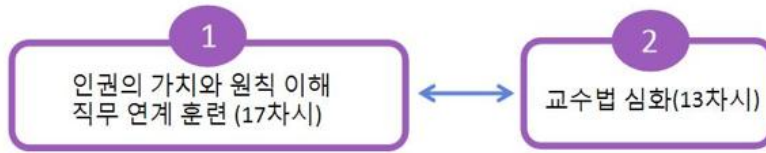
### 3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 가. 훈련가과정 개요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대상** | 경찰 인권강사 30명 기준
- 교육 시간** | 30차시, 32시간(오리엔테이션 포함)
  - 한 차시당 60분으로 구성하였고 총 30차시로 구성하였다.
  - 위 30차시와 별도로 오리엔테이션 2시간 진행도 구성하였다.
- 교육 목표** | 경찰 인권강사의 인권역량 강화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립하고, 교수역량을 증진하여 인권강사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확립하고, 경찰의 사회적 의미가 시민의 인권보장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교육을 설계, 인권교육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시연하여 인권교육가로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내용** |
  - 인권의 이해
  - 경찰과 인권
  - 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사례 적용
  - 인권의 개념 다지기
  - 교수법
  - 실습과 시연
- 교육 구조** | [대모듈1: 인권의 가치와 원칙 이해 및 직무 연계 훈련]-[대모듈2:교수법 심화]로 진행된다. 인권의 가치와 원칙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연계 훈련을 기본으로 하여 인권교육

가로서 역할을 파악하고 교육 설계와 인권교육 방법론을 익혀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7]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구조

- **교육 방법** | 주요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교육 방법론을 실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나.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교육 참여자	• 경찰 인권교육 내부 강사	
학습차시 및 시간	• 30차시, 32시간	
주요 내용	• 인권의 이해 • 경찰과 인권 • 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사례 적용 • 인권의 개념 다지기 • 교수법 • 실습과 시연	
차시	내용	비고
OT	- 인권교육 활동의 의미와 역할 (기초) - 아이스 브레이킹 : 참여자 인사 나누기 나눔	2시간
<b>대모듈 1) 인권의 가치와 원칙 이해 및 직무 연계 훈련</b>		
인권의 이해		
학습내용 1	<b>인권의 개념과 구조</b> - 인권의 주체 : 모든 사람 - 인권보장의 궁극적 의무자 : 국가 - 모든 권리주장이 인권인가 - 인권과 인권은 충돌하는가	기본과정 1차시 『인권과 경찰』 (1)-(4) 참조

차시	내용	비고
학습내용 2	<b>인권의 특성</b> - 불가분성, 상호존성, 자유와 평등의 유기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발전권)	
<b>경찰과 인권</b>		
학습내용 3	<b>경찰 업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이해</b>	기본과정 (5) 참조
학습내용 4	<b>경찰의 역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와 인권</b>	
<b>경찰관이 알아야 할 우리 사회 인권 문제</b>		
학습내용 5	<b>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이해 일반</b>	예시안 제공
학습내용 6	<b>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1</b> - 장애, 성소수자, 노동, 노인, 이주, 여성, 아동청소년, 노숙인 등에서 의제를 선택	기본과정 2차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2』 참조
학습내용 7	<b>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2</b> - 장애, 성소수자, 노동, 노인, 이주, 여성, 아동청소년, 노숙인 등에서 의제를 선택	
학습내용 8	<b>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3</b> - 장애, 성소수자, 노동, 노인, 이주, 여성, 아동청소년, 노숙인 등에서 의제를 선택	
<b>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사례 적용</b>		
학습내용 9	국내외 인권보장체계 이해 및 경찰 인권 보장체계 이해 * 실제 사례 포함	
학습내용 10-14	<b>경찰 관련 사례 분석 토의 프로그램</b> - 경찰 현장에서 인권적으로 고민되는 사례를 함께 모아 토의 테이블에 올려 봅시다. <b>1단계&gt; 사건의 내용 이해</b> ※ 유의점 1. 토의를 위한 사례이므로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 팩트 체크에 천착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학습자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인권적 쟁점에 대한 훈련을 위한 사례 선정인 만큼 실제 사안의 팩트에 천착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b>2단계&gt; 어떤 인권이 문제되는가?</b> - 신체의 자유, 안전권, 인격권,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인권의 내용을 찾아 봅시다. <b>3단계&gt; 인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가?</b> - 인권 제한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본과정 2차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1』 참조

차시	내용	비고
	<p><b>4단계&gt; 제한의 방법과 정도는 적정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을까?</li> <li>-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p>※ 유의점 2. 결정례 등 이후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가 인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시민의 인권 보호에 더 적합한 방향의 변화였는데, 현장에서의 실질적 구동을 위한 조건 등은 무엇인지를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p> <p>☞ 경찰 인권 메커니즘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에 활용</p> <p>예시&gt; 뒷수갑 사용 관련 결정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의 뒷수갑 사용은 왜 반복되는가?</li> </ul> <p>1) 어떤 인권이 문제되나 2) 어떤 상황인가 3) 인권 침해 위험성-문제점 인식하기 : 인권 제한의 한계 훈련 4) 반복적 위험성에 대한 대안 모색</p>	
인권의 개념 다지기		
학습내용 15-17	<p><b>‘인권 입문’에서 에세이로 정리해 발표 및 피드백</b></p> <p>&lt;주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업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li> <li>- 경찰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li> </ul>	
<p><b>대모듈2) 교수법으로 심화</b></p> <p><b>** 페다고지(교수법)-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결합</b></p>		
교수법		
학습내용 18-19	<p><b>인권교육 교수법 : 축진의 기술(러닝 퍼실리테이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토론 실습 등과 연계하며 진행자로서의 유의점 등 매뉴얼 숙지</li> </ul>	
학습내용 20-22	<p><b>인권교육의 구조 설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보고서 IV. 「공무원 인권교육 방향과 구성」 참조</li> <li>: 인권의 이해 + 직무의 인권적 이해</li> <li>+ 직무연계 + 환류체계(인권보장체계 연계)</li> </ul>	
학습내용 23-25	<p><b>인권교육의 질문 설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들여다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 설계 훈련</li> </ul>	『인권교육 새로고침』 참조
실습과 시연		
학습내용 26-30	<p><b>개인별 시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시강과 전체 피드백을 통한 학습적 효과 견인</li> </ul>	동료 피드백지 작성 과제 결합

## 경찰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예시안

### 예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일반

▶ 다음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을 참고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를 설계할 수 있다.

- + 교육 목표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차시 | 1차시(1-2시간)
- + 주요 내용 | 차이와 차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의 구조  
                   합리적 차별, 실질적 평등

#### 훈련가과정 학습내용 5: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공부할 내용	차이와 차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의 구조	합리적 차별, 실질적 평등
이야기로 시작해요!	<p>☆ 업무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달았을 때는?</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height: 40px; margin: 10px 0;"></div> <p>※ 온라인 툴인 패들렛(<a href="https://padlet.com">https://padlet.com</a>)을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만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참여자들이 업무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p> <p>교육 참여자들을 비난하거나 반성을 하게 만들려는 활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 보고, 나는 왜 그랬는지, 우리 조직 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p> <p>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희화화, 대상화, 타자화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p>			
개념을 이해해요!	<p><b>1. 차이와 차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알아볼까요?</b></p> <p>&lt;차이와 차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 본다면 그 누구도 같지 않으며, 한 사람은 유일무이의 고유한 존재이다. 차이는 '서로 다름'이라는 중립적 개념이다. 따라서 차이의 개념에는 어떠한 가치적 위계도 없다. 개별 존재의 특성은 존재 자체의 양태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한다’는 말로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우리가 같다 혹은 다르다로 구별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기준일 뿐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다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차별은 차이와 대비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계화한 것 의미로 통용된다.</li> </ul> <p>“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그 자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차별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마땅한 한 두 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 124쪽.</p> <p>〈사회적 약자와 소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딱 나누어 구분되지 않지만, 다르다. 사회적 약자는 시민권 내에서 권력의 비대칭성에 비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소수자는 시민권 밖으로 내던져져 지워진(혹은 지우려 노력하는) 존재라 정의할 수 있다. 시민권 보장의 정도가 취약한 것과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정되는 것은 다르다. 사회적 약자는 차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가 되지만, 소수자는 그 사람에게 내재된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li> <li>•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 정책은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있지만, 소수자의 경우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inclusion)’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li> </ul>
<p>생각의 폭을 넓혀요!</p>	<p><b>2. 왜 우리는 차별에 대해 논의하는가?</b></p> <p>〈모든 사람은 존엄하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세계인권선언〉</p> <p>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조건, 능력, 정체성, 환경, 경우에 따라 구분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누구도 인간을 수단화할 수는 없다. 차별의 해악은 차별하는 사람도, 차별 당하는 사람도 대상화, 수단화시키는 데에 있다.</li> </ul> <p>※ 자세한 내용은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교장용」, (교육부, 2021) 217-222쪽의 ‘혐오 발생의 배경과 구조’ 참고.</p> <p>〈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대한민국헌법〉</p> <p>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그 자체로 위계화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합리적 차별은 인권침해</li> </ul>

가 아니다.

-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차별 행위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인가로 구분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수단화, 인권의 가치를 반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인권 보편성과 평등을 지켜내기 위함이라면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목적과 기준인지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합리적 차별은 합리적 차별은 실질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을 평등이라 말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차별적이라면 그것을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반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활용할 만한 영상〉

Apple, “The Greatest | Apple”, 2022. (2분 20초)

<https://youtu.be/8sX9IEHWRJ8>

본 영상에서 기술발전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 영상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자막’을 켜고, ‘설정(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 ‘자동 번역’한국어 자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고, 영상에 나오는 글자는 영어이므로 강사가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일으키는 구조〉

〈차별의 확대·재생산 구조〉

차별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우리는 어떠한 함정에 빠져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심지어 혐오의 상황에까지 치달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양산되는 토양을 분석해야, 함정에 빠져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과 혐오가 싹 트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차별과 혐오가 배양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학습의 산물(경험치)인 ‘경멸’을 선형적인 도덕 감정인 양 ‘증오’로 변환·통합시키고, \*\*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힘(=경멸)에 따르는 혐오자의 도덕적 주저까지도 말끔히 세탁 해준다. (\*\* 다른 것/낮선 것/싫은 것/역겨운 것을 부정한 것/틀린 것/잘못된 것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결국 어떤 정체성(장애, 여성, 이주민 등)에 규범적 가치를 덧씌우는 것이다. 즉 다름에 불과한 차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부여하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둘째, 이로 인해 권력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이나 사람을 피해자(집단)인 양 착란시킨다.

	<p>셋째, 혐오가 주로 경멸보다는 증오로 발현됨으로 인해 한층 더 집요하고 적대적·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한다.</p> <p>넷째, 이 과정을 통해 정작 권력관계나 차별 구조는 은폐되고 혐오에 반대하는 인권 투쟁은 고작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민민민민 갈등' 쯤으로 간주된다. 인권 보장 요구가 고작 어느 한쪽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p> <p>다섯째, 여기에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인권 보장의 책무자인 국가(권력)가 점잖은 갈등의 '중재자', '심판자'로 개입하여 마치 공공적 사명을 다하는 양 행세한다.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는 '사회적 합의'의 이름 아래 늘 유보되거나 감춰진다. 그로 인해 사회적 합의 자체가 이미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은폐된다.</p> <p>여섯째, '국가의 책무' 자리에 '개인적 덕성과 품성'이 대신 자리 잡게 한다. 요컨대 인권을 '역지사지' 또는 '상호 존중', '존중과 배려'로 왜곡하는 것이다.</p> <p>이렇게 되면 인권에서 핵심적 문제인 권력의 차이가 망각되고 만다. '각인의 상호 존중 의무'로 자유가 보호되고, '각인의 역지사지 의무'로 평등이 증진되며, '각인의 상호 배려 의무'로 연대가 실현된다는, 이른바 근대 이후 사회계약에 의해 확보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가 실종되고 마는 실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즉 사회계약의 원리는 행방불명되고 만다.</p> <p>이로써 인권 보장의 책무가 영동하게도 개인의 품성에 전가된다. 결국 혐오의 진앙지가 숨겨지거나 왜곡될 뿐만 아니라,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해야 할 책무자는 실종되고 만다.</p> <p>이에 따라 가해자는 당당하고 억울하지만, 피해자는 염치없고 죄송하며 불순하다는 식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피해자 귀책론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역지사지, 상호 존중, 배려와 존중의 강조는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이며, 인권의 궁극적인 보장의무자는 국가라는 인권의 본질적, 개념적 구조를 무너뜨린다.</p> <p>이런 식의 반응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만큼이나 위험하다. 개인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셈이기 때문이다.</p> <p>다시 말하지만, 혐오는 역지사지, 상호 존중, 배려와 존중 같은 개인 품성(인성)에 흠결이 있어서 발생하고 발호하는 게 아니다. 권력관계가 조장하는 차별이 고착화할수록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계급적 불만을 민민민민 투쟁으로 전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호하는 것이다.</p> <p>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혐오자 역시 동원된, 소외된, 휘둘린 사람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역량 부족이 무지와 야만, 편견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차별적 권력관계가 혐오의 필요조건이라면, 무지와 편견은 혐오의 충분조건이다. 권력관계와 무지와 편견은 오늘 누가 온전시키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교장용』, (교육부, 2021), 220-221쪽</p> <p><b>&lt;활용할 만한 영상&gt;</b>          씨네포유 cine4u, "ENG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길 바라면 만든 디즈니 단편 애니메이션 플롯 'Float'", 2021. (4분 26초)  <a href="https://youtu.be/Jg1a2QkSkos">https://youtu.be/Jg1a2QkSkos</a></p>
<p>함께 이야기 나누어요!</p>	<p><b>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실질적 평등에 대해 논의해봅시다.</b></p> <p>다음에 제시한 방향을 참고하여 나의 업무에서 만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우리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불합리한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업무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무엇이 있나요?</li> <li>• 차별을 두는 목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li> <li>• 목적과 기준은 합리적인가요(목적과 기준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함인가요)?</li> <li>• 이 차별이 합리적/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li> <li>•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어떠한 지점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li> </ul>
<p>참고자료</p>	<p>&lt;자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 에듀니티, 2021)</li> </ul> <p>&lt;도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2018)</li> <li>•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2015)</li> <li>• ‘인종주의라는 바이러스’(이향규),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미류 외, 2021)</li> </ul> <p>&lt;영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lt;학교 가는 길&gt;(김정인, 2021)</li> <li>• 성소수자: &lt;너에게 가는 길&gt;(변규리, 2021)</li> <li>• 젠더: &lt;세상을 바꾼 변호인&gt;(미미 리더, 2019)</li> </ul>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III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 III

##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 1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기본과정/훈련가과정)은 교육 시간과 교육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가. 기본과정 운영 방법

- 1차시 구성시, 4회차 중에서 학습자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운영한다.
- 각 차시들은 연계성을 갖지만, 분기당 1회 훈련에 맞게 독립적으로 강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차시별로 제공된 토의 활동은 교육 시간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한다. 특히 토의 활동은 인권 문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참여자들 간 의견을 공유하고 강사의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며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적 관점에 대해 익힌다.

### 나. 훈련가과정 운영 방법

- 훈련가과정은 인권의 개념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교수법 훈련을 함께 구성한다.
- 특히, 인권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교육 방법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학습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교육 수준을 선정하고, 강의별 강사와 협의하여 교육 내용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
- 오리엔테이션이나 팀빌딩 등을 통해 정서적 화합과 강사양성 과정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훈련가과정에는 인권사례의 인권적 관점과 지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실제 교육 현장을 염두에 두고 실습과 시연 과정을 포함하여 직접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로 소통해보며 교수 감각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 다.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 ▶ 활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퍼실리테이터로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본 프로그램의 활동지는 강사의 퍼실리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구안 되었다.
- ▶ 사례 토의 진행방법
  - 사례 토의 수업의 경우 진행자인 교수자의 역량(인권 이해 역량+퍼실리테이터 역량)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 ▶ ① 토의식 수업 진행의 틀(질문 설정의 방법과 토의 방향 가이드)
  - ▶ ② 토의식 수업 진행에 참조할 자료와 기초 인권콘텐츠 지원

## 2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 ☞ 수요조사 분석 결과 주요 반영할 사항

〈1〉 목표 및 내용 : 군대의 인권적 의미 및 장병 인권사례

〈2〉 방법 : 토론식 수업 진행

- 특히 군인 인권에 대한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침해 사례 구별 훈련
- 군대 내에서 관행으로 받아들인 불편함 속 인권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 훈련

### 가. 기본과정 개요

군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대상** | 병(인권교관에 의해 진행되는 부대별 인권교육)
- **교육 시간** | 총 4차시(4시간)
- **교육 목표** | 군대의 인권적 의미 이해와 인권사례 토론을 통한 장병의 인권역량 강화
  -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군인의 임무수행이 국가안보 수호를 통한 인권 보장 실천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군대 내 모든 군인의 존엄성 확인과 그 확보를 위한 방향 도모해야 한다.
  - 군대의 인권적 의미와 군인의 역할 이해를 통해 군 장병 인권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
  - 특히, 군인 인권에 대한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권침해를 구별하고 관행으로 받아들인 불편함 속 인권적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 **교육 내용** |

**도 입** | '군대와 인권'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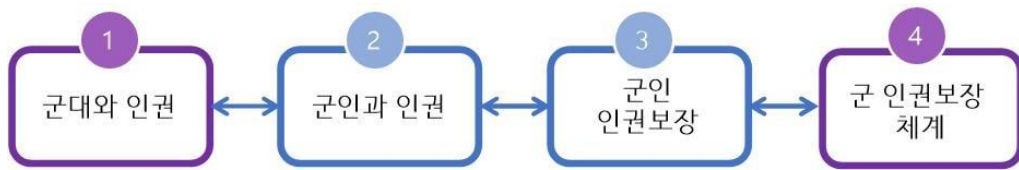
**중심 활동** | 군 생활 속 인권 사례 토의

**마 무 리** | 개선 방안 정리와 제안

- 군대와 인권

- 군인과 인권
- 군인 인권보장
- 군 인권보장체계

▶ **교육 구조** | [군대와 인권]-[군인과 인권]-[군인 인권보장]-[군 인권보장체계]로 전개되며, 군대의 교육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60분 단위 4개의 차시로 구성하였다(「군 인권업무훈령」상 1년에 4번(1시간 이상) 진행됨).



[그림 18]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구조

- ▶ **차시 구조** | 모든 차시는 군대의 존재 목적이 인권보장임을 확인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례 토의로 구성하였다.
  - 예) [도입] 군대와 인권 이해, [전개] 군 생활 속 인권사례 토의 활동, [마무리] 개선 방안 정리와 제안
- ▶ **교육 방법** | 주요 개념 이해와 인권교육 토의 활동으로 전개한다. 제시된 사례는 사례 토의를 끌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 군 인권 쟁점으로 구성된 예시이므로 부대의 필요에 맞는 사례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 나.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교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군인의 임무수행이 국가안보 수호를 통한 인권보장 실천이라는 사실을 이해</li> <li>• 모든 군인의 존엄성 확인과 그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li> </ul>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의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 : “군인정신은 인권으로 채워져야 한다”</li> <li>1. 군의 업무는 인권보장임을 이해(국가안보는 인간안보를 위한 방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능적 요청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사회적 요청으로서 군의 사명 이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li> </ul> </li> <li>2. 군 장병 인권보장의 의미와 작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사명을 임무로 하는 조직의 구성원인 군인 역시 기본적인 인권보장체계에 의한</li> </ul> </li> </ul>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	
차시	4차시, 4시간(차시당 1시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와 인권</li> <li>- 군인과 인권</li> <li>- 군인 인권보장</li> <li>- 군 인권보장체계</li> </ul>	
차시	내용	비고
<b>1차시. 군대와 인권</b>		
학습내용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적 관점이란 무엇인가?</li> <li>2. 군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권적 이해</li> <li>3. 군인 인권 보장</li> </ol>	
학습내용 2	<p>사례 토론 1: 휴식권 - 우리의 휴식권, 어떻게 하면 잘 보장될 수 있을까?</p> <p>사례 토론 2 : 우리 안에 혐오표현은 무엇이 있을까? - 다른 사람을 존엄한 존재를 보지 못하는 나는 존엄한 존재일까요?</p>	사례 1, 2 중에 선택
<b>2차시. 군인과 인권</b>		
학습내용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안보의 이해</li> <li>2. 한국 군대의 기원</li> <li>3. 시민의 군대</li> </ol>	
학습내용 2	<p>토론 :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p> <p>* &lt;학습내용1&gt; 시작 전에 교육참여자들의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하여 진행함.</p> <p>생각하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과 인권의 관계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해봅시다.</li> <li>2. 군에 복무하면서 일상적으로 존엄성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li> <li>3. 우리 부대는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봅시다.</li> </ol>	* 진행 순서: 토론 → 학습내용1 → 생각하기
<b>3차시. 군인 인권보장</b>		
학습내용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통한 군인 인권의 확인</li> <li>2. 「군인복무기본법」의 인권적 의미</li> <li>3. 「군인복무기본법」 적용해 보기</li> </ol>	
학습내용 2	<p>사례 토론 1: 간부들의 장병 생활관 출입은 「군인복무기본법」 제 13조에 규정된 군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까?</p> <p>사례 토론 2: 한 장병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경계 근무 열외를 요청하였지만, 다른 장병들은 평소 행실을 보건대 '피병'이 분명하다며 근무는 평등하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한 "건강을 유지"할 권리는 이 상황에서 어</p>	

차시	내용	비고
	뭇게 생각되어야 할까?	
4차시. 군 인권보장체계		
학습내용 1	1. 국방 인권정책의 역사-인권의 역사 2. 국방 인권정책의 이해	
학습내용 2	사례 토론1 : 휴대폰 사용(기본계획에 있는 내용) - 휴대폰 전면 금지 → 일과 후 휴대폰 사용 가능 → 현재는 24시간 휴대폰 사용하는 시범모델 운영 중 사례 토론 2: 군인권종합계획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 군대 내 인권의 중요한 이슈로 더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 군인 인권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세부안

### 1 군대와 인권

#### 학습안내

- ▶ 인권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 국가와 군대의 존재 이유를 알아봅니다.
- ▶ 군대는 국가 조직으로서 인권 실현의 가장 기초적 토대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지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군대가 시민의 군대임을 이해합니다. 안보의 개념이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 변화한 흐름과 군대와 인간안보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학습하기

##### (1) 인권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 ▶ 인권의 구조: 헌법 제10조를 통해 권리 향유의 주체는 시민, 인권보장 궁극적인 의무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권의 특성: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라는 보편성, 인권의 각 목록들은 전체로서 개별 권리로 분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불가분성, 인권 보장 실현을 위해 권리들은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인권의 특성: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44-45쪽 '보편성', 46-47쪽 '불가분성'. 인권의 특성: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119쪽.
  - 보편성: 인권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부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권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인권에 있어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바뀌지 않습니다(이준일, 2010, 『인권법』).
- ▶ 인권의 특성을 통해 인권과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의 보편성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권리는 인권이 아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가 국가일 때, 개인 간 혹은 권리 간의 충돌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서 그

런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인권의 구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뉴스로 보는 인권의 이해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던 국제인권대회에서는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해보세요.


(2) 군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권적 이해

- ▶ 국가의 존재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주체입니다.

- ▶ 군대의 존재 목적: 헌법 제5조에 따르면 국군은 국제 평화유지 노력과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가집니다.
- ▶ 국가권력과 군대, 민주주의의 관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를 헌법의 전문, 제5조, 제10조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우리 군 역시 시민에 속한 주권으로부터 나온 ‘시민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군사적 침입으로부터 대응하는 전통적인 무력충돌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민주화, 법치, 정치적 자유, 문화 발전,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 보장, 환경권 등을 포괄하는 인간안보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안보의 요소들이 불안정할 때 일어난다는 점에서 인간안보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 역시 전시상황이 아니더라도 재해 복구 작업, 민간인이 하지 못하는 위험 업무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간안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군 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인권정책연구소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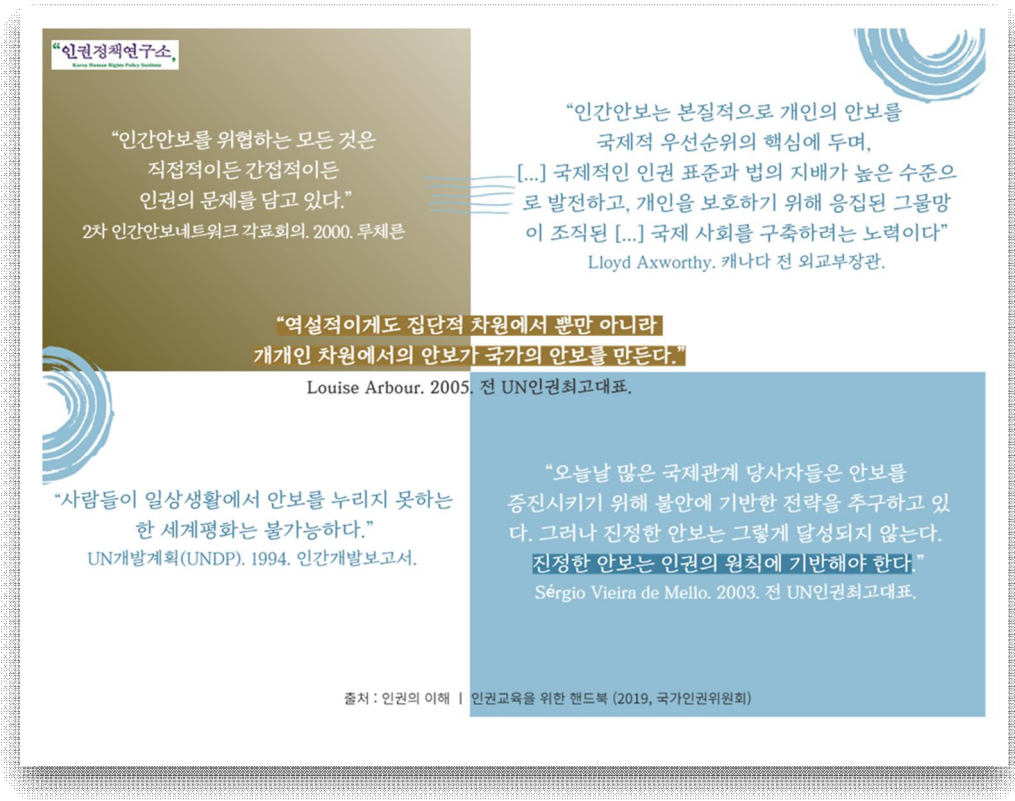
## 군대와 인권

군 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군대

- 유엔의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 '인간의 안전 보장'에서 제기한 기존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의 보완적 개념으로, 각 개인의 안전, 풍요, 행복 추구 등을 안보화시킨 개념
- 광의적 개념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로, 경제적 풍요, 사회적 안정 등을 포함
- 협의적 개념은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로, 폭력, 전쟁, 테러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헌법**: 지식채널e 『헌법 제1조』 영상 활용해보세요. 특히, 브레이트의 시 <바이마르 헌법 3개 조항> 중 제1조의 내용은 나치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공권력이 자신의 권력의 근원지가 주권자라는 것을 망각한 결과가 가져온 폭력적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입니다. 즉 국가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와, 시민의 인권 보장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 ▶ 이를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와 제10조입니다. 국가 조직으로서 군대의 존재 이유와 역할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설명합니다.

☎ **인간안보**: 인간안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평화를 잇다 Peace Tube(2021), 『인간안보와 평화\_이원영선생님』을 참고하세요. 본 영상은 강의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3) 군인 인권 보장**

- ▶ 군인은 조직 목적상 다른 직업보다 인권적 제한의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면 인권 침해입니다(헌법 제37조제2항). 따라서 반드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인지,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분석할 수 있는 인권 역량 배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권 역량을 통해 군 내 인권침해 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견인하는 핵심입니다.

- ▶ 「군인복무규율」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전환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군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한 위주로 명시되었던 「군인복무규율」과 달리 전문에서부터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인의 기본권 제한의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하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은 군인이기에 앞서 ‘시민’이라는 점 즉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군인이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됩니다.

### 사례 토의 활동

- ▶ 군인은 시민의 인권 보장을 실현할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한 명의 시민입니다.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을 통해 인권과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군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사례 토론 1과 사례 토론 2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 ▶ 군의 인권 문제를 군인 스스로 찾아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으로 분류하도록 사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 건의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군 인권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 사례 토론 1. 휴식권 – 우리의 휴식권, 어떻게 하면 잘 보장될 수 있을까?

- ① 조를 구성하고, 다음의 활동지를 작성해봅니다.
  - \* 휴대폰을 사용하여 패들렛(<https://padlet.com>)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야기된 사례 중 조별로 구체화할 사례를 정하고, 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지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TIP** 사례 토론 1의 핵심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는 자치활동에 있습니다. 부대 차원의 활동에서 나온 의견을 논의하고, 반영 또는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답변하는 환류 구조를 만든다면, 용사들의 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휴식권’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변경하여 진행해도 좋습니다.

**<활동지 예시> 우리의 휴식권, 어떻게 하면 잘 보장될 수 있을까?**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관 : 용사가 휴식하는 공간이자, 단체 생활 공간, 임무 수행을 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 공간이라는 특수성</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휴식 :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 힘을 비축하고 충전하는 시간, 안전사고 방지 기능,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자 다수의 인원이 24시간 생활하는 군대라는 점에서 오는 업무 특수성</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대에서의 휴식권에 대한 논의를 해 봅시다.</p>
<p><b>우리 부대에서 휴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b></p>
<p>☞</p>
<p><b>휴식권 보장을 위해 우리 부대에서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b></p>
<p>☞</p>
<p><b>각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b></p>
<p>☞ 나 :</p> <p>☞ 동료들 모두 :</p> <p>☞ 부대 :</p>
<p><b>국방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b></p>
<p>☞</p>
<p><b>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b></p>
<p>☞</p>

**● 사례 토론 2. 우리 안에 혐오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

- ① ‘우리 부대 내 혐오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개별적으로 다음 활동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② ‘○○’이라는 표현이 관계된 모든 사람, 우리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봅니다.
- ③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인간다운가? 즉 스스로 존엄한 존재



로 세울 수 있을까? 존엄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존엄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특정한 방법이다. 그것은 사고와 경험, 행위의 틀이다. 이러한 존엄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틀의 개념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생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다. 존엄한 삶의 형태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나느 타인에게서 내 품격이 지켜지도록 대접받을 수도 있고 타인은 내 품격이 파괴 되도록 나를 다룰 수도 있다. 여기서 일컫는 존엄 내지 품격이란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이런 질문을 해본다. 타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두 번째 차원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타인들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내가 타인을 대한 생각과 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 이제 존엄이라는 것은 타인이 정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굽직한 질문이 생긴다. 타인을 경험하고 타인에게 행위를 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가? ...

세 번째 차원에서의 접근 역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대접하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존엄성을 세워주는가? 또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 때 내 존엄성을 내동댕이쳐 버린 결과를 낳았는가?”

— 피터 비에리(2014), 『삶의 격』, 13쪽.

**다른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못하는 나는,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세울 수 있을까?**

유엔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언제나 예외여야 하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0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바트 행동계획(A/HRC/22/17/ Add.4, 부록)의 내용으로 혐오 표현이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6개 기준(맥락, 화자, 의도, 내용 및 양식, 발언 행위의 파급 정도, 즉각성을 포함한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성은 두 가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혐오 표현 제한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처벌 요건에서 벗어난 혐오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혐오표현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 긴장감 속에서 국가 공권력 개입에 엄격한 요건을 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호의 공백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의 고통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자발적 실천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b>우리 부대 안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과 차별은 어떤 것이 있나요?</b>
☞
<b>그 단어와 차별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니까?</b>
☞
<b>그 표현과 차별이 지속된다면 나와 우리 부대 공동체가 얻는 득은 무엇이 있나요?</b>

☞
그 표현과 차별이 지속될 때 나와 우리 부대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 무엇이 있나요?
☞
부대의 동료로 존엄한 존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 양식, 규칙, 기준, 환경 등은 무엇이 있나요?
☞
부대의 동료로 존엄한 존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 양식, 규칙, 기준, 환경 등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

**TIP** 위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봅니다. 더 나아가 혐오 표현과 차별을 왜 하는지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보다, 관행으로 굳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짚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에서는 당사자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우리 부대의 행동 양식, 규칙,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등에 대해 적도록 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교수자는 그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 사례 토론 2는 패들렛 사용을 지양합니다. 현장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한 관계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지식채널e 『푸른 눈, 갈색 눈』
- ☞ 씨리얼 『Ep.1 군대 이야기 나오면 말이 없어지는 남자들 | 전 관심병사였습니다 | 씨리얼 사회탐구』 영상 참고. 특히, 한승의 이야기.
- ▶ 두 영상을 통해 혐오, 차별, 낙인은 사회의 시선을 당사자가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삶과 연결된 문제임을 설명합니다.

“한 시인의 삶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불행한 편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인이 주관적으로 확인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주의한 일이다. 당사자가 ‘나는 불행하다’고 말한다 해서 타인이 아무 때나 ‘그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당사자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설사 신세한탄의 형식을 취한다 해도 그것이 자기 직시의 효과를 발휘해 자신의 현재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으나, 타인이 그런 말을, 그것도 그를 그 불행에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도 없이 할 때는, 그런 말이야말로 그가 미래의 다른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꺾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신형철(2022), 『인생의 역사』, 67쪽.

카드뉴스로 보는 혐오표현

혐오표현

**혐오** :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실제로 가지거나 혹은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증오의 감정. '혐오'는 단순한 편견과는 다르며,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한다. '혐오'는 어떤 감정상태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표출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표현(speech)** : 내면적인 어떤 견해나 생각을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하는, 견해나 생각을 전하는 모든 표현이다. 서면이거나 비언어, 시각, 예술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인터넷,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통해 배포될 수 있다.



평등권이란?

반차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1.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되어야 할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s)을 근거로 하며,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그밖의 어떠한 공공생활 분야에 있어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3.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 배제, 제한 또는 우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해 '표현'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조모성을 차별없이 보호하기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평등교육



공공기관의 불관용과 차별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의 성격과 영향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등 증진에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공직자, 공인,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등권 및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차별이 제도화되었거나 역사적으로 대응이 없었던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하다. 학교 등의 교육기관(군대, 경찰, 사법부, 의료계, 법조계, 정치 집단 및 종교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평등 교육은 제도화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 2

## 군인과 인권

## 학습안내

- ▶ ‘인간안보’ 개념을 한국군의 기원과 ‘시민의 군대’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군대가 지향하는 가치가 인간의 일상적 인권의 수호와 보장임을 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 본 강의는 군대가 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하고, 인간안보, 국군의 기원, 시민의 군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봅니다.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UN이 안보 개념을 일상적인 인간의 안전과 평화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한국군의 기원에서부터 추구해 오던 개념임을 학습합니다.
- ▶ ‘시민의 군대’의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방위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군인이 조직 내에서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군대의 핵심역할임을 학습합니다.

## 학습가이드

- ▶ 학습은 사전질문, 본 강연, 사후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생각하기

**Q.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답변으로 영토 수호,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제평화 유지 등 거시적 기능들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질문은 이후 인간안보가 일상적 안전과 평화까지도 방위하는 전방위적 개념으로, 거시적 기능뿐 아니라 군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에서까지도 지켜져야 할 개념으로 확장해 생각하기 위한 전초 질문입니다.

**- 위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그때 느꼈던 효용감을 짧게 공유해 봅시다.**

## 학습하기

### (1) 인간안보의 이해

- ▶ 군대는 사회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전방위에 대한 안보를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영토와 재산 보호 차원의 거시적인 안보 개념을 개개인의 일상적인 인권 보호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어 제안된 개념입니다.
- ▶ 인간안보(Human security) : 1994년 UN 인간개발보고서에 “인간안보” 개념을 주창하였습니다. 안보의 대상을 국가뿐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전방위의 것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안보 개념의 확장으로, 군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영토와 재산 뿐 아니라 인권과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보완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안보를 누리지 못하는 한 세계평화는 없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인간개발보고서(UN, 1994) 참조

- ▶ 앞서 질문에서 나왔던 거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안전과 인간존엄을 수호하는 것 또한 인간안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시혜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당연한 임무인 것입니다.

### (2) 한국 군대의 기원

#### ● 한국군의 출발점은 독립군

- ▶ 과거 유럽, 미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대가 제국의 팽창과 패권 실현의 수단이었다면 한국군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던 군사조직이었습니다. 즉, 국군의 존재 목적은 침략과 전쟁이 아니고, 처음부터 폭압적인 식민에 저항하면서 한반도 조선인의 인권 실현, 나아가 국제 평화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 이와 같이 인간안보 개념은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보호와 자주방위를 꿈꾸었던 국군에 매우 어울리고 근본 취지에 맞는 개념입니다.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나와 공동체를 침략적 범죄들로부터 구제하려던 시도로부터 기원했음을 알아봅니다.

### ● 한국광복군

- ▶ 광복을 위해 일본군과 전투를 진행하였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군사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미국 OSS 와의 합동작전을 펼쳐 한반도 수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작전 개시 바로 직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였습니다.

☎ 참고 영상 - 한국광복군 소개 : 역사한방, KBS 역사저널 그날

<https://www.youtube.com/watch?v=xVl1gGbxyjl>

☞ 한국광복군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공감합니다.

### (3) 시민의 군대

- ▶ 보통 군인의 존재는 ‘시민을 위한 군인’으로 해석되어 군대 밖의 시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대는 시민들이 구성원인 ‘시민에 의한 군대’이기도 합니다. 군대의 목적이 인간의 일상적 인권과 안전의 보장에 있다면, 그것은 군대 바깥뿐 아니라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일상적 인권과 안전의 보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군인의 기본권(인권)은 제한의 대상이기 전에 최대 보장의 대상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군인도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인권)을 일부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역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이는 기본권(인권)을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라는 원칙이지 기본권(인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구가 아닙니다.
- ▶ 또한 제한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되는 것으로,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여건을 개선하며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입니다.

### ● 군인의 일상 역시 방위의 대상

- ▶ 영토방위,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 지뢰 제거 등 전쟁 수습, 인명 구제와 같이 국가자주권, 재산권, 생명권에 대한 수호뿐만 아니라, 군인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과 시민들의 일상적 인권을 지키는 일들도 군인이 주요하게 수호해야 할 대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 군인의 인권을 도외시하고서는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군대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인권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 ▶ 군인이 헌신하여 수호해야 하는 국가와 국민에는 군인 스스로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군대는 ‘시민들이 모인 군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군인 인권 보장은 시민 인권 보장**

- ▶ 군인 역시 시민이므로 국가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당연히 군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군과 인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존엄에 기반한 인권 수호야말로 군대의 핵심적 기능임을 이해합니다.

**생각하기**

- ▶ 군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해봅시다.
- ▶ 군에 복무하면서 일상적으로 존엄성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 ▶ 우리 부대는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봅시다.

**확장하기**

- ▶ 타지박시·체노이, 『인간안보』, 박균열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2010.
- ▶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 ▶ 유현석, 「군과 인간안보: 이론, 사례, 한국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5호, 2011.
- ▶ “국군의 부리를 찾아서 1부”, 국방TV, 47:29,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rXfnsaXYxV4>
- ▶ 조효제,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인간 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606.html>, 2020



### 3 군인 인권보장

#### 학습안내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는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에 훈련소에서 법의 대강을 안내하거나 일선 부대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나, 장병들이 법률의 의미와 효용을 이해할 기회가 되기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 ▶ 3차시 강의는 장병들로 하여금 「군인복무기본법」의 의미를 군인 인권의 맥락에서 인식하고, 그 효용을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함을 목표로 합니다.

#### 학습하기

##### (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통한 군인 인권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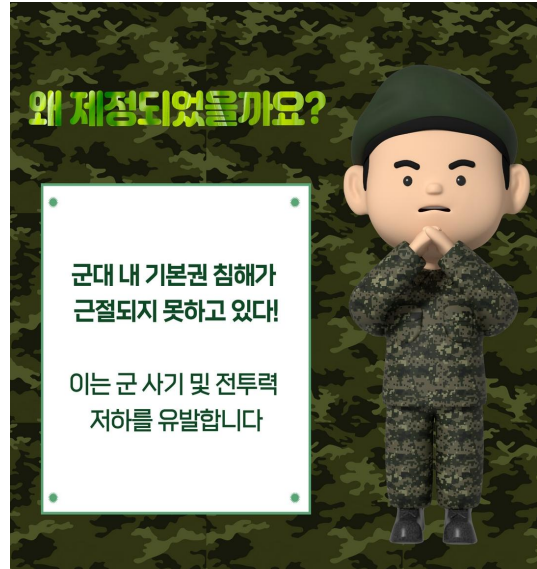
- ▶ 「군인복무기본법」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안내하고 그 연장선에서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 ▶ 법률의 조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구를 해설하는 것은 자칫 지루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규정을 그 성격에 따라 묶어 전체적인 구조를 보이는 수준으로 강의를 간결히 구성합니다.

##### ● 「군인복무기본법」의 도입 배경과 취지 : 군대 내 인권보장의 중요성

- ▶ 「군인복무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고 2016년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부대 내 인권 침해 사건(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수차례 노출된 바 있고, 특히나 군대의 위계에서 말단에 위치하는 용사들의 처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인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에 호응하여 인권 보장의 기초적 근간으로 마련된 것이 이 법입니다.
- ▶ 「군인복무기본법」 이전엔 대통령령으로 「군인복무규율」을 두었지만, 이는 군인의 의무에 초점을 둔 법규로 군인의 권리에 관해선 내용이 미흡하였습니다. 즉,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군인의 독특한 지위 중에서도 ‘제복’을 강조한 법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었던 「군인복무규율」을 법률인 「군인복무기본법」으로 대체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확충한 것은 군인 또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카드뉴스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이유 확인하기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반백년을 군인과 함께 한 「군인복무규율」 역사 속으로, (2016.6.29.)

**TIP** 제정 배경을 통해 「군인복무기본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합니다. 이 법이 원래 존재하였던 것,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끝에 그 해결책으로서 도입되었다는 맥락과 의의를 부각합니다.

☞ 인권의 역사, 인권보장체계의 의미와 역할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 (2) 「군인복무기본법」의 인권적 의미

### ● 군인의 기본권(인권) 확인과 명시

- ▶ 「군인복무기본법」은 제3장에서 군인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제10조는 군인 역시 국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군인의 권리는 군사적 직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밖에서는 여타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0조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규정은 군인에 대한 과거의 특별관계이론이 아닌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기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의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로 규정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황창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2017, 48쪽)

- ▶ 군인의 권리가 군사적 직무에 한하여 제한된다는 규정은 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와 함께 보았을 때 그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군인은 시민이고, 다만 직무에 관련하여서만 제복 입은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36조에서 상관의 명령을 직무에 관한 영역에 국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명령복종의 의무에 있어서는 구 군인복무규율이 일체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였는데, 이 법률에서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여 복종하는 명령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황창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2017, 49쪽)

- ▶ 군인의 권리 목록은 국민의 권리 목록과 동일하여 헌법에 이미 규정된 것이지만, 군인의 직무와 생활에서 특정 권리들은 제한될 공산이 크므로 몇몇 기본권을 강조하여 개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평등권, 사생활권, 의료권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 하여 군인에게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필히 인지해야 합니다. 명시된 권리는 예시적인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일원인 군인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 그 외에 제17조2의 미세먼지 시 외부활동 제한, 제18조의 휴가 보장 등 장병의 생활에 밀접한 권리도 적혀 있습니다.
- ▶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권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정함으로써 그 밖의 경우엔 권

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이를테면 휴가에 관한 제18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항의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으면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명시합니다.
- ▶ 이 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범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제4조 국가의 책무에 적혔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은 점점 더 풍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4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군인복무기본정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제7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조항만 보아서는 무슨 내용인지 곧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군인복무기본정책의 효용이 체감됩니다. '18+년~'22년도의 군인복무기본정책에는 병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외박지역 제한 폐지,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의 사안이 담긴 바 있습니다.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 2.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 3. 자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군인복무기본법」 적용해 보기

- ▶ 「군인복무기본법」이 용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출, 휴대폰 등 장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관하여 「군인복무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점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TIP** 용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와 여건이 실상은 점점 확대되어 왔다는 맥락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확대 과정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은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거나 또는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 카드뉴스 「군인복무기본법」 사례 적용하기

**군인복무기본법 적용해볼까요**  
사례 보기

**교육훈련 불합격자의 외출·외박 제한**

2016년 한 부대에서 교육훈련에 불합격한 용사의 외출·외박을 제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된 바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부대 간부가 당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교육훈련 저조자에 대해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으나, 합격 기준이 높지 않으며, 병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하면 진급이 지연될 수 있으나 지연기간이 총 3개월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결정례집 제2집, 2019, 104쪽

군인의 직무를 생각하면 타당한 주장같은데요? 능력 배양을 위해 동기를 부여할 방안으로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인바 그렇거?

**BUT!**

「육군병영생활규정」은 훈련 수준 미달에 따라 장병의 외출·외박을 제한할 때에도 징계위원회의 준하는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 권리를 보장하고, 임의적인 제한을 막기 위하여 절사를 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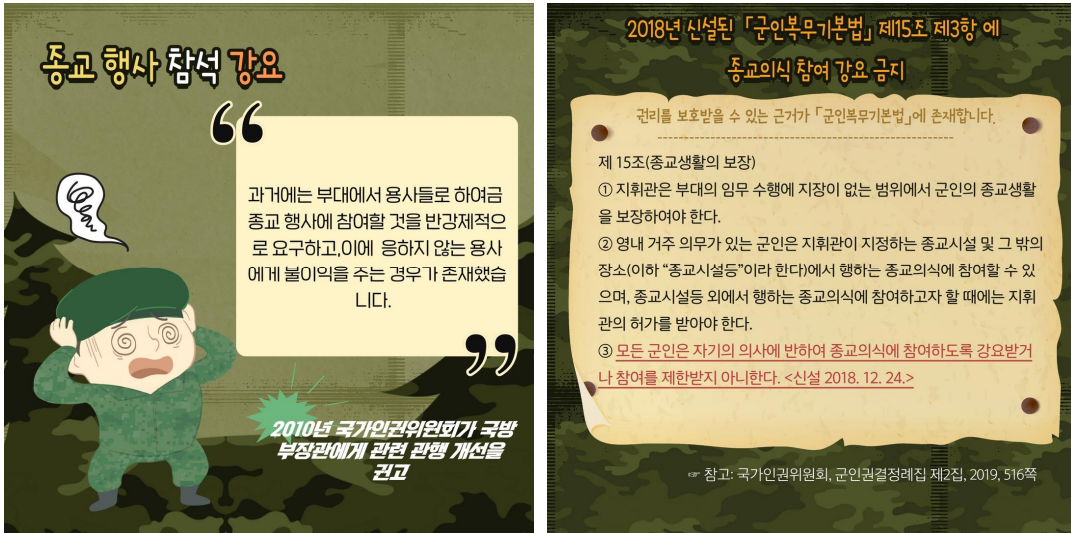
**「육군병영생활규정」제117조 (외출·외박)**

④ 정기 외출·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회 1박2일 외박, 월1회 외출을 시행하며, 세부 시행절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훈련 수준 미달, 군기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정기 외출(박)일수를 중대장급 지휘관이 삭감하거나 일정 일수의 외출(박)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급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결정례집 제2집, 2019, 103-112쪽





### 사례 토의 활동

- ▶ 사례를 통해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 ▶ 장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률의 내용을 적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TIP** 해당 부대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사례를 꼬아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삼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와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간부들의 병 생활관 출입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까?

- 생활관은 어떠한 성격의 공간일까? 병사의 사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공간일까, 군인의 직무가 수행되는 공적 공간일까?
- 일과 시간과 개인정비 시간인지에 따라 생활관의 성격은 달라질까?
- 군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생활관에 간부가 출입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 만일 간부가 생활관에 출입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면, 병사들의 사생활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출입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을까?

#### 사례 2. 한 병사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경계 근무 열외를 요청하였지만, 다른 병사들은 평소 행실을 보건대 '피병'이 분명하다며 근무는 평등하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한 "건강을 유지"할 권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되어야 할까?

- 경계 근무는 군인의 직무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 누군가의 통증이 피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선부른 판단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없을까?
- 해당 장병이 보다 수월하게 임할 수 있는 대체 근무가 있을까? 대체 업무를 배정하였을 때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TIP**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게 해주는 일률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달라지고, 각 요소의 미묘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답이 존재하지 않기에 개별 상황마다 관련자의 성실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고민 끝에 군대의 인권 보장 체계가 점점 발전해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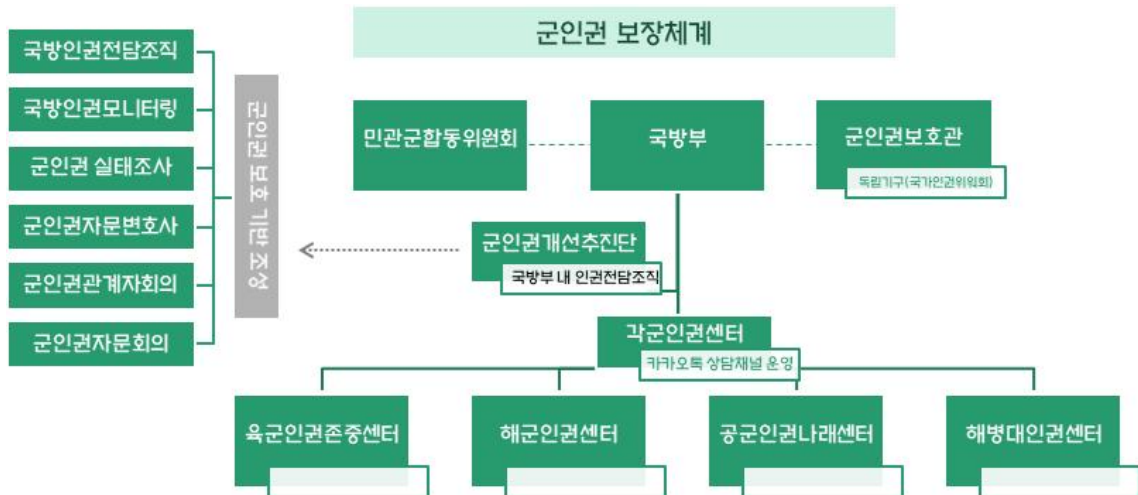
## 4 군 인권보장 체계

### 학습안내

- ▶ 국방 인권정책 전반에 대하여 이해합니다.
- ▶ 이러한 제도화는 동료의 희생 위에 지어진 것이라는 인권의 역사와 연계한 이해를 돕습니다.
- ▶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의 역사, 군 인권의 역사 속 인권의 주체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습하기

- ▶ 다음과 같은 군인권 보장체계의 큰 그림을 이해하되, 그 실효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실제 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를 접목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국방 인권정책의 역사-인권의 역사

- ▶ 민감하고 무거울 수 있는 만큼 먼저 일반적인 인권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 인권의 주체 확장을 통한 인권의 개념과 가치 회복을 방향을 이해합니다.
- ▶ 국방 인권정책 역시 이러한 희생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담긴 것임을 이해합니다.

## (2) 국방 인권정책의 이해

▶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조직기반 구축	전문기능 강화	점검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인권보호관 설치</li> <li>○ 국방 인권 전담조직 설치</li> <li>○ 군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인권정책회의운영</li> <li>○ 군 인권보호 자문위원회 운영</li> <li>○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li> <li>○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li> <li>○ 군 인권지킴이 시스템 개선</li> </ul>

### — 군 인권의식 향상

간부 인권감수성 제고	군 인권교육기반 강화	병 인권교육 효과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부 인권교육 강화</li> <li>○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li> <li>○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성인지·자살예방 교관 등 운영</li> <li>○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UCC, 영화, 웹툰 등</li> <li>○ 국방인권교육협의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인권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 실정을 고려한 인권교육 기준 정립(교육주기, 시간 등)</li> <li>» 병 복무주기에 기초한 단계별 인권교육</li> </ul> </li> </ul>

### —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인권실태 조사 및 평가	진정조사 및 상담	사법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인권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li> <li>○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li> <li>○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 사건 진정조사</li> <li>○ 장병 권리구제전문 상담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li> <li>○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li> <li>○ 장병 기본권 침해유무 조사 지침 마련</li> <li>○ 인권 침해 신고자 보호조치</li> </ul>

● 각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도 관계법의 정비를 통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어 군관련 사건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권을 통한 군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함.

- 예> 군 훈련소 방문조사를 통한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 마련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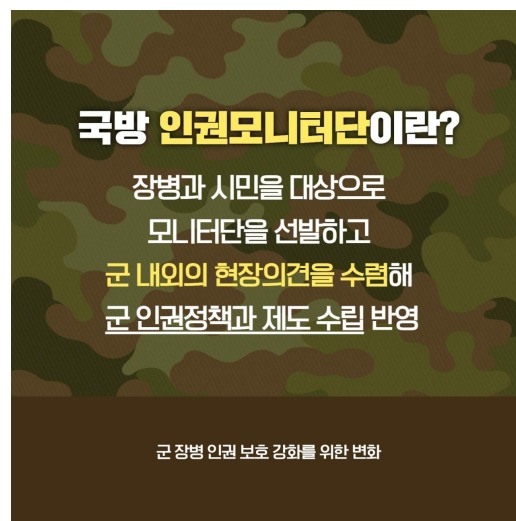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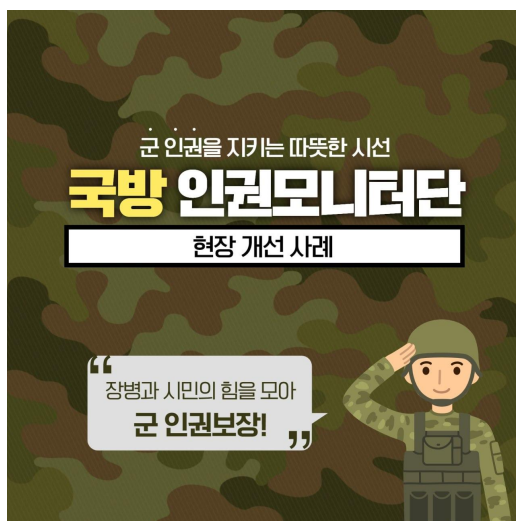
● 군 사법제도 개혁의 경우 오래 전부터 그 개선이 요구됨. 우리 사회와 군이 처한 상황적 조건이 크게 변한 가운데 군인 인권보장, 군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실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됨.



(3) **군인권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 ▶ 군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 보장체계와 그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병의 인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압니다.
- ▶ 각 제도를 통하여 군인권 개선이 진전된 사례들을 소개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효용성을 공감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각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 자료 협조 필요
- 군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제도와 정책은 군인권 증진을 위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냄.
- 군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별도 예산이나 타부서 협조 등의 절차 없이 각 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휘관에 의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예산 마련 등 중장기적 과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각군 인권센터 및 부대에 개선 요구함.
- 군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역시 군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끌어 내고 있음.
- 국방 인권 모니터링단 제도는 군 인권정책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 중이며, 장병과 시민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음.
  - 부서관 모집·선발 과정에서 색각이상자에 대한 규제 개선
  - 쌍둥이, 국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육·국직 부대 선발 제한 개선
  - 정치 또는 이념집단 및 관련 동아리 활동자의 동반입대 선발 제한 개선
  - 군인권지킴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7cm 이상 문신장병의 간부 선발 기회 제한 개선
  - 훈련병 대상 '효 전화' 강요 등 개인 자유권 및 사생활 침해 개선

**국방 인권 모니터단 소개와 개선 사례**



### ○ 군 인권의 개선 ○



“ 군 인권수호  
우리가 지킨다! ”

- 1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군인의 기본권 보장 법에 명시
- 2 신고·상당 청구를 개선한  
국방헬프콜, 군인권지킴이 시스템
- 3 인권교육 활성화  
군 인권교육의 양적·질적 확대


### 부사관 모집·선발에서 색각이상자 규제 개선

국방부는 부사관 모집·선발 과정에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색약자, 색각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평등과 차별금지**

“왜 색약이면  
부사관이 될 수 없나요?”




### 쌍둥이, 국외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육·국직 선발 규제 개선

국방부는 쌍둥이, 국외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육·국직 부대 선발 제한을 개선하였다.

장병과 시민의 참여로 불합리한 군대의 여러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되었으며,  
시민들의 군 인권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평등과 차별금지**

“왜 쌍둥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야 하나요?”



### ○ 군 인권보장 퀴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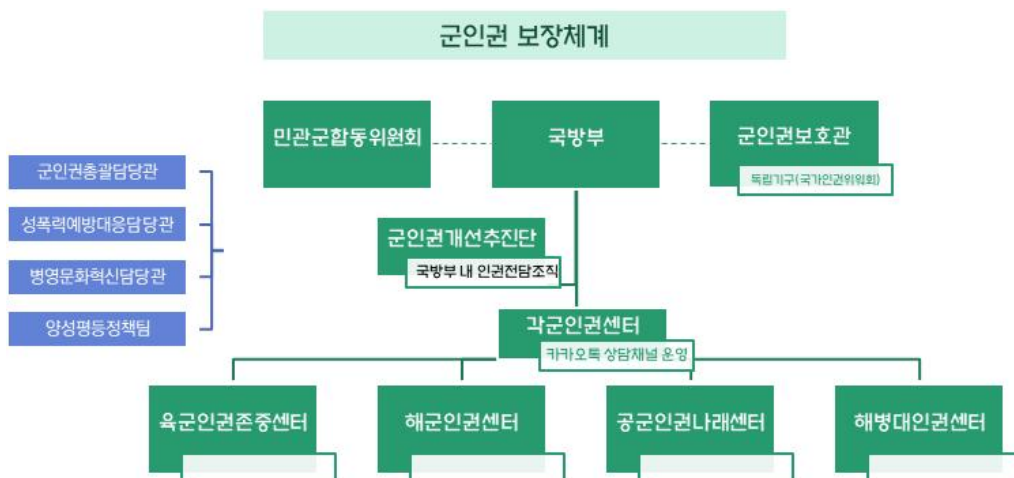


“ 다음은 국방 인권모니터단에 의해  
개선된 군 인권 사례이다.  
이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

- 1 7cm 이상 문신 장병의  
간부 선발 기회 제한 개선
- 2 훈련병 대상 '효 전화' 등  
강요하는 군 문화 개선
- 3 정치 또는 이념 집단 및 관련 동아리  
활동자의 동반입대 선발 제한 개선

모두 국방 인권모니터단의 개선 사례이며, 1번과 3번은 차별금지와 관련되어 있으면  
2번은 개인 자유권 및 사생활 침해 개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



- ▶ 군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군내의 제도적 체계를 소개하되, 가급적 선사례 제시를 통하여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 ▶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군인권지킴이 사이트(<http://hrkeeper.mnd.go.kr>)를 안내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 정리하기

- ▶ 군인권 보장체계 추진의 흐름을 통하여 군인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 이것이 가능했던 역사적 흐름 및 현장에 있는 당사자의 인권의식의 역할 등을 마무리합니다.
- ▶ 군에서 진행되는 실태조사 등 여러 정책 역시 학습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실질적 운영과 이를 통한 군인권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무리합니다.

### 3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 가. 훈련가과정 개요

- ▶ **교육 대상** | 군 인권교관 30명 기준
- ▶ **교육 시간** | 30차시, 30시간(오리엔테이션 2차시 포함)
  - 한 차시당 60분으로 구성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은 2차시로 120분 진행하여 총 30차시 훈련으로 구성하였다.
- ▶ **교육 목표** | 군 인권교관의 인권역량 강화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립하고, 군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에 있음을 이해하여 병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군 인권교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확립하고, 군의 존재 이유는 인권보장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교육을 설계, 인권교육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시연하여 인권교육가로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 **교육 내용** | 군 인권교관의 인권역량 강화

**도 입** | 인권 개념 및 구조와 군대와 인권 이해

**중 간** | 교수법

**마 무 리** | 실습과 시연

- 인권의 이해
- 군대와 인권
- 군 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사례 적용
- 인권의 개념 다지기
- 사례분석 기법 실습
- 교수법
- 실습과 시연

● **교육 구조** |

- [대모듈1: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군대와 인권 이해]
- [대모듈2: 교수법]
- [대모듈3: 실습과 시연]으로 진행된다.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 군의 존재 이유(인권 보장)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가로서 역할을 파악하고 교육 설계와 인권교육 방법론을 익혀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9]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구조

- **교육 방법** | 주요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교육 방법론을 실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나.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훈련가과정	
교육 목적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립하고, 군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에 있음을 이해하여 병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군 인권교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교육 목표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확립한다. • 군의 존재 이유는 인권 보장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교육을 설계, 인권교육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시연하여 인권교육 훈련가로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 30차시, 30시간(OT 2차시 - 2시간, 차시당 1시간)
주요 내용	• 인권의 이해 • 군대와 인권 • 군 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사례 적용 • 인권의 개념 다지기 • 사례분석 기법 실습 • 교수법 • 실습과 시연

차시	내용	비고
<b>오리엔테이션 (2시간)</b>		
OT	<p><b>1.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 (기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보고서 IV. 「공무원 인권교육 방향과 구성」 참조</li> </ul> <p><b>2. 아이스 브레이킹 : 참여자 인사 나누기 나눔</b></p> <p>*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급 차를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 필요.</p>	2시간
<b>대모듈 1. 인권 개념 및 구조와 군대와 인권 이해 (13시간)</b>		
<b>1. 군대와 인권</b>		
1~2차시	<p><b>1. 왜, 군대와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1조를 토대로 제10조, 제5조와 연결하여 설명</li> </ul> <p><b>2. 국가의 존재 이유 = 군대의 존재 이유(「헌법」 제5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군대의 역사</li> <li>☞ 현재 군대에서 군 정신전력 교육, 정훈교육 등에서 군대 존재의 이유를 인권보장으로 설명. 개념적 설명과 함께 한국 군대의 역사를 함께 설명. ex. 서양의 군대는 식민,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반식민지 개념으로 만들어짐. 군대에서도 한국군은 평화를 위한 군대로 이야기함.</li> <li>- 공공성을 위한 군대</li> <li>☞ ex. 지뢰 제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민간인은 할 수 없는 일을 전문성을 지닌 군인이 대신하는 것임.</li> <li>☞ 영상 활용 : 헌법 제1조(지식채널-e)</li> </ul> <p><b>3.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접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능적 요청인 안보</li> <li>☞ 국가 안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안보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함.</li> <li>- UN 평화 - 발전 - 인권의 연관성과 상호보완에 대한 설명</li> <li>☞ 코피 아난 “The human family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ill not enjoy either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li> </ul> <p><b>4. 군인 인권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제한은 원칙이 아닌 예외, 엄격한 조건과 기준이 필요</li> <li>☞ 군인은 조직 목적상 인권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면 인권 침해임(헌법 제37조제2항). 따라서 끊임없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금의 제한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견인하는 핵심임.</li> <li>-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의 이슈와 보장해야 할 방향도 달라지지만, 그 최종목표는 인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함.</li> <li>- 지휘관이 생각하는 장병 인권 보장의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 현재 일어나는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다루</li> </ul>	기본과정 1, 2차시의 〈학습내용1〉 심화

차시	내용	비고
	고, 이후 차시에서 구체적으로 심화함. <b>5. 국내외 군대의 역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와 인권</b> - 독일 군인 이야기, 군인노조의 의미와 역할 - 군인들은 상명하복이 직업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음. 반면 건강하고 단단한 군대는 민주적 소통이 가능할 때 실현됨을 이야기 나눔. -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선진 부대 사례 지휘관 인터뷰 등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음	
<b>2. 인권의 이해</b>		
3~5차시	<b>1. 인권의 개념과 구조 1</b> - 인권의 역사와 함께 이해 - 인권의 주체 : 모든 사람 - 인권보장의 궁극적 의무자 : 국가 <b>2. 인권의 개념과 구조 2</b> - 현실에서의 오해와 함정을 중심으로 이해 - 모든 권리주장이 인권인가 : 인권과 권리의 변별 - 인권과 인권은 충돌하는가 :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인권 보장 <b>3. 인권의 특성</b> -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자유와 평등의 유기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발전권)	학습내용 3~5 → 군지휘관 교육에서는 한 차시로 구성
6차시	<b>국내외 주요 인권보장체계</b>	
7차시	<b>1. 군 인권 보장체계 이해</b> * 실제 개선 사례 포함 <b>2. 인권모니터링, 종합계획 등을 통한 인권증진</b>	
<b>3. 군인이 알아야 할 우리 사회 인권 문제</b>		
8차시	<b>1.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구조 이해</b> -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읽는 인권', ((사)인권정책연구소, 홍성수, 2021), 206~235쪽) 참고 - 군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는 무엇이 있는가? <b>2. 군대 내 차별과 혐오</b> - 위계가 생겨나는 과정과 '폐급'에 대한 논의 등 ☞ 군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는 무엇이 있는가, 군의 어떠한 기준이 누구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 등 * '폐급'이라는 단어는 병 교육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병사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이고, 당사자가 있어 주의해야 함. <b>★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시혜적으로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b>	
9~10차시	<b>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b>	



차시	내용	비고
	-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다문화)의제를 선택	
<b>4. 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사례 적용</b>		
11~13차시	<p><b>[군인 인권과 관련한 결정례 등 사례토론]</b></p> <p><b>1. 인권 사례 분석 훈련 : 사례 분석 틀 숙지</b></p> <p>1) 관련 인권의 내용 - 사안의 인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p> <p>2) 인권 제한의 목적 정당성(필요성)</p> <p>3) 제한 방법과 정도의 적절성 - 인권 제한의 정도가 덜한 방법, 최소 침해</p> <p>4) 반복적 위험성에 대한 대안 모색(제도 개선) - 휴식과 휴가, 차별과 혐오, 핸드폰, 의료권 등 군인권 교안(국방부) 중 사례 선별해 쟁점과 함께 사례 제시</p> <p><b>2. 관련 결정례 및 지침 등 분석 훈련</b></p> <p>- 지휘관의 경우 인권위 결정례와 군 지침을 함께 분석하여 지휘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함</p>	
<b>대모듈 2. 교수법 (6시간)</b>		
<b>1. 인권교육의 목적 방법 이해</b>		
14~15차시	<p><b>1.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심화)</b></p> <p>- 존중과 배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p> <p>- 인권교육가로서 나의 역할 성찰하기</p> <p>-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때만 인권교육자가 아니라는 것</p> <p>☞ 인권보장체계 속의 지휘관(인권교관)으로서 나는 인권교관과 지휘관이 인권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 조직, 제도, 정책, 체계 자체가 인권교관과 지휘관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 인권교관이 인권교육에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나, 실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면 군인권교관에 대한 신뢰가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지휘관으로 부대 돌아갔을 때 나의 역할, 위치, 지위, 권한 등에 대해서도 생각.</p> <p><b>2. 인권과 인권교관이 된 이유를 에세이로 정리해 발표 및 피드백</b></p> <p>- 군대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및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p> <p>- 내가 인권교관이 된 이유와 교육을 하면서 바뀐 생각들에 대해 동료들과 중간 소감을 나누는 자리</p>	
<b>2. 교수법</b>		
16차시	<p><b>참여자 분석에 기반한 교육 설계</b></p> <p>- 군 인권 메커니즘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에 활용</p>	
17~18차시	<b>인권교육의 구조 및 질문 설계</b>	『인권교육 새로고침』 참조
19차시	<b>촉진의 기술(러닝 퍼실리테이션)</b>	



차시	내용	비고
<b>대모듈 3. 실습과 시연 (9시간)</b>		
20~23차시	모듈별 강의 계획서 구성(구조화)	모듈별 멘토 지원
	모듈별 강의 계획서 구성(체계화)	
24~28차시	<b>모듈별 시연 및 피드백</b> - 현장에서 동료와 전문가 피드백을 진행하고, 동시에 교육참여자들이 동료 시연을 보고 피드백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운영진에서 동료 피드백지 내용을 정리하여 교육참여자들에게 공유하여 다각도로 자신의 강의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	『인권교육 알파와 오메가』 ‘인권교육 시연과 피드백을 위한 평가지표 활용(pp. 52-55)’ 부분 참조

# 군인 인권교육 훈련가과정 프로그램 예시안

## 예시 이주(다문화)와 인권

다음의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을 <이주(다문화)와 인권>의 설계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 + 교육 목표 | 이주(다문화) 배경을 가진 장병의 인권을 이해합니다.
- + 차시 | 1차시(2-3시간)
- + 주요 내용 | 이주민과 다문화 인권에 대한 이해  
 군대 안팎의 다문화 인권 규범에 대한 이해  
 주제를 통해 인권침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 찾기

### 훈련가과정 9~10차시: 이주(다문화)와 인권

공부할 내용	인종차별에 대해 이해하기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인권침해 사례로 알아보기	주제 토의하기
<p>이야기로 시작해요!</p>	<p>공고민주공화국 출신 방송인 옴비 조나단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40만 명 구독자 독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군대에 가고 싶다”고 했다. 최근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결심하게 됐으며, 군 입대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도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나와 내 구성원을 지켜줬고, 지켜주고 있으니 나도 일조 하고 싶다.”고 밝혔다.</p> <p>☎ 한경라이프, 2022년 1월 27일자 기사. '공고 왕자' 조나단 "군대 가고 싶어, 대한민국 귀화 결심"</p> <p>2010년 병역법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에게도 병역 의무가 부가되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출신 입대 장병은 2016~2021년에는 14,736명(연평균 2,456명), 2022~2027년에는 32,557명(연평균 4,651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장병 방송인 '조나단'과 같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년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이 군대 내에서 교류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직업군인의 비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가정, 새터민 가정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군인복무규율」에서 임관 선언문에서 '민족' 용어를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국민'으로 개정한 바 있다.</p> <p>☎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이윤수, 2018)</p> <p>☆ 다문화에 대한 경험 나누어 볼까요?</p>			

공부할 내용	인종차별에 대해 이해하기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인권침해 사례로 알아보기	주제 토의하기
	<p>※ 군대 안팎에서 다문화 상황을 마주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참여자들이 다문화와 관련해 품고 있는 고민, 궁금증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어지는 학습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p>			
개념을 이해해요!	<p><b>1. 인종차별에 대해 알아보까요?</b>                  인종은 인류 가운데 신체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들어,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는 인구집단을 임의로 나누어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인종 구분의 자의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우등하거나 열등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합니다.</p> <p><b>〈인종차별의 의미〉</b></p> <p>「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골적인 모욕 등의 명시적 차별만이 인종차별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선 차별적인 시선과 태도 등 암묵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신화가 존재한다. '단일민족주의'는 역사적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의식으로 뿌리내려 왔습니다.</li> <li>• 인종 또는 민족으로 이해되는 정체성이 개인의 여러 다른 중 하나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과대한 의미가 부여되고, 누군가를 소외, 배제하는 이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li> </ul> <p><b>〈국제법과 국내법상 인종차별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규범으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 「인종차별철폐협약」(1979)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li> </ul> <p>「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2015)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할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li> </ul>			

공부할 내용	인종차별에 대해 이해하기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인권침해 사례로 알아보기	주제 토의하기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u>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 내 다문화 인권규범체계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 ‘다문화 존중’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li> </ul> <p>「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11. 26.&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 내 훈령으로서 「부대관리훈령」 제3장(다문화장병의 복무) 다문화장병에 대한 차별 금지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li> </ul> <p>「부대관리훈령」 제3장(다문화장병의 복무) 제119조(목적) 다문화장병에게 원활한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복무수행의 능률을 증진하고, 군의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21조(기본원칙) ① 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② 지휘관을 비롯하여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감독자"라 한다)은 다문화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지휘감독자는 전 장병이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우애를 나누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다문화 수용기반 구축에 노력한다. ④ 지휘감독자는 다문화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p> <p><b>&lt;전쟁과 난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개념이 탄생한 것은 전쟁과 밀접합니다. 난민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난민은 전쟁, 박해,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공포로부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를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난민은 군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li> <li>• 국적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나누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인간의 존엄은 국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인권의 보편성을 상기하며 고민해 봅시다.</li> </ul> <p>난민은 국민/비국민의 권력차가 절대적인 한국사회에서 아예 재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소수 중의 소수이다. 완전한 타자이고, 완벽한 무권력이다. 그렇기때문에 ‘난민이 누구인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절대다수의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들의 존재를 결정한다.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전쟁과 난민」 난민이 누구인가 묻는 대신에 - &lt;어느 날 난민&gt;을 읽고, (양선화, 2018)</p>			

공부할 내용	인종차별에 대해 이해하기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인권침해 사례로 알아보기	주제 토의하기
<p>생각의 폭을 넓혀요!</p>	<p><b>2. 새로운 차원의 '국가정체성'이 필요</b></p> <p>군인의 핵심 가치로 애국심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애국심이 민족을 향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되었을 때, 다문화장병의 소외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인종이나 민족으로 이해하기보다 구성원의 합의 가능한 가치와 정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혀 <u>국가정체성이 혈연적이고 인종적인 민족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서원상, 2011)</p> </div> <p>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장병들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군인복무규율」이 2012년 개정된 바 있다. 임관 선서문에서 '민족'에 충성을 다한다는 문구가 '국민'에 충성을 다한다는 문구로 수정되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그동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정신전력의 근간이었다면 미래에는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정신전력 근간으로서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다양한 인종, 민족 출신이더라도 <u>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전장에서 하나된 정신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u>가 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문화사회 정신전력 향상 방안」, (서원희, 2020)</p> </div>			
	<p>☆ <b>대한민국 국민의 의미를 인종과 민족에 국한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b></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40px; margin: 5px 0;"></div> <p>※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일 인종과 민족에 국한한 국가와 국민의 개념이 어떠한 점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p>			
<p>어려움과 대안을 찾아보아요!</p>	<p><b>3. 이주(다문화) 장병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까요?</b></p> <p>이주(다문화) 장병들은 사회 전반의 차별적인 인식을 경험하였기에 입대 이후에도 차별에 대한 우려와 위축감이 존재합니다.</p> <p>☆ 다문화장병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다음은 임영섭(2015)이 다문화장병의 군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p> <p>다문화장병A: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해 될 수 있으면 밝히길 꺼렸다. 이는 입대 전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자신의 차별경험이 군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중략) 이것은 부모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소위 '관심병사'로 관리되는 것을 꺼리는 것에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p>			

공부할 내용	인종차별에 대해 이해하기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인권침해 사례로 알아보기	주제 토의하기
	<p>다문화장병B: “그냥... 선임들이... 처음에는 저랑 그제 대화하는 것,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p> <p>다문화장병C: “아! 예... 분대장일지에 개인기록 같은 거 적지 않습니까? 개인기록에 아버지 이름 쓰면은... 그런 것 적을 때 기분 나빴던 게 아버지 이름이 OOOO이신데, 그 이름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잖습니까? 어어... 이름이 다르네... 어어... 종교도 이슬람교네... 그런 것 좀 있었습시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많이 답변 안 하고... 답변 길어지면 이게 계속 꼬리를 물어 깊게 내려갈 것 같고 해서 짧게 끝내 버립니다.”</p> <p>다문화장병D: “신교대 들어가서 훈련하느라 배가 고프데도 매운 김치하고 콩치 같은 생선 비린내 나는 것은 처음에 먹지도 못했습니다.”</p> <p>다문화장병E: “신병교육대에서 처음 사용하는 군대 용어에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 몰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빠르고... (중략) 자대 배치 후에 행정병으로 임무수행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뭔지를 몰라 정말 힘이 들었고 그로 인해 잦은 실수가 따라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문화장병의 군생활 적응 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임영섭, 2015)</p> <p>※ 이주(다문화)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동료들이 친근감의 표시 또는 호기심의 발로로 신상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이주(다문화) 장병에게겐 부담이자 불쾌한 경험으로 남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이나 의사소통에서의 불편함도 존재하며, 단순한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고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p>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p><b>4. 다음 주제로 토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b></p> <p>[1] 부대의 이주(다문화) 장병만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응을 돕기 위한 배려일까? 차별일까?</p> <p>[2] 이주(다문화) 장병에게 특정한 보직을 맡기는 건 배려일까? 차별일까?</p> <p>[3] 무슬림 장병을 위한 식단을 마련하는 건 배려일까? 차별일까?</p> <p>참고: 동아일보 2020년 12월 28일자 기사 <b>軍, 채식-무슬림 장병에 내년부터 '맞춤형 식단'</b></p> <p>※ 이주(다문화)에 대한 개인이 가진 차별과 고정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고민하도록 합니다. 다른 것, 낯선 것을 싫은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나에게 잘못 학습된 사실과 감정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한 사회적 인식 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상기해야 할 것은 모두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이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찾아내 바로잡아 보려는 공동의 노력입니다.</p>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1)</li> <li>• 〈군인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병영드라마〉, (다누리배움터, 2022)</li> </ul>			

**예시** 성소수자와 인권

다음의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을 참고하여 <성소수자와 인권>의 설계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 + 교육 목표 | 군대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인권문제에 대해 이해합니다.
- + 차시 | 1차시(2-3시간)
- + 주요 내용 |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국제 인권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해  
 주제토론을 통해 인권침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 찾기

**훈련과과정 9~10차시: 성소수자와 인권**

공부할 내용	성소수자에 대해 이해하기	성소수자 인권문제 인식하기	인권침해 대응방안 찾아보기	주제 토의하기
이야기로 시작해요!	<p style="text-align: center;"><b>"군대에도 성소수자가 있고, 임무를 함께 하는 우리의 동료이다."</b>  <b>"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가 살고 있고, 성소수자 시민의 인권 수호 역시 국방임무이다."</b></p> <p>성소수자는 이분법적인 성별규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성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태어나 지정된 성별과 그 성별다움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규범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분류합니다. 통용되던 성별규범이 포괄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p> <p>☆ 군대가 성소수자 인권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p>※ 오늘 교육에서는 스스로 갖고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질감보다는 평등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와 어떻게 관계하고, 군대에서 어떻게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에 집중해봅시다.</p>			
개념을 이해해요!	<p><b>1. 성소수자에 대해 알아보까요?</b></p> <p>'성소수자'는 여성/남성으로 구분되는 성별규범에 포괄되지 못하는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남성 동성애자(레즈비언/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무성애자(에이섹슈얼), 여성/남성 트랜스젠더(MTF/FTM),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젠더퀴어(트랜스젠더로 통용), 생물학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인 인터섹스 등을 지칭하고, 약칭으로</p>			

- ‘LGBT’ 혹은 ‘LGBTAIQ’라고 합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보시다.
- ‘성별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구별하여 자신이 귀속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살아가면서 자신이 귀속감을 갖는 성별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별귀속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 ‘성적지향’은 자신이 성별에 갖는 지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지정된 성별과 반대되는 이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동성을 좋아하기도 하며, 양성을 좋아할 수도, 그 어떤 성별을 안 좋아할 수도,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 ‘성정체성’은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단어이며, 성정체성은 스스로 탐색하고 인지하여 정체화하는 것입니다.
  - ‘성별표현’은 성별로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이나 특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의복, 생김새 등으로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중성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성징’은 성별을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특징을 의미합니다.
  - ‘간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성별 특징을 가진 성을 의미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상 성소수자 보호체계〉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은 인간존엄의 보장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UN 세계인권선언에 의해서 보장받습니다. 아래는 그 외 주요 국제 규범과 제도를 통해 성소수자는 치료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보편적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기준〉

- (1) 비병리화: 세계보건기구(WHO)는 1992년 동성애를, 2018년 트랜스젠더(성주체성장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 (2) 보편적 권리 확인: 요그아카르타 원칙(2006)에서 NGO와 인권전문가가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LGBTI+의 사람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문서이다.
- (3) UN 국제규범: 유엔인권이사회에는 UN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가 만들어져 있다. 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결의안(2016)이 통과된 결과이고, 한국 정부도 이에 찬성하였다. UN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국내 인권기준〉

- (1) 「부대관리훈령」 제7장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 제252조(목적) 이 장은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자 장병이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과 복무수행의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2)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위한 연구 진행 중 국방부는 2021년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트랜스젠더 군인故변희수와 그녀의 동료, 상관들이 정상적 복무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 훈령에서는 부대에서의 동성애자 장병에 관한 신상비밀 보장, 차별금지, 아웃팅의 제한(정체



	<p>성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는 것을 의미), 교육 및 상담 강화, 지속적인 지휘 관심 경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군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어 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훈령의 존재, 여러 개별 부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군대가 성소수자에 관한 역량이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li> </ul>
<p>생각의 폭을 넓혀요!</p>	<p><b>2. 대한민국 성소수자의 인권상황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b></p> <p>다음은 정성조 연구팀(2021)에서 연구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약 4천 명의 성소수자 청년들의 답변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병이 대부분 203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의 인권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p> <p>(1)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관련된 통계를 읽고 그들이 처한 인권문제를 찾아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청년 성소수자 통계: 커밍아웃〉</p> <p>① 청년 성소수자의 88.2%는 성소수자인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고, <b>자신을 속여야 하는 긴장</b>의 상황은 성소수자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p> <p>② 청년 성소수자의 97.1%가 “한국은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좋지 않다”고 대답, 82.4%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걱정했다고 답변했다. 가장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공간과 대상은 직장과 가족이었다. 가족 바깥에서의 긴장감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되는 가족 내의 갈등과 폭력도 적지 않다. 한편, 직장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들은 61.6%가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정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b>근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원한다.</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밍아웃'할 수 없는 부정적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립을 벗어나고자 성소수자들은 '이쪽과 저쪽'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과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동류의 성소수자들을 '이쪽',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이 되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집니다. 또는 커밍아웃할 수 있는 지지집단과 아닌 사람들로 서로를 구분합니다. 한 소속 내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관계 형성은 온전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일을 방해합니다.</li> </ul> <p>(2)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통계를 읽고 그들이 처한 인권문제를 찾아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신들을 지원하는 전문·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우호적일 것이라 예상하여 의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부정적 인식을 내면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사회적 관계의 고립을 초래합니다. 바로 이런 지점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li> </ul> <p>※ 성소수자들이 겪는 인권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영상자료</p>

	<p>〈청년 성소수자 통계: 위험한 정신건강〉</p> <p>① 2021년 청년 성소수자의 41.5%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전체 청년 중 2.74%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약 19배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최근 1주일 우울 증상의 경우 청년 성소수자의 경우는 49.8%가 있었다고 답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표집된 일반 청년 인구에서는 7.5%만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성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성소수자 개인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③ 차별을 경험한 청년 성소수자 중 85.7%는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거 같아서”가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인가 하는 질문에 국회와 정부를 약 90%가 비우호적이라고 답변했고, 특히 군대를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인원은 전체의 0.2%밖에 되지 않았다(비우호 91.4%, 나머지 모르겠음). 또한 심리상담, 의료 분야에서도 성소수자임을 밝혀야 하는 문제임에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다.</p> <p>〈활용할 만한 영상〉</p> <p>KBS, “처신 잘해라, 정신병원 가자”... 의자할 곳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 2020. (2분)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FStnSlc2u4">https://www.youtube.com/watch?v=2FStnSlc2u4</a></p> <p>JTBC, “학교·직장서” “불편” “혐오”... 말 못 하는 성소수자들, 2021. (3분 29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8DdX10bgw8">https://www.youtube.com/watch?v=u8DdX10bgw8</a></p> <p>닷컴페이스, “LGBT 유튜버 이열, 커밍아웃 편지를 읽다!”, 2016. (4분 4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sqPMtKjlo8">https://www.youtube.com/watch?v=WsqPMtKjlo8</a></p> <p>오은영의 금쪽상담소 38회 풍자편, 2022. 가족 내 커밍아웃 이야기 (4:18 ~ 8:35 / 4분 17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Kapkj54rpM">https://www.youtube.com/watch?v=qKapkj54rpM</a></p>
<p>어려움과 대안을 찾아보아요!</p>	<p><b>3. 군대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b></p> <p>군대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p> <p>(1) 군대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p> <p>성소수자들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소수자 장병들은 군대를 무난하게 전역했다고 기억합니다. 전반적인 군대생활을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적성에 맞다고 평가한 인원도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성정체성이 공개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경험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체성이 공개된 경우에 부정경험과 차별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다면 성소수자들도 충분히 군 생활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p> <p>(2) 마초적·성차별적 문화와의 갈등</p> <p>성소수자 남성들 중 일부는 비남성적인 성별 표현을 갖고 있는데, 가령 예쁘거나 곱거나 귀엽거나 피부가 희다고 평가되는 외모, 높은 톤과 강직하지 못한 말하기 방식과 행동, 아기자기한 취향이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 등이 비남성적 성별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일부 마초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는 그 개인을 문제 삼고 심한</p>

	<p>경우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군대에서는 소위 ‘게이 같 은’, ‘여성적인’ 특징들이 ‘남성답지 않음’으로 간주되어 괴롭힘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성소수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p> <p>(3)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p> <p>앞서 ‘게이 같음’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듯,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이 군대에서도 많이 발견 됩니다.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 축되거나 더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큰 스트레스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문제적인 상황은 부대에서 이런 발언들을 용인하거나 외면하여 성소수자 병사들을 더 고립시 키는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0년 성전 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전역된 <b>故변희수</b> 하사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성적체성 이 공개되면 군대, 학교, 공공기관, 정계, 연예계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한국에서 는 성소수자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학이 존재하거나, 성소수자 학생에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선생님들이 여전히 존재.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이나 폭력들도 존재합니다.</li> <li>• 청년 성소수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60.3%)을 가장 높은 순위로 원했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42.5%),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27.8), 성소수자 포괄적 교육 과 정 마련(19.6%)을 원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판사들이 관습적으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성별 정정을 허용해왔던 현실을 개선하는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li> </ul>
<p>함께 이야기 나누어요!</p>	<p><b>4. 군대에서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b></p> <p>다음에 제시한 방향을 참고하여 성소수자 장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어 볼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 포용적인 부대 분위기 형성하기</li> <li>•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 용인하는 문화 개선하기</li> <li>• 남성성 강요·성차별적 문화 개선하기</li> <li>• 성소수자 문제 전문적인 상담 환경 구축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40px; margin: 10px 0;"></div> <p>※ 토론 진행을 위해 훈련가가 알아야 할 성소수자 인권</p> <p>①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보장 체계는 미흡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지방자 치단체의 인권조례, 군대 훈령 등에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구체적 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공백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같이 차별적 인 법률이 잔존하는 상황입니다.</p> <p>②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은 인간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똥꼬충”, “더럽다”, “성범죄자”, “잘못된 사람들”과 같은 심각한 혐오 발언들입니 다. 이러한 혐오발언은 무지와 무관심에서 시작하고 사회분열과 시민권의 해체로 나아갑니 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양산되는 토양을 분석해야, 함정에 빠져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해치는 차별과 혐오가 싹트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p> <p>③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역시 사회로부터 학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p>

	<p>자신이 속한 사회적 인식 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다른 것, 낮은 것을 싫은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나에게 잘못 학습된 사실과 감정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상기해야 할 것은 모두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이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찾아내 바로잡아 보려는 공동의 노력입니다.</p>
<p>참고자료</p>	<p>&lt;자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li> <li>•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2021)</li> <li>•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li> <li>•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9)</li> </ul> <p>&lt;영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 '닷페이스'에 나오는 성소수자 관련 영상들</li> <li>• 다큐멘터리: &lt;너에게 가는 길&gt;(변규리, 2021)</li> </ul>

# IV

##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및 학습자원

# IV

##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및 학습자원



## 1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 가. 인권교육 평가지표 설계 방향

- 인권교육 평가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기획-설계-운영-평가의 전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을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 개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 인권교육의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는 현재 단순한 만족도 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인권교육의 목적에 맞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장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인권교육센터 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작한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국가인권위원회, 2020)이다.
- 이 책은 인권교육의 효과성과 영향 진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변화과제의 확인과 진전의 수준 점검, 인권교육가와 수행기관의 책무성 강화,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와 정책 강화, 기록을 통한 경험의 공유와 집합적 역량 강화를 인권교육에서의 평가의 목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각 강의 유형(단기/장기/자발성)에 따라 적용할 점검목록을 제시하였다.
-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평가가 단순한 학습자 만족도 점수 또는 강사에 대한 일방 평가식으로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이 책은 이와 관련해 인권교육 평가의 전환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 인권교육 평가의 전환을 위한 10가지 원칙

⑧ **성찰성** 인권교육에서 평가의 취지는 비판하기, 점수 매기기, 교육가(강사) 속아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의 성찰을 촉진하는 데 있다. 타인에 의해 대상화된 평가에 비해 주체적 성찰을 통해 더 깊고 풍부한 개선 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유의미성이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니라, 진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찰적 평가가 중요하다.

⑨ **민주적 협력 구조** 내실 있는 평가는 인권교육 관련 행위자들의 비위계적인 참여 확보, 평가 결과의 해석에 대한 반론 제기나 검증을 허용하는 민주적 논의 과정, 평가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보고의 개선을 위한 협의 절차 등 민주적 구조가 확보될 때 가능해진다.

⑩ **유기적 순환구조** 평가는 교육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다. 평가의 결과가 조직적으로 환류되지 않고 담당자의 컴퓨터나 서랍 속에 파묻혀 있다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분명한 목표 하에 신뢰할 만한 평가도구와 절차에 따라 정보가 수집되고, 민주적 협력 구조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조직과 다음 교육과정에 환류되는 유기적 순환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21쪽)

- ▶ 단편적 만족도 체크의 평가방식은 때로는 이후 교육 내용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인권교육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해 인권교육이라 보기 어려운 교육임에도 다른 흥미적 요소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만족도 조사의 함정이 있는 셈이다.
- ▶ 이 경우 인권교육가(강사)는 높은 만족도 수치로 인해 자신의 교육이 인권교육으로서 충분하다는 인식의 오류에 갇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을 구성하여 기획자, 인권교육가(강사), 참여자 모두가 이 방향성으로 교육을 기획, 진행,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 한편 타인에 의한 일방평가 방식으로는 성찰적 변화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중요한 개선점이다. 우리가 인권교육에 있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만큼 이 원칙에서 제시하는 민주적 협력구조를 통한 유기적 순환구조의 확보가 가능한 평가체계가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공무원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설계를 반영한 공무원 인권교육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 나. 공무원 인권교육에 활용할 평가지표

- ▶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 가지 인권교육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교육가(강사)를 위한 성찰지표는 인권교육의 교육기획 단계-교육직전단계-교육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에 꼭 필요한 점검지표를 목록화하고 있어 유용하다.
- ▶ 본 연구에서는 이 점검지표를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조금 단순화하였다. 단계별 점검을 교육 기획단계와 교육 진행단계의 두 단계로 축소하되, 인권교육가(강사)와 운영자(교육담당자)가 사전 및 사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가 인권교육 기획시 참조할 수 있으며, 강의 의뢰시에도 인권교육가(강사)에게 이에 기반한 인권교육을 요청하고 교육현장 모니터링까지 하도록 안내한다. 사전 점검시에는 항목별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서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 후에는 척도를 체크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 ▶ 한편 교육 후 학습 목표 달성과 교육 효과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에서 개발한 기본적인 점검항목을 참조하되, 각 공무원 분야별 인권교육에 맞게 적용하였다.
- ▶ 평가 척도로는 10점 척도를 선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중간 척도’ 답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 표 4 > 인권교육 평가지표 : 인권교육가(강사)와 운영자를 위한 사전 및 사후 점검지표

교육 기획 단계				
범주	점검목록	평가척도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교육 구조화	교육목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적에 부합한가	1	5	10
	학습자인 공무원의 상황에 적합하고 필요한 교육목표인가	1	5	10
	교육 목표와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1	5	10
	도입-전개-마무리 각 단계별 내용이 흐름 있게 연결되는가	1	5	10
	정보나 프로그램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질문과 응답, 활동 프로그램과 정리 강연 등이 균형 있게 배치되었는가	1	5	10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 태도의 변화, 이후 삶과 업무에 이어질 실천 등을 점검하는 구조를 담고 있나 (지식-태도나 가치-행동)	1	5	10
내용 적합성	사례 안에 담긴 인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가	1	5	10
	교육 목표에 달성에 필요하고 적합한 소재로 구성되었는가	1	5	10
	사용된 소재를 통한 제시한 핵심 메시지, 이를 설명하는 근거 등은 <b>인권의 가치</b> 에 부합하는가	1	5	10
	학습자의 삶이나 업무 현장 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는가	1	5	10
	인권침해의 원인에 대한 <b>구조적 분석</b> (사회적 인식,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등)을 톺고 있는가	1	5	10
	관련된 <b>인권기준</b> 과 인권보장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등을 다루고 있는가	1	5	10
	자유권과 사회권 등에 대한 설명이 <b>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및 연관성</b> 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1	5	10
	인권 관련 최근 동향, 제도적 변화, 현재적 쟁점을 포함하여 교육의 현재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	5	10
	활용하는 자료나 교육 내용 중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포한 것은 없는가	1	5	10
인용하고 있는 사례, 정보는 정확한가	1	5	10	
방법 적합성	교육 목표,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방법 배치인가	1	5	10
	학습자의 다양성(장애, 성, 연령,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료나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가	1	5	10
	학습자의 의견 초대, 비판적 사고의 확장, 생각의 전환, 스스로 문제와 해결방안 발견하기 등을 돕는 질문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	1	5	10

	교육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과 공간 배치 등을 미리 확인하였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교육 실행 단계</b>				
범주	점검목록	평가척도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교육목표 등 공유	교육의 핵심 목표에 대한 안내를 통해 목적지를 향해 함께 떠나는 여행이 되도록 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의 전체 흐름, 시간 배치 (이전 교육과 오늘 교육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에서 나는 이야기를 환기하고 교육목표와 연결된 인권적 의미를 나누며 교육을 마무리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 시간이 학습자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자극하거나 호기심을 깨우는 도입이 이루어지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잠재적) 가해자 또는 피해자. 책임자로만 단정짓지 않고, 권리의 보유자, 인권옹호자 또는 변화의 주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과잉일반화)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질문, 상호토론을 환영하고 고른 참여를 격려하는가 - 학습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이야기를 선불리 넘겨짚거나 단정 짓기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의 반응이나 수용도를 고려하여 교육의 속도나 어조, 설명방식 등을 유연하게 조절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답을 강변하거나 권위적으로 의견을 묵살하기보다 생각의 전환을 촉진하는 질문과 대안적 사고의 방향을 제시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의 의견, 질문 등에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용전달 명료성	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기 언어로 명료하고도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 요약, 쟁점 정리, 다음 단계로의 전환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념이나 내용 설명, 활동 과제 제시 등이 명확한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설명의 개연성, 진술의 일관성, 문장의 완성도가 확보되는가	1	5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가인권위원회, 2020 : 46-51 <인권교육가를 위한 성찰지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이외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강사 스스로 점검항목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교육 내용 이외의 학습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듣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 교육가나 특정 집단만이 알고 있는 축약어나 은어, 의미가 모호한 개념어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를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가 / 학습자의 차별이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다른 학습자들에게 안

전하고 수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 뒤죽박죽 설명하거나 우물쭈물 넘어가기보다는 생각의 정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후의 과제로 넘기고 있는가(국가인권위원회, 2020)

< 표 5 > 인권교육 평가지표 : 학습자용 평가지표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교육)

범주	점검목록	평가척도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교육 목표 달성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인권적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1 □	5 □□□□	10 □□□□□□□□
	시민(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이주민 등)을 업무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1 □	5 □□□□	10 □□□□□□□□
	업무과정을 인권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	5 □□□□	10 □□□□□□□□
	동료들에게도 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1 □	5 □□□□	10 □□□□□□□□
교육 내용	교육의 도입-전개-마무리 각 단계별 내용을 흐름 있게 연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교육 목표와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인권침해는 사회제도와 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보완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 □	5 □□□□	10 □□□□□□□□
	교육 내용 중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포한 것은 없었다.	1 □	5 □□□□	10 □□□□□□□□
교육 환경	교육 목적, 준비사항 등 사전 교육 안내가 충실했다.	1 □	5 □□□□	10 □□□□□□□□
	교육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 □	5 □□□□	10 □□□□□□□□
	교육이 진행되는 시기나 시간은 적절했다.	1 □	5 □□□□	10 □□□□□□□□
	교육 인원은 강사 및 학습자 간 소통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1 □	5 □□□□	10 □□□□□□□□
	강의실 환경(강의실, 기자재 등)은 본 교육에 적합하였다.	1 □	5 □□□□	10 □□□□□□□□
건의사항	교육	이 교육에서 유익했던 점, 더 알고 싶은 점, 개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지원	희망하는 교육주제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건의사항	교육	교육환경이나 운영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지원			

< 표 6 > 인권교육 평가지표 : 학습자용 평가지표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

범주	점검목록	평가척도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교육 목표 달성	이 교육을 통하여 경찰 업무의 인권적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1 □□□□□□□□□□	5 □□□□□□□□□□	10 □□□□□□□□□□
	경찰 업무는 시민 인권 보장의 목적으로 구성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시민과 경찰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 □□□□□□□□□□	5 □□□□□□□□□□	10 □□□□□□□□□□
	동료들에게도 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1 □□□□□□□□□□	5 □□□□□□□□□□	10 □□□□□□□□□□
교육 내용	교육의 도입-전개-마무리 각 단계별 내용을 흐름 있게 연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교육 목표와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제시된 정보와 사례는 학습자인 경찰의 특성에 맞게 제시되었다.	1 □□□□□□□□□□	5 □□□□□□□□□□	10 □□□□□□□□□□
	교육 내용 중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포한 것은 없었다.	1 □□□□□□□□□□	5 □□□□□□□□□□	10 □□□□□□□□□□
교육 환경	교육 목적, 준비사항 등 사전 교육 안내가 충실하였다.	1 □□□□□□□□□□	5 □□□□□□□□□□	10 □□□□□□□□□□
	교육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 □□□□□□□□□□	5 □□□□□□□□□□	10 □□□□□□□□□□
	교육이 진행되는 시기나 시간은 적절했다.	1 □□□□□□□□□□	5 □□□□□□□□□□	10 □□□□□□□□□□
	교육 인원은 강사 및 학습자 간 소통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1 □□□□□□□□□□	5 □□□□□□□□□□	10 □□□□□□□□□□
	강의실 환경(강의실, 기자재 등)은 본 교육에 적합하였다.	1 □□□□□□□□□□	5 □□□□□□□□□□	10 □□□□□□□□□□
건의사항	교육	이 교육에서 유익했던 점, 더 알고 싶은 점, 개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희망하는 교육주제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지원	교육환경이나 운영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표 7 > 인권교육 평가지표 : 학습자용 평가지표 (군인 인권교육)

범주	점검목록	평가척도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교육 목표 달성	이 교육을 통하여 군 업무의 인권적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1 □□□□□□□□□□	5 □□□□□□□□□□	10 □□□□□□□□□□
	군인권 역시 헌법과 국제규범에 의하여 보장됨을 알 수 있었다.	1 □□□□□□□□□□	5 □□□□□□□□□□	10 □□□□□□□□□□
	군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 □□□□□□□□□□	5 □□□□□□□□□□	10 □□□□□□□□□□
	동료들에게도 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1 □□□□□□□□□□	5 □□□□□□□□□□	10 □□□□□□□□□□
교육 내용	교육의 도입-전개-마무리 각 단계별 내용을 흐름 있게 연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교육 목표와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1 □□□□□□□□□□	5 □□□□□□□□□□	10 □□□□□□□□□□
	군인권과 관련한 정보와 사례는 현장의 필요에 맞게 제시되었다.	1 □□□□□□□□□□	5 □□□□□□□□□□	10 □□□□□□□□□□
	교육 내용 중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포한 것은 없었다.	1 □□□□□□□□□□	5 □□□□□□□□□□	10 □□□□□□□□□□
교육 환경	교육 목적, 준비사항 등 사전 교육 안내가 충실하였다.	1 □□□□□□□□□□	5 □□□□□□□□□□	10 □□□□□□□□□□
	교육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 □□□□□□□□□□	5 □□□□□□□□□□	10 □□□□□□□□□□
	교육 인원은 강사 및 학습자 간 소통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1 □□□□□□□□□□	5 □□□□□□□□□□	10 □□□□□□□□□□
	교육이 진행되는 시기나 시간은 적절했다.	1 □□□□□□□□□□	5 □□□□□□□□□□	10 □□□□□□□□□□
	강의실 환경(강의실, 기자재 등)은 본 교육에 적합하였다.	1 □□□□□□□□□□	5 □□□□□□□□□□	10 □□□□□□□□□□
건의사항	교육	이 교육에서 유익했던 점, 더 알고 싶은 점, 개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희망하는 교육주제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지원	교육환경이나 운영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2 공무원 인권교육 훈련가를 위한 학습자원

-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교육자료(교재, 단행본, 사이버 강의 및 영상콘텐츠 등)을 조사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10종을 분야별로 선별하여 제시한다. 각 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
- **기본서** | 해당 분야의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로 제작된 것이 기본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각 기관에서 제작한 것 중에서 의미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 **활용서** | 인권의 이해의 심화학습을 위해 제작된 도서로, 인권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신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사이버 강의** | 국가인권위 인권센터와 경찰, 군 인권센터에서 영상 콘텐츠 개발을 많이 진행하였고, 진행 중이다. 이를 사전학습이나 보충학습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유용하다.

### ▶ 학습자원 활용 가이드

- (비판적 읽기) 인권교육의 학습자원을 대할 때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인권 자료를 대할 때는 무조건 수용하며 이해하는 것보다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공무원이 학습자원을 대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분해서 읽자. 항상 팩트체크는 필요하다. 둘째, 시혜적 관점을 경계하며 읽자. 인권실현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는 것! 셋째,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자. 적극적으로 읽고, 변화하기! 마지막,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자.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 (인권문제의 구조적 이해) 공무원은 직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인권적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중심으로 금지 가이드라인의 숙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인권적 판단 능력이 필요한 셈이다. 사례의 인권적 해석을 위해 첫째,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 모든 문제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둘째, 무엇이 침해되었는가?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였는가를 파악하자. 셋째, 무엇이 문제인가? 배경과 원인 등을 밝혀 보아야 한다. 넷째,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실천적 의미에서 인권적 해석은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 (인권적 관점으로 전환) 행정을 국가의 재정과 여건에 따른 국가정책적 수행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이해하고, 인권보장의 실현 주체로서 인권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 인권문제의 서사와 맥락 파악하기) 인권문제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여러 이해관계와 특정한 상황들이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원인과 결과, 기준과 처리방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원에는 이러한 서사와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인권상황에 대해 직무자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 (나와 연관한 주제로 접근하기) 인권교육이 기초에서 심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오히려 학습자의 관심에서 출발해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방법을 권장한다. 학습자원을 배치할 때도 관심, 호기심이 갈 만한 주제로 접근해서 그 주제를 심화하거나 개념을 찾아보는 방법이 필요하다.

## 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학습자원

- 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사회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공무직) 등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문제를 접한다. 또한 사회복지 위탁운영과 민간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로서 기관과 시설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을 구성할 때 활용도가 높은 주요 학습자원을 선별하였다.

### 기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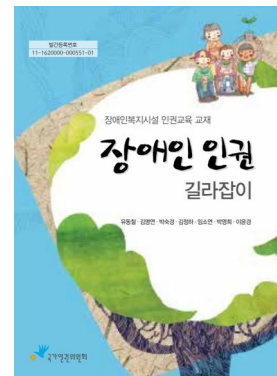
#### ① 「장애인 인권교육 길라잡이」 (2014,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 ㉮ 무엇을 담고 있나?

장애인 인권교육 교재로서 장애인의 인권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다루고 있다. 다양한 인권 상황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종사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 대상 | 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 분량 | 534쪽
- 주요 주제어 |

인권의 이해,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 구제,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 ㉮ 어떻게 활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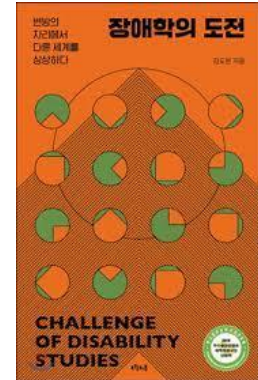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인권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장애인 인권교육 분야 현장 사례와 토론 거리를 담고 있어, 심화된 인권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
- 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서로 활용하기 좋다.

## ② 「장애학의 도전」 (2019, 김도현)

### ㉠ 무엇을 담고 있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장애 문제를 다룬 책이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억압과 배제는 무엇인가 장애의 자립·자기결정권·노동 등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화두를 엮은 책이다.

- 대상 | 장애인 인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 분량 | 424쪽
- 주요 주제어 | 장애학, 손상, 우생학,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차별과 위계, 당사자주의, 자립과 의존의 이분법을 넘어 공생의 관계, 자기결정권, 나와 너 사이의 권리, 모두를 위한 노동사회를 향해
- 유사 참고도서 | 사이보그가 되다(김초엽, 김원영, 2021, 사계절), 집으로 가는 길(홍은전, 2022, 오월의봄), 어쩌면 이상한 몸(장애여성공감, 2018, 오월의봄) 등



### ㉡ 어떻게 활용할까?

-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권적 접근을 위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학, 장애인을 둘러싼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 이슈와 쟁점을 통해 심화된 인권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
- 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한 심화 교재로 활용하기 좋다.

## ③ 「노인 인권 길라잡이」 (2015, 국가인권위원회)

### ㉠ 무엇을 담고 있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로서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다루고 있다.

- 대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공무원
- 분량 | 445쪽
- 주요 주제어 | 노인 인권의 이해, 주거의료복지시설 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권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보호



### ㉡ 어떻게 활용할까?

-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노인 인권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종사자 업무에 기반해서 입소 이전 단계에서 퇴소 단계까지 절차에 따라 인권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 업무별로 제기되는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단락별로 활용해도 좋다.



## ④ 「노년기 건강과 인권」 (2021, 국가인권위원회)

## ㉮ 무엇을 담고 있나?

노인 인권 옹호자를 위한 교재로 노년기에 시설 거주인 또는 환자로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노인 인권에 대해 담고 있다.

- 대상 | 사회복지 분야 시설 종사자, 일반 공무원
- 분량 | 427쪽
- 주요 주제어 | 건강권, 헌법 상 건강권의 개념, 보건의료, 노인환자의 인권, 노인 환자의 돌봄, 노인 환자의 인권 이슈, 노인 장기 요양, 노인 요양 현장의 인권 실천 사례, 인권 교육 지침



## ㉮ 어떻게 활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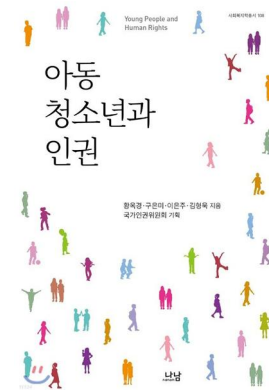
- ‘건강권’에 대해 개념적 이해와 노인 인권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노인 요양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 중에서 건강권, 돌봄과 관련하여 심화된 학습으로 나아가기에 용이하다.
-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권지침은 교육의 활용도가 높다.

## ⑤ 「아동청소년과 인권」 (2021,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나남신서)

## ㉮ 무엇을 담고 있나?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인권의 역사와 법제, 교육방법까지 포괄하고 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한 협약의 관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와 사례를 담고 있다.

- 대상 | 교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자
- 분량 | 450쪽
- 주요 주제어 | 아동·청소년 인권의 이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인권 이주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 학생 인권



## ㉮ 어떻게 활용할까?

- 아동·청소년에 적용되는 인권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인권 결정례와 사례를 담고 있어, 심화된 인권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
-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각각의 주제별로 활용해도 좋다.

활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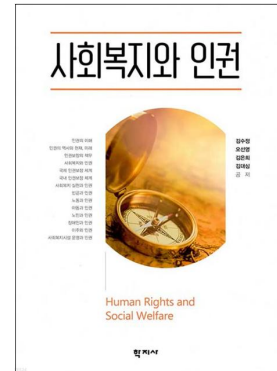
⑥ 「사회복지와 인권」 (2021, 학지사)

㉮ 무엇을 담고 있나?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로서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다루고 있다.

- 대상 |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일반 공무원
- 분량 | 372쪽
- 주요 주제어 |  
인권의 이해, 인권의 역사, 인권보장의 책무, 사회복지와 인권, 국내외 인권보장 체계, 사회복지 실천, 빈곤, 노동,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사회복지 시설

- 유사 참고도서 | 인권과 사회복지(배화옥 외, 2015, 나눔), 인권과 사회복지(박연주, 2020, 학지사) 등



㉮ 어떻게 활용할까?

-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되는 인권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사회복지 분야 현장 사례와 토론 거리를 담고 있어, 심화된 인권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
- 대상별로 제기되는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단락별로 활용해도 좋다.

⑦ 「인권의 이해-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2020, 국가인권위원회)

㉮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센터(ETC)가 2012년에 발간한 인권교육 이해를 돕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 대상 | 인권교육 종사자
- 분량 | 740
- 주요 주제어 |

인권, 인권시스템, 인권교육, 인권교안, 고문방지, 빈곤, 비차별, 건강권, 여성인권, 공정한 재판, 종교의 자유, 교육권, 아동인권, 무력분쟁,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소수자 권리, 비호권

㉮ 어떻게 활용할까?

-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 특히, 비차별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참고하기 알맞다.



## 사이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 ⑧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5차시, 5시간 30분)

## ㉠ 무엇을 담고 있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원칙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 대상 | 교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자
- 분량 | 15차시
- 주요 주제어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와 일반 원칙, 국적을 가질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 학교에 가고 행복하게 놀 권리



## ㉡ 어떻게 활용할까?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기본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아동권리의 국제협약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해 궁금하다면, 실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좋다.
- 유엔아동권리를 기관의 업무와 연결하여 이행 현황을 살펴볼 때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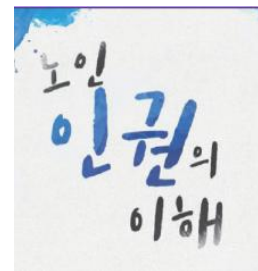
## ⑨ [노인 인권의 이해](8차시, 2시간 50분)

## ㉠ 무엇을 담고 있나?

생활 속 노인의 인권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 대상 | 노인 인권 관련 종사자, 일반 공무원
- 분량 | 8차시
- 주요 주제어 |

대중문화 속의 노인,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생의 이모작의 낭만과 현실, 노인의 성과 사랑, 선배시민, 돌봄, 죽음, 삶을 깨닫는 화두



## ㉡ 어떻게 활용할까?

- 노인 인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입문과정이다.
-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
- 노인 인권 관련 이슈를 살펴볼 수 있고, 인권의 관점에서 노년기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다.
- 노인 인권 시설 종사자라면 동료와 함께 공부할 때 자료로 활용하면 유용하다.

## 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15차시, 7시간 50분)

### ㉠ 무엇을 담고 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과정이다. 각 조항에서 의미하는 바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 대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공무원
- 분량 | 15차시
- 주요 주제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성내용과 적용대상, 차별 행위의 의미,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 어떻게 활용할까?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해 영역별로 판단하고 싶다면 참고가 된다.
-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동료와 함께 공부할 때 자료로 활용하면 유용하다.

## 나. 경찰 공무원을 위한 학습자원

- 경찰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은 인권 개념에서부터 경찰의 인권권옹호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이해하고 인권가치를 내재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법률을 소개하거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차원의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경찰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경찰 공무원 인권교육을 구성할 때 활용도가 높은 주요 학습자원을 선별하였다.
- (경찰직무에 대한 기본 이해 필요) 경찰 관련 영상 사례를 선정할 때, 사회적 이미지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 인권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의 업무 영역과 활동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강사는 선입견을 주의하여야 한다.
- (학습자원 위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경찰관서 지방청 교육센터,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http://pcep.police.go.kr>) 활용하기 좋다.

## 기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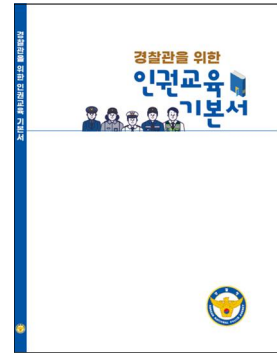
### ①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2022, 언론인권센터)

#### ㉠ 무엇을 담고 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과정이다. 각 조항에서 의미하는 바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 대상 | 경찰 공무원
- 분량 | 138쪽
- 주요 주제어 |

인권의 개념, 인권 바로 알기, 사례로 알아보는 인권, 경찰 인권사, 인권 경찰, 경찰과 인권교육, 인권친화적 경찰 조직문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이해



#### ㉡ 어떻게 활용할까?

- 경찰 인권을 위한 기본서로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입문과정으로 좋다.
- 경찰사를 통해 경찰 업무에서의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사례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를 구조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장의 2절, 3절은 사례토론으로 활용가능하다.
- 경찰관 직무의 이해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인권적 의미와 맥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생각해보기 좋다.

### ② 「인권 길라잡이: 경찰편」 (2002, 국가인권위원회)

#### ㉠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권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활동과 관련된 쟁점은 수사, 구금, 경비, 정보활동, 경찰장비 사용, 즉결심판 등으로 사례와 법규를 담고 있다.

- 대상 | 경찰 공무원
- 분량 | 122쪽
- 주요 주제어 |

인권의 의미, 인권의 유형, 인권의 역사,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활동과 인권쟁점, 수사와 인권, 구금과 인권, 경비, 정보활동과 인권, 경찰 장비 사용과 인권, 즉결 심판사건과 인권



#### ㉡ 어떻게 활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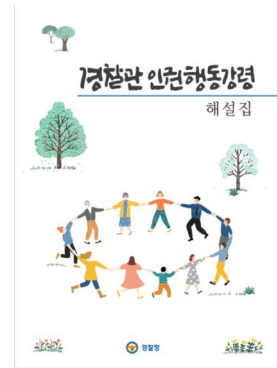
- 경찰 직무상 다루게 되는 인권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경찰 직무와 연관된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면 공부하기 좋다.
- 경찰인권과 관련한 법령을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보기 좋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 ③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해설집」 (2021, 경찰청)

#### ㉮ 무엇을 담고 있나?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의미와 해석,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자료이다.

- 대상 | 일반인, 경찰
- 분량 | 99쪽
- 주요 주제어 |  
경찰과 인권, 인권행동강령, 경찰관 행동강령 해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원칙, 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



#### ㉮ 어떻게 활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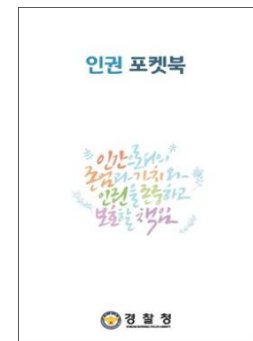
- 경찰관이 알아야 할 행동강령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경찰이 치안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 인권친화적 조직의 운영과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동강령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인권 포켓북」 (2021, 경찰청)

#### ㉮ 무엇을 담고 있나?

경찰관이 숙지해야 할 현장 이야기, 인권 이야기를 핵심을 정리하여 담았다. 인권사례와 해설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포켓 사이즈로 제작되어 휴대하기 용이하다.

- 대상 | 일반인, 경찰
- 분량 | 83쪽
- 주요 주제어 |  
인권, 인권과 인권의 충돌,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범죄자 인권, 인권 침해



#### ㉮ 어떻게 활용할까?

- 경찰공무원이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 사례 중에서 짧은 글은 뽑아서 인권사례 토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 경찰직무에서 헛갈리는 인권상식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 활용서

### ⑤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2021, 국가인권위원회)

#### ㉮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현황과 함께 인권침해와 차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의, 기준, 사례 등을 담고 있다.

- 대상 | 인권교육 강사

• 분량 | 178쪽

• 주요 주제어 |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침해 사례, 경찰 지자체 등 사례,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 어떻게 활용할까?

- 인권침해와 차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경찰 직무와 연관된 인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면 사례가 있어 공부하기 좋다.
- 사례, 결정례 등이 궁금하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⑥ 「여성, 경찰하는 마음」 (2022, 여성 경찰 23인)

㉮ 무엇을 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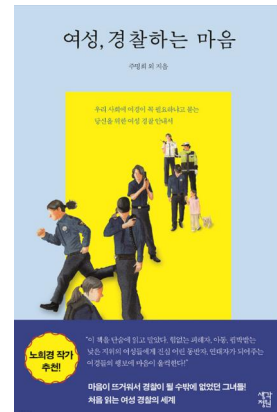
여성 경찰 23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우리사회 여경에게 쏟아지는 혐오와 편견에 대항하는 직업의 세계를 보여준다.

• 대상 | 일반인, 경찰

• 분량 | 260쪽

• 주요 주제어 |

여자 경찰, 성평등, 차이와 차별, 여자 경찰의 이야기, 처음 읽는 여자 경찰의 세계,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차별과 혐오, 진짜 경찰, 여경이라는 말에 담긴 차별



㉮ 어떻게 활용할까?

- 경찰공무원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사례 중에서 짧은 글을 뽑아 토론 주제 글로 활용하기 좋다.
- 연관된 토론 주제로는 차별과 혐오, 가짜뉴스, 소수자, 직무와 인권 등이 있다.
- 경찰의 이야기를 그린 <라이브>와 함께 보아도 좋다.

⑦ 「인권의 문법」 (2007, 조호제, 후마니타스)

㉮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의 바탕에 깔린 기본 전제와 논리구조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화학습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한다.

• 대상 | 일반인, 인권강사

• 분량 | 392쪽

• 주요 주제어 |

인권이론의 발전, 고전 인권이론, 현대 인권이론, 비판이론(사회주의), 비판이론(페미니즘), 비판이론(상대주의), 인권민주주의의 모색, 인권과 민주주의





- 유사 참고도서 | 사람을 옹호하라(류은숙, 2019, 코난북스), 인권의 대전환(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역, 2009, 교양인),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2017) 등

㉞ 어떻게 활용할까?

- 인권강사, 인권활동가,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다.
- 어떤 특정 이슈를 인권이라는 문제틀로 파악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전체의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권리 구조에 맞게끔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 인권 개념이 특수 전문영역에 갇히지 않고 우리 공동체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학술 전문 용어를 피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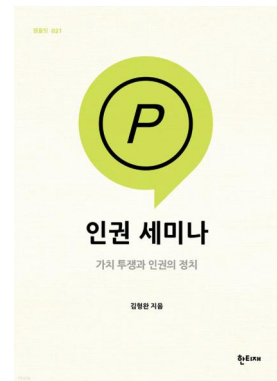
㉟ 「인권세미나」 (2021, 김형완, 한티재)

㉞ 무엇을 담고 있나?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재로 50편의 짧은 인권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인권에 대한 학습공동체에서 함께 보면 좋다.

- 대상 | 일반인, 인권강사
- 분량 | 278쪽
- 주요 주제어 |

인권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권, 미투 운동, 인간존엄성, 인권의 실현, 인권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상의 인권문제,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편견, 직권의 존재 이유, 사회권과 복지국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㉞ 어떻게 활용할까?

-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문제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공동체를 꾸려 공부를 시작하는 인권동아리, 인권강사들의 심화학습을 위해 활용하기 좋다.
- 짧은 인권관련 이슈 글로 토의문을 만들려고 할 때 활용하기 좋다.
-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판단 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

- ㉞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외에도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http://pcep.police.go.kr>)의 인권교육강좌 활용

㉟ [이주민과 인권](15차시, 5시간 20분)

㉞ 무엇을 담고 있나?

생활, 여러 시설 및 관계 속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이다.

- 대상 | 일반인, 공무원



• 분량 | 15차시

• 주요 주제어 |

인권의 이해, 다문화와 이주민의 인권,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재외동포와 인권, 이주민과 행정, 이주민과 사회 보장, 권리구제제도



### ㉮ 어떻게 활용할까?

- 이주민과 관련된 인권 문제, 인권 정책 등을 쉽게 안내하고 있다.
- 경찰로 자주 만나게 되는 업무대상자들에 대해 이해하기 좋다.
- 이주민, 난민 인권의 근거와 권리체계를 이해하고 싶거나 생활 속에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 보면 좋다.
- 재외동포, 다문화 인권 이슈에 문제 해결 방안을 연계시키고 싶다면 유익하다.

## ⑩ [인권의 이해](15차시, 10시간 30분) ???

### ㉮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원칙 등의 학습을 통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 대상 | 일반인

• 분량 | 10시간 30분

• 주요 주제어 |

인권의 기원, 인권의 개념, 인권의 역사, 인권의 역할, 인권의 과제,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유엔인권선언



### ㉮ 어떻게 활용할까?

- 인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좋다.
- 인권 전반의 개념을 잡기에 쉽고 요약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과정이다.
- 자유권, 사회권의 개념부터 사례까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인권의 기초가 약하다면 이 과정부터 들여보시면 좋다.

## 다. 군인을 위한 학습자원

-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은 군대 존재 목적과 군인의 인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군인을 위한 학습자원의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인권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밝혀내는 것에 있다. 학습자원 역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권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은 군인의 인권교육을 구성할 때 활용도가 높은 주요 학습자원을 선별하였다.

- ▶ (세대의 이해 필요) 인권교육은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현실과 일상생활, 직업 등 학습자 삶을 기반한 인권 관련성에서 시작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군인의 특성을 이해하여 학습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인권교육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 ▶ (학습자원 위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군인권센터(<https://www.mhrk.org>) 자료실을 살펴보면 좋다.

## 기본서

### ① 「1331 소중하군」 (2017, 국가인권위원회)

#### ㉠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기초로 만들어진 사례집이다. 독자들이 읽기 쉽게 각색하여 재구성되어있다. 주요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 대상 | 군인, 군 종사자
- 분량 | 132쪽
- 주요 주제어 |

군 인권문제, 폭행, 가혹행위, 의료조치 미흡, 사망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 구제 절차



#### ㉡ 어떻게 활용할까?

-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와 권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군인 인권에서 다루어야 할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좋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중에서 군인의 인권보호와 병영문화 개선에 도움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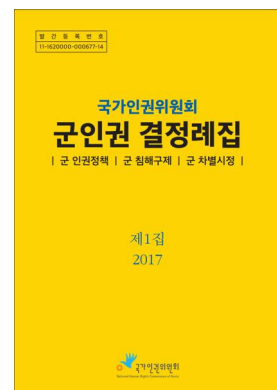
### ② 「군인권 결정례집 1편/2편」 (2017/2019, 국가인권위원회)

#### ㉠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군인권 진정에 대한 결정을 모은 자료집이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 상담 등에 참고할 수 있다.

- 대상 | 군인, 군인권교관
- 분량 | 1147쪽(1편), 603쪽(2편)
- 주요 주제어 |

군 인권 정책, 군 인권침해, 군 차별행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 ㉡ 어떻게 활용할까?

-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와 권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군인 인권에서 다루어야 할 사례를 파악하기 좋다.
- 인권정책분야, 침해구제분야, 차별시정분야에서 달라진 군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활용서

## ③ 「인문학과 함께하는 군 인권과 안전의 새로운 만남」 (2020, 김경호, 좋은땅)

## ㉮ 무엇을 담고 있나?

2019년 국방일보에 연재했던 칼럼을 재구성하여 엮었다. 군 인권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하고 있다.

- 대상 | 군인, 군인권교관
- 분량 | 248쪽
- 주요 주제어 | 약자 배려는 인권의 출발,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약탈, 군대에서 혐오표현, 스마트폰, 군인 가족과 인권, 군인 전문성, 인권감수성 높이기



## ㉮ 어떻게 활용할까?

- 군대와 연결된 인권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을 넓히기 좋다.
-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와 안전문제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 군대 내에서 인권문제를 다양한 사례, 주제로 인권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서 초심자들에게 적합하다.

## ④ 「군, 인권 열외」 (2022, 김형남, 휴머니스트)

## ㉮ 무엇을 담고 있나?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데 함께한 젊은 활동가의 기록이다.

- 대상 | 일반시민, 군인, 군인권 훈련가
- 분량 | 298쪽
- 주요 주제어 | 군인권, 군인권 사례, 군인권 이슈, 군인권 실태, 군인권 제도 개선과 방향



## ㉮ 어떻게 활용할까?

- 군 인권사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군 인권 이슈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군인권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과 변화가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⑤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 교과서」 (2022, 류은숙, 낮은산)

## ㉮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길잡이 책으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인권 문제를 속속들이 보게 하는 책이다.

- 대상 | 인권에 대해

- 분량 | 148쪽
- 주요 주제어 | 인간존엄성, 세계인권선언, 자유, 평등, 연대

㉞ 어떻게 활용할까?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함께 보면 좋다.
- 인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례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 사회적 소수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김소희 만화가가 함께 작업했다.



사이버 교육

㉞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군인권센터 (<https://www.mhrk.org>) 인권교육강좌 활용

㉞ 무엇을 담고 있나?

군인, 군 종사자 등 군대 관련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 대상 | 군인, 군 종사자
- 분량 | 5차시
- 주요 주제어 | 인권과 군대, 군인의 법적지위와 일반적인 권리, 군인의 인권, 전쟁, 분쟁과 인권



㉞ 어떻게 활용할까?

- 인권의 관점에서 군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사이버 과정으로 좋다.
- 군인 인권에서 다루는 주제를 빠르게 이해하기 쉽다.
- 전쟁과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다면, 핵심 요약본으로 활용하기 좋다.

## 라. 인권교육 훈련가를 위한 학습자원

- 공무원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훈련가를 양성해야 하는 일은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특별한 노력을 요구한다. 특히, 기관 내부의 인권교육 훈련가는 외부의 인권강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직무연관성이 높은 실제적인 인권교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들이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인권의 특성을 자신의 직무에 접목하여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
- 인권교육 훈련가를 위한 학습자원 15종을 선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발간자료와 인권교육 기본서로 알려진 단행본으로 구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명	연도	기획/제작/저자	
1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2015	국가인권위원회 역
2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8	국가인권위원회 역
3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2)	2019	국가인권위원회
4	인권교육 알파와 오메가(기획·운영·평가를 위한 지표)	2020	국가인권위원회
5	인권의 이해-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역
6	인권교육 기본용어	2020	국가인권위원회
7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2021	국가인권위원회
8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교육용 결정레집	2022	국가인권위원회
9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교사. 인권교육. 하다.	2022	국가인권위원회
10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2022	국가인권위원회 역
11	인권교육 새로고침	2018	인권교육센터들
12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2015	조효제
13	인권의 문법	2007	조효제
14	사람을 옹호하라	2019	류은숙
15	인권 세미나 : 가치 투쟁과 인권의 정치	2021	김형완

- 인권교육 훈련가는 반드시 인권교육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교육의 방향을 안내하고 함께 배우는 동료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2).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교사. 인권교육. 하다.
- 국가인권위원회(2022).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번역본).
- 국가인권위원회(2022).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교육용 결정레집.
- 국가인권위원회(2021). 노년기 건강과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2021). 아동청소년과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2021).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 국가인권위원회(2021).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번역본).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알파와 오메가(기획·운영·평가를 위한 지표).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의 이해-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번역본).
- 국가인권위원회(2019). 군인권 결정레집 2편.
- 국가인권위원회(2019).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2).
- 국가인권위원회.(2018).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번역본).
- 국가인권위원회(2017). 군인권 결정레집 1편.
- 국가인권위원회(2017). 1331 소중하군.
- 국가인권위원회(2015). 노인 인권 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2015).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번역본).
-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 인권교육 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2002). 인권 길라잡이: 경찰편.
- 경찰청(2021).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해설집.
- 경찰청(2021). 인권 포켓북.
- 경찰청(2020).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 경찰청(2019). 경찰공무원의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경호(2020). 인문학과 함께하는 군 인권과 안전의 새로운 만남. 서울 : 좋은땅.
-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파주 : 오월의봄.
- 김수정 외(2020). 사회복지와 인권. 서울 : 학지사.
- 김형남(2022). 군, 인권 열외. 서울 : 휴머니스트
- 김형완(2021). 인권 세미나 : 가치 투쟁과 인권의 정치. 대구 : 한티재.
- 류은숙 외.(2022).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 교과서. 서울 : 낮은산.
- 류은숙(2019). 사람을 옹호하라. 서울 : 코난북스
- 법무부(2021). 법무행정공무원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 언론인권센터(2020).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 인권교육센터 들(2018). 인권교육 새로그침. 서울 : 교육공동체벗.
- 조효제(2015).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서울 : 교양인.
-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서울 : 후마니타스.

## □ 인터넷 자료

### 아동

<http://edu.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최종검색일 2022. 12. 0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5차시, 5시간 30분)

### 노인

<http://edu.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최종검색일 2022. 12. 02.

[노인 인권의 이해](8차시, 2시간 50분)

### 이주민과 인권

<http://edu.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최종검색일 2022. 12. 02.

<http://pcep.police.go.kr>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최종검색일 2022. 12. 02.

### 군인

<http://edu.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최종검색일 2022. 12. 02.

<https://www.mhrk.org>(군인권센터). 최종검색일 2022. 12. 02.



---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인 쇄 일 2022년 12월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연구기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

ISBN : 978-89-6114-922-8 93350